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가이드북

[특수기록관 기록물]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가이드북」을 발간하며



최근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요구가 증폭되면서, 적극적인 기록물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록물 공개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비공개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국가기록원은 2007년 전면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30년이 경과한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공개재분류를 추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1,287만 건의 비공개기록물을 재분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공개재분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가이드북』은 작년의 사회·경제분야에 이어 올해에는 특수기록관 기록물을 대상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북을 통해서 30년 공개원칙을 적용한 재분류 결과를 각급





기관과 공유하고, 범정부적으로 기록물 공개기준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가이드북은 생산기관별·유형별 대상 기록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개재분류 결과와 그 사유, 비공개 대상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기록물공개심의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 심의과정의 정보를 포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최종 결과를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향후 이 가이드북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각급 기관 기록관의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에 적극 활용되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진적 기록물 공개제도가 정착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0년 12월

국가기록원장 이 경 옥

일러두기

1. 이 가이드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공개재분류된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 중 특수기록관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본문은 생산기관별로 공개재분류 개요와 기록물 유형별 세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개재분류 개요에는 기관 연혁, 소관 업무, 재분류 대상 기록물의 개요를 정리하였고, 기록물 유형별 세부내용에는 기록물 상세 내용,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 대상정보, 심의일시 등을 수록하였다.
3. 공개재분류 개요의 기관연혁은 대상 기록물이 소속기관 등까지 포함될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들 기관의 연혁까지 포함해서 기술하였다.
4. 법령은 이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록물관리법'으로,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록물법'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법'으로 줄여서 표기하였다.

CONTENTS

I.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개요

1. 추진 배경
2. 추진 절차
3. 추진 내용

II. 특수기록관 기록물

1. 외교통상부
2. 통일부
3. 국방부
4. 검찰청
5. 경찰청
6. 해양경찰청

I.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개요

1. 추진 배경.....	3
2. 추진 절차	4
3. 추진 내용	5

1 추진 배경

기록물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정부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설명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지표이다. 1996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으나 소극적인 공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정보공개 정책의 변화 속에 기록물 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은 온라인 정보공개를 가능하게 하여 자발적인 기록물 공개를 가속화시켰다. 기록관리 분야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적극적인 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2007년 전면 개정된 공공기록물법에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해서 매 5년마다 공개여부를 재분류하고,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기존의 공개제도는 기록물 생산시점에 공개 여부를 구분하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시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과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에 대하여 재분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기록물의 공개관리에 있어서 필수적인 규정이었으나, 비공개 보호기간의 경과 또는 정보의 민감성 소멸 등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공개로 전환하지 못하고 비공개가 지속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해 개정된 공개제도는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이후의 공개재분류를 강화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30년 공개 원칙을 도입하여 영구적으로 비공개되는 폐단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앞서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적극적 기록공개제도로 전환하였다.

국가기록원은 2007년 개정된 공공기록물법을 적용하여, 공공기록물법 시행일(2007.4.5) 이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비공개기록물 35만 여권에 대해서 2007년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재분류를 추진하였으며, 2009년 하반기에는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및 공개미분류 기록물 11만 여권에 대한 공개재분류를 추진하였다.

〈표 1〉 법 시행일('07. 4. 5)이전 국가기록원 보유 비공개기록물

(단위 : 권)

구 분	계	서 고 별		
		본원(대전)	나라(성남)	역사(부산)
계	358,506	204,783	111,539	42,184
30년 경과('78이전)	122,914	64,104	39,764	19,046
30년 미경과('79이후)	235,592	140,679	71,775	23,138

〈표 2〉 2009년 하반기 공개재분류 대상 기록물

(단위 : 권)

구 분	계	서 고 별		
		본원(대전)	나라(성남)	역사(부산)
계	111,357	40,425	35,217	35,715
30년경과(1979년생산) 비공개기록물	10,432	6,046	2,781	1,605
30년경과(1979년이전 생산) 공개미분류 기록물	100,925	34,379	32,436	34,110

국가기록원은 이렇게 진행된 재분류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공개재분류 작업에 도움을 주고자 작업 과정에서 정리된 기준과 사례를 모아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되었다.

2 추진절차

공개재분류 기준은 두 가지로, 첫째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국민의 알권리 보호와 기록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개 원칙’을 적용하였다. 비공개기록물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보의 민감성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공개로 결정하였다. 둘째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 비공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개인의 인권과 생명·신체·재산 등의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였다. 공개와 비공개 정보가 섞여 있을 때에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모두 공개(부분공개)하는 기준을 적용하였다.

공개재분류 작업은 먼저, 비공개기록물을 생산기관·업무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일차적으로는 생산기관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공통업무와 고유업무로 분류하였다. 공통업무의 경우 동일 유형에는 공개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유형별로 나누고 고유업무는 기록물 생산맥락과 업무 성격별로 세분화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비공개기록물에 대해서 유형별로 「공개재분류 기준서」를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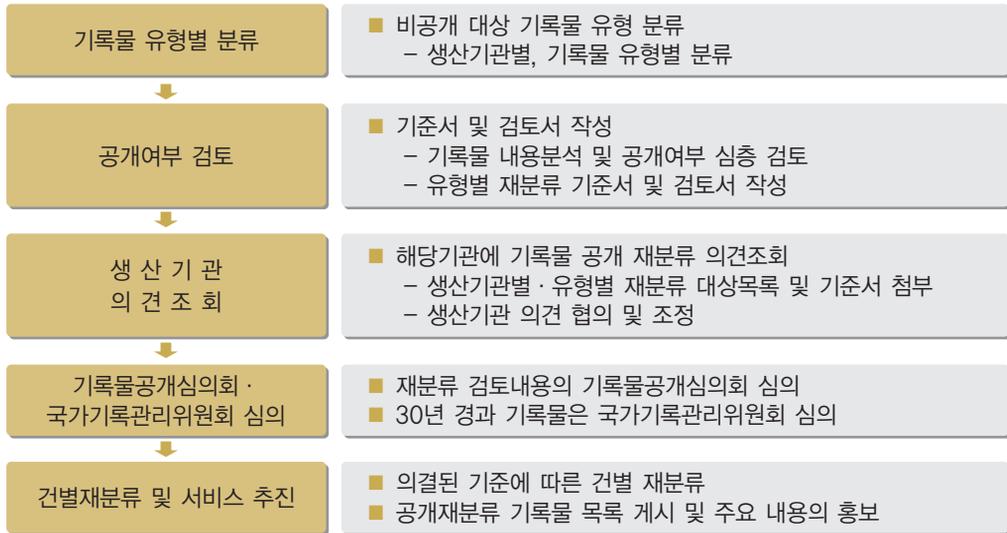
기준서는 기록물의 상세내용, 공개이력, 재분류 검토의견, 비공개 대상정보 등으로 구성하여, 기록물의 내용과 공개 여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분류를 위하여 생산기관의 의견조회를 수행하였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마련한 재분류 기준을 생산기관에 보내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협약하여 확정하였다. 이 때 생산기관이 비공개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국가기록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았으며, 국가기록원은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생산기관 의견조회 결과, 공개기준이 상이한 경우와 생산기관으로부터 비공개 기간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토된 공개재분류 결과를 기록물공개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다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국가기록원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공개재분류 결과는 대상 기록물의 목록정보에 반영하여 재분류 이력이 누적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 목록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국민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추진 내용

공개재분류 추진결과, 30년이 경과한 비공개기록물 234,271권(9,777,440건) 중 93.1%가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재분류 되었다. 30년 공개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이제까

지 장기적으로 비공개가 지속되어 왔던 기록물이 공개로 재분류되고 비공개 대상정보가 최소화되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156,958권(7,205,093건) 중 93.8%(6,764,526건), 지방자치단체는 53,502권(2,421,632건) 중 93.7%(2,271,403건), 교육청 및 국·공립 대학교는 23,811권(150,715건) 중 46.7%(70,417건)가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재분류되었다.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판결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로 일반 행정기록물과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자명부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즉, 일반 행정기록물은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재판기록물 등 특수기록물은 공공기록물의 이용 확대를 위해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하였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를 살펴보면, 기존 사유는 비밀, 국가안보, 재판 및 수사 관련, 업무상·영업상 비밀, 개인정보 등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었으나, 재분류 결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민감성 소멸 등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관련 사항(제3호)과 개인정보 보호(제6호) 사유로 정비되었다. 특히 부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 중 99%에 해당하는 기록물의 비공개 사유가 개인정보 보호(제6호)를 적용하여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개인식별정보의 경우 철저히 보호하였다.

재분류 결과, 공개(부분공개)된 주요 기록물은 행정운영 과정을 보여주는 감사원의 감사 관련 기록물과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 기록인 포고령 및 군정법령 위반 형사사건기록물, 판결문, 법인설립 관련 각종 인허가 기록, 인사·징계·소송 등이다. 다만, 개인정

〈표 3〉 주요 공개 및 비공개 기록물

구 분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30년 경과	중앙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결과처리에 관한 기록 - 판결문 및 약식명령 - 법인설립관계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기록 - 대공정보망 등 정보·보안기록 - 인사기록카드, 병적카드 - 국유재산대장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대장, 임야대장 - 농지개혁, 인·허가 기록 - 양곡사고, 영세농이주정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 인감대장 - 인사기록카드, 수형인명부 - 외국인토지취득허가
	교육청/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설립 인·허가 기록 - 학무회의록 - 졸업대장, 수료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기록카드, 학적부 - 연금, 국유재산대장

보가 수록된 인사기록카드, 병적카드, 주민등록표, 학적부 등은 비공개하였으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가보안법·간첩 관련 형사사건기록, 대공정보망 등 정보·보안 기록은 비공개하였다.

이처럼 공개재분류 작업은 그동안 관행이나 비공개 선호로 인하여 과도하게 비공개되어왔던 기록물의 공개를 확대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분배농지상환대장·토지대장 등 지적(地籍) 기록물과 국방부 등 특수기관에서 보안 등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비공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해 왔던 많은 일반 기록물이 이번 기회에 정비되었다.

또한 사안의 민감성이 소멸되었거나 업무과정상의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였다. 법령 제·개정, 협정, 매각관계 등 의사결정과정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기간의 경과를 고려하여 공개로 재분류하고, 인사발령대장, 상훈·포상 관련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은 개인정보의 경우도 공개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는 인사·의료·병역 관련 비공개 기록물은 30년 공개 원칙의 적용이 어려웠다. 이들 개인의 비밀 및 사생활 보장과 관련된 기록물은 장기간 비공개 유지가 필요하며 비공개 보호와 공개의 균형유지를 감안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30년 공개원칙과 주기적 공개재분류의 보완적인 측면에서 비공개 상한기간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록물 공개는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제고라는 의의를 가진다. 이런 측면에서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제도는 기록정보 서비스를 확대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비공개기록물을 공개로 재분류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1. 유형별 재분류 기준

유 형	30년경과 기록물
인사·징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기록카드, 연금기록은 개인신상정보가 다수로 비공개 ■ 인사발령, 임용 기록은 주민등록번호, 개인증빙기록 삭제 후 부분공개 ■ 징계·소청 기록은 개인식별정보 삭제 후 부분공개
감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기록은 개인식별정보 및 회사정보 삭제 후 부분공개
행정소송 행정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소송·행정심판 기록은 개인식별정보 삭제 후 부분공개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허가 기록은 영업상의 기밀성이 소멸되어 공개하나,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정보는 삭제 후 부분공개
국유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 매입/매각/대부 기록은 30년 공개원칙을 적용하여 개인식별정보 삭제 후 부분공개 ■ 국유재산대장은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보안시설 배치도 등 도면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하고, 나머지 기록은 개인식별정보 삭제 후 부분공개
수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수사기록은 개인식별정보 삭제 후 부분공개하고, 가정보호사건·성범죄사건·소년보호사건은 비공개
정보·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비공개
법무·행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 공개원칙을 적용하여 개인식별정보 삭제 후 부분공개
병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적카드 등 병무기록은 개인식별 및 병역에 관한 정보로 비공개
토 지 (지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기록물은 지적법에 따라 공개 ■ 외국인토지취득허가 기록은 비공개 ■ 농지개혁, 토지수용 및 보상 기록물은 개인식별정보 삭제 후 부분공개
사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대장, 행려사망자관리기록 등 사회복지 기록물은 개인신상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비공개
개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외국인등록, 인감기록은 개인신상정보가 다수로 비공개 ■ 생활기록부, 학적부 기록은 개인신상정보가 다수로 비공개 ■ 졸업대장, 수료대장은 개인신상정보 삭제 후 부분공개

참고 2.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기록물공개심의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일 시	30년 경과	일 시	30년 경과
2차('07.6.27)	김창룡저격사건	2차 ('08.7.28)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생산 기록물 의결
3차('07.10.16)	진보당 사건		
4차('07.12.18)	감사원 생산기록물		
5차('08.4.28)	경찰청 수사기록		
7차('08.9.10)	국세청, 해양경찰청, 법무부, 검찰청(판결문)	5차 ('08.10.2)	국세청, 해양경찰청, 법무부, 검찰청, 필화사건 기록물 의결
8차('08.9.26)	1950-60년대 필화사건기록		
9차('08.12.3)	대검찰청(결정서), 법무부(사면), 문화재청, 지자체	6차 ('08.12.14)	대검찰청, 법무부, 문화재청, 자치 단체 기록물 의결
10차('08.12.23)	교육청, 국공립대학교 생산 기록물	7차 ('09.3.20)	교육청, 국공립대학교, 병무청, 지 식경제부, 행안부, 외교통상부, 국 토해양부, 금융위 기록물 의결
11차('09.3.5)	병무청,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금융위, 검찰청 생산 기록물		
12차('09.5.22)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경찰 청,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 안전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문화 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정무장관 제1실, 통일주체국민회의, 국방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국가보훈처, 산림청, 여성부, 의문사진상규명위 원회, 재건국민운동본부, 전매청, 철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수산 부, 행정개혁위원회 생산 기록물	8차 ('09.6.26)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경찰 청,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국방 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철도청, 국 토해양부, 검찰청, 행정안전부, 환 경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정무장관 제1실, 통일 주체국민회의, 국가보훈처, 산림청, 여성부, 재건국민운동본부, 전매청, 통일부, 특허청, 행정개혁위원회 기 록물 의결
13차('09.6.18)	검찰청 형사사건기록		
16차('09.9.25)	지자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생산 기록물		
17차('09.12.14)	경찰청, 국가보훈처, 국방부, 검찰 청 등 중앙행정기관 생산 기록물	10차 ('09.12.18)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국립공대학 기록물 의결

참고 3. 30년 경과 기관별 공개재분류 주요 기록물 현황

기관명	재분류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검찰청		포고령 및 군정법령 위반 형사사건기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면·감형·복권관계철, 각종 사건부 및 명부, 통계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회보철, 국가보안법·간첩·공안사범 관련 형사사건기록, 보안처분 청구서, 각종 색인부
경찰청		인사발령, 사령부, 표창대장, 징계, 행정소송, 헬기구입, 직제개정, 용역경비	인사기록카드, 사건종결철, 국가보안법위반, 간첩검거공작, 외사공작, 보안처분업무
국방부		인사명령, 징계관계철, 소원, 사면·감형·복권관계철, 군인보수법관계철, 역사일지	인사기록카드, 전사망보고서, 의무조사보고서, 전시국방계획지침
외교통상부		월남전 관련 기록, 한일회담 기록, ASPAC 관련 기록	SOFA기록물, 군사정전위원회, 여권발급, 중정의견문의회보철
통일부		인사발령대장, 상훈대장	기여금납입
해양경찰청		발령대장, 표창대장, 징계의결요구서	인원현황철, 방첩공작관계철, 사건종결철, 간첩검거공작철, 30톤선체교체철, 특검자료철
국가보훈처		인사발령대장	기여금납입, 재직기간합산신청서
기획재정부		차관 및 경제협력관련 기록물, 세입·세출 주제부, 인사발령대장, 사령부, 예규	인사기록카드, 계리사명부
문화재청		사령원부, 발견 매장문화재 처리철, 동산문화재 등록, 유물대장, 문화재관리상황카드, 각종 문화재관리 기록	인사기록철, 연금, 신원조회 확인부, 국유재산대장, 재산처분대장
병무청		징계관계철, 행정소송관계철, 각종 규정 및 지침	인사기록카드, 병적카드
산림청		징계, 소송, 화전정리사업계획관계문서	국유재산임야대장, 국유재산상환대가대장
조달청		인사발령대장	연금기록, 징계대장
통계청		인사발령, 징계, 인구동태조사결과표, 통계조사	
특허청		판결문, 발명특허, 상표등록, 실용신안, 의장등록	
전매청		인사발령대장, 사령부, 징계관계철, 행정소송 참고서류	인사기록카드, 기여금·연금, 징계대장, 국유재산대장
철도청		인사발령대장, 행정소송판결문, 운전사고통계부, 운전사고분석표, 용지매수 등	인사기록카드, 공상자 명단, 징계대장
행정안전부		독도관계서류, IBRD 차관 새마을1차사업, EROPA회의, 각의상정안건철	인사기록카드, 외국인토지취득허가철, 병적기록부
지식경제부		광업원부, 별정우체국 지정신청 및 조사서류, 석유개발공사설립철, 인허가	인사기록카드, 학적부, 기여금·연금
보건복지가족부		법인대장, 약종상대장, 유골봉환, 대한민국과 WHO와의 협정서	
환경부		배출시설허가대장, 환경오염 방지시설업 등록	
방송통신위원회		유선방송수신시설원부, 무선기기형식검정합격대장	인사기록카드, 기여금·연금, 전파지정기준

기관명	재분류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감사원		감사결과처리에 관한 서류, 사건보고철, 감찰보고철, 감사위원회회의록 등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경력조서, 재직기간합산승인결정 등
관세청		인사발령, 징계, 범칙사건대장 등	인사기록카드, 연금, 국유재산 등
교육과학기술부		인사발령, 징계, 학위등록자명부, 원자로 설계 및 공사방법 승인 등	졸업생학적부
국가안전보장회의		인사발령대장	
국세청		인사발령, 징계, 법인설립 및 전·출입, 법인세적 등	인사기록카드, 기여금, 국유재산대장
국토해양부		인사발령, 징계, 공유수면 인·허가, 유량 및 수로측정, 해양관측, 지적도, 지적법 개정 등	인사기록카드, 기여금, 토지수용 (국방군사사업) 등
법제처		사무인계서	
노동부		인사발령, 판정결정서철, 의무검정 합격자명단 등	교사면허 발급대장
농림수산식품부		인사발령, 징계, 감사기록, 농업용수개발계획, 어획고대장, 인·허가 등	인사기록카드, 기여금, 학적부, 국유재산대장 등
농촌진흥청		인사발령, 고등농업기술원양성소서류철	인사기록카드
대통령실		인사발령부, 기증품접수대장, 대통령상접수대장	인사기록카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철, 영화제작 기록, 저작권 등록	인사기록카드
법무부		인사발령, 징계, 포상, 수용자신분장, 만기력부, 교정통계, 경호요사철인, 형집행 기록, 총기원부, 보안처분, 국가배상 등	인사기록카드 연금관련철
법제처		사령부, 사령원부	인사기록카드, 기여금, 색인부, 체류기간연장 대장, 외국인거류신고대장, 외국인등록 등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승진·승급관계철, 임용관계철	
통일주체국민회의		지역회 임원 임면관계철, 제1대 대의원 등록 부철, 결산관계철	인사기록카드, 기여금납입 등 연금관계철
행정개혁위원회		임명, 인사관계잡철, 전출 (인사제도관계잡철), 승급, 시험 등	인사기록카드, 기여금관계철 등
지방자치단체		인사발령, 징계·포상, 인·허가, 감사, 행정소송, 농지개혁, 문화재관리, 사건기록, 조례,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인사기록카드, 연금, 외국인등록, 인감, 주민등록표, 수형인명부, 국유재산대장 등
교육청		인사발령, 징계·포상, 졸업·수료대장, 학생신체검사, 인·허가, 행정소송, 규칙공포대장 등	인사기록카드, 연금, 학적부 등
국공립대학교		인사발령, 포상, 졸업대장·수료대장, 자격증발급, 학우회의록 등	연금, 학적부, 입학전형대장, 국유재산대장 등

Ⅱ. 특수기록관 기록물

1. 외교통상부	15
2. 통일부	27
3. 국방부	31
4. 검찰청	69
5. 경찰청	119
6. 해양경찰청	157

1. 외교통상부

● **대상기록물** : SOFA한미합동위원회, 군사정전위원회, 여권발급 등 578권

● **생산연도** : 1953~1979

● **생산기관 연혁** :

1948.07.17.~ 1998.02.28. 외무부

1998.02.28.~ 현재 외교통상부

● **개요**

외교통상부는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에 의해 외무부로 시작하여 1998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전면개정에 따라 외교통상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주요업무는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 외국과의 통상 및 통상교섭,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문화협력, 대외홍보,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번에 재분류된 기록물은 주로 SOFA 및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 여권발급, 월남전, 한일회담 등과 관련된 것이다.

SOFA 관련 기록물은 외교에 관한 사항으로 「한미합동위원회 운영절차 규칙」 등에 의거 비공개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은 이미 공개된 회의록은 공개하되, 나머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비공개하였다. 여권발급은 개인정보가 대부분이므로 비공개하였다. 월남전, 한일회담, ASPAC 기록물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공개하였다.

● 유형별 총괄표

유형	생산연도	권수	기록물철	공개구분
외교(SOFA)	1966~1979	118	SOFA한미합동위원회회의록, SOFA한미합동위원회분과위원회, SOFA한미합동위원회위원위촉	비공개
외교 (군사정전위원회)	1953~1979	26	군사정전위원회본회의회의록, 군사정전위원회비서장회의회의록, 군사정전위원회본회의내용요약철	공개 /비공개
외교(여권)	1953~1979	381	여권, 여권발급대장, 교포여권대장, 관용, 관용대장, 공심보류철, 중정의견문의회보철	비공개
외교(기타)	1962~1970	31	주월남한국군철수, 한일회담정치교섭추진, ASPAC관련 기록물철 등	공개
인사	1955~1965	20	외무부인사발령원부, 직원이력서	공개 /비공개
기타	1958	2	국군병력감축 및 재편성, 국군통신장비현대화5개년계획	비공개
합계	1953~1979	578		

외 교 (SOFA)

- ▶ 기록물철 제목 : SOFA한미합동위원회회의록, SOFA한미합동위원회분과위원회, SOFA한미합동위원회 Taking Paper, SOFA한미합동위원회위원위촉
- ▶ 생산기관 :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 안보정책과
- ▶ 생산연도 : 1966~1979
- ▶ 수량 : 118권
- ▶ 공개재분류 : 비공개 제2호
- ▶ 비공개대상정보
-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1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3.5), 제17차 기록물공개심의회 (2009.12.14)
 - 제7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3.20),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 (2009.12.18)

개 요

1966년 7월 9일에 체결되고, 1967년 2월 9일에 발효된 한·미 SOFA 관련 기록물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SOFA 한미합동위원회회의록》은 회의개최와 관련된 행정사항을 처리한 공문에는 회의 주관, 일시 및 장소, 회의장 준비, 참석자(우리측, 미국측 수석대표 및 위원의 직위와 성명), 순서, 협의 및 합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합의회의록이 첨부되어 있다. 합의회의록에는 주둔군지위협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인 시설과 구역, 형사관할권, 민사청구권, 노무관련, 환경관련, 통관, 관세 및 과세 등의 관련 조항, 여성 및 아동 인권보호 관련 등의 문제를 논의하여 처리한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고, 공동발표문이 첨부되어 있기도 하다.

《SOFA 한미합동위원회분과위원회》에는 주둔군에 대한 출입국관리, 시설과 구역, 형사재판권, 민사청구권, 노무, 관세, 조세 등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와 관련된 공문들과 의사록, 여타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공공용역분과위원회, 군민관계임시분과위원회, 면세물품거래임시위원회,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 기록물철로서 분과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일시, 장소, 과제 등을 제시한 행정공문, 과제에 따른 대비자료들이 첨부되어 있다. 건의문

에는 분과위원회 명칭, 분과위원회 한·미 위원 명단, 건의 주제, 주한미국 지위협정의 적정 조항을 참조한 건의문, 필요시 보안 등급 표시, 각 분과위원회 한·미 양측 위원장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합동위원회가 한·미 분과위원회의 건의문을 승인할 경우, 이러한 합동위원회의 승인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서명 아래에 합동위원회 회의 개최일자와 함께 기록된다. 한미 양측 대표는 승인된 분과위원회의 건의문에 각각 서명한다. 예를 들어, <제7차 시설구역분과위 회의>에는 주로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일시, 장소, 대비자료, 의사록, 건의문 등이 첨부되어 있다. 회의 의사록은 한글과 영문이 첨부되어 있는데 회의 개최일시, 장소, 한국측·미국측 위원들의 계급과 성명, 논의된 과제들이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에 한국측과 미국측 의장의 성명 사인이 기재되어 있다.

《SOFA 한미합동위원회 Taking Paper》는 차수별로 한미합동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녹취록을 한글과 영문을 작성하여 편철하였다. 한미 간의 분과위원회의 과제설명과 설명요청, 회답 및 설명, 제안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SOFA 한미합동위원회 설치 준비 및 한국대표단 위촉》은 합동위원회를 설치·준비하기 위하여 위원회 멤버 구성, 일본·독일 등의 행정협정, 보충협정, 군사협정 등의 운영현황을 파악한 문서, 한미간 군대지위협정에 의한 합동위원회 한국 대표단 구성과 관련된 문서들이 첨부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SOFA 관련 기록물철은 외교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한미합동위원회 운영절차규칙」에 의하여 한·미 양측의 합의 없이는 의사록 공개 내지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공개한다.

외 교 (군사정전위원회)

- ▶ 기록물철 제목 : 군사정전위원회본회의회의록, 군사정전위원회비서장회의회의록, 군사정전위원회본회의내용요약철
- ▶ 생산기관 :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 안보정책과
- ▶ 생산연도 : 1953~1979
- ▶ 수량 : 26권
- ▶ 공개재분류 : 공개 / 비공개 제2호
- ▶ 비공개대상정보
-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1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3.5), 제17차 기록물공개심의회 (2009.12.14)
 - 제7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3.20),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 (2009.12.18)

개 요

1953년에 설립된 군사정전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회의록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군사정전위원회본회의 회의록》은 회의 차수별로 영문 회의록이 편철되어 있다. 회의록에는 개최일시, 회의 주제, 유엔 측과 북한 측 참석자들의 계급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회의는 유엔 측과 북한 측의 의사진행 발언들이 기재되어 있다.

《군사정전위원회비서장회의 회의록》에는 <군정위 회의록 송부>, <비서장회의 결과보고>, <비서장회의회의록>이 편철되어 있다. <군정위 회의록 송부>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을 중정, 외무부, 국토통일원, 합참, 육군, 해군, 공군 등에 송부하여 업무에 참조하라는 공문으로 주제, 회의결과, 회의장소가 기재되어 있다. <비서장회의 결과보고>는 군사정전위원회 한국군 연락장교단장이 합참, 중정, 외무부 등에 업무 참조하라는 공문으로 비서장회의 쌍방 발언 요지가 첨부되어 있다. 첨부요지에는 일자, 시간, 소요시간, 북한측, 국제연합측, 참고사항(참석자 현황)이 기재되어 있다. <비서장회의회의록>은 국제연합군 측,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측 출석자의 계급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회의 주제에 대하여 국제연합군 측과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측이 논의한 회의록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를 영문으로 번역한 영문판이 첨부되어 있다.

《군사정전위원회본회의 내용요약철》은 1971년부터 1979년까지의 군사정전위원회 회차별 공산 측, 유엔 측 의견이 간단히 요약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군사정전위원회'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휴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휴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군사정전위원회본회의회의록》 1975년 369차와 《비서장회의록》 1975년 438차까지는 외교부에서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공개 가능하고, 본회의회의록 1976년 370차, 비서장회의록 1976년 439차 이후는 국방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공개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

외 교 (여권)

- ▶ 기록물철 제목 : 여권, 삿쁘르동계올림픽여권발급, 엑스포여권발권대장, 이민여권발급대장, 교포여권대장, 관용, 관용대장, 일반여권기재사항변경, 일시귀국, 공심보류철, 중정의견문의회보철
- ▶ 생산기관 : 외무부 재외국민영사국 여권과
- ▶ 생산연도 : 1953~1979
- ▶ 수량 : 381권
- ▶ 공개재분류 : 비공개 제6호
- ▶ 비공개대상정보
-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17차 기록물공개심의회 (2009.12.14),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 (2009.12.18)

개 요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여권》, 《삿쁘르동계올림픽여권발급》, 《엑스포여권발권대장》, 《이민여권발급대장》, 《교포여권대장》, 《관용》, 《관용대장》은 여권발급대장으로 여권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현주소, 발급일, 유효기간, 여행목적지, 여행목적, 고유번호, 확인,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여권기재사항 변경》, 《기재변경》, 《유효확인》은 여권기한·연장목적지 추가 변경대장으로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여권번호, 성명, 성별, 직업, 기한연장 기일, 목적지 및 경유지 추가, 기타변경, 여행목적,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일시귀국》은 접수대장으로 접수번호, 성명, 성별, 여행목적, 직업,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공심보류철》은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을 심사하는 기록으로 공무원해외여행 심사요청(여행자, 여행기간, 여행국, 여행목적, 소요경비), 이력서, 세부여행계획서, 세부여행일정표, 신원조회회보 등이 첨부되어 있다.

《중정의견문의회보철》은 신원특이자의 국외여행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기록으로 신원특

이자 인적사항(본적, 주소, 소속, 성명, 생년월일), 국외여행관계, 과거 여행경력, 해외거주 가족, 본인재산, 학력 및 경력, 가족관계, 이력서, 중앙정보부의 신원조사회보 등이 첨부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이상의 기록물은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과정에서 생산된 것으로 주로 여권번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 개인식별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이들 기록물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하여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권 관련 기록물은 개인의 이름, 본적, 주소,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대부분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로 보아 비공개한다.

외 교 (기타)

- ▶ 기록물철 제목 : 주월남한국군철수, 한일회담정치교섭추진, ASPAC관련 기록물철
- ▶ 생산기관 : 외무부
- ▶ 생산연도 : 1962~1970
- ▶ 수량 : 31권
- ▶ 공개재분류 : 공개
- ▶ 비공개대상정보
-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1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3.5), 제7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3.20)

개 요

월남전, 한일회담, ASPAC 관련 기록물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주월남한국군철수》에는 <주월미군의 철군에 따른 주월한국군의 안전 및 철군에 관한 연구서>가 편철되어 있고, 주월남 한국군의 철수에 대한 각종 문건들이 편철되어 있다.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 관련 기록물철은 <아스팍기술자등록처 사무국장 방한>, <체한일정>, <아스팍전문가등록처 부국장 방한>, <아스팍전문가등록처 부국장 방한에 따르는 협조 의뢰> 등이 편철되어 있다. 주로 이사회 간부들의 한국방문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 철이다.

《한일회담정치교섭추진》은 주일대사관과 외무부 사이에 오고간 문서들로 <참고자료송부>, <참고자료송부(주간정세보고)>, <해외교포들로 부터의 건의사항>, <예비절충회의 연기보고>, <외교활동보고> 등이 편철되어 있다.

공개재분류 결과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 관련 기록물은 1973년에 해체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외교부에서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전면공개 한다.

주월남파견, 한일회담정치교섭추진 관련 기록물철 역시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외교부에서 공개하였으므로 공개한다.

인 사

- ▶ 기록물철 제목 : 외무부인사발령원부, 직원이력서
- ▶ 생산기관 : 외무부
- ▶ 생산연도 : 1955~1965
- ▶ 수량 : 21권
- ▶ 공개재분류 : 공개 / 비공개 제6호
- ▶ 비공개대상정보
-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11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3.5), 제7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3.20)

개 요

외교통상부 공무원의 임면 등 인사업무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외무부 인사발령 원부》에는 1급, 2급 이하, 4·5급, 촉탁, 고용원, 기능직 등 외무부 직원들의 임면과정에서 생산된 것으로 발령연월일, 발령사항, 관직명,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력서》철에는 (구)외무부의 문서국, 정보국, 통상국, 정무국 등의 직원들에 대한 이력서가 편철되어 있다.

공개재분류 결과

이상의 기록물은 외교통상부의 공무원, 기능직, 촉탁직 등의 임면 과정에서 생산되었거나 그 과정에서 제출된 이력서 철이다.

《외무부인사발령원부》, 《직원이력서》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사내력 등과 같은 정보를 주로 포함하고 있다.

이들 기록물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하여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하지만, 《직원이력서》는 개인정보가 대부분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개인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비공개한다.

공무원의 인사발령인 《외무부 인사발령원부》의 성명, 소속, 직급, 직위 및 발령사항 정보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업무수행 과정상의 정보이고 개인의 비밀 및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공개한다.

기 타

- ▶ 기록물철 제목 : 국군병력감축 및 재편성, 국군통신장비현대화5개년계획
- ▶ 생산기관 : 외무부 기획관리실 외교사료담당관
- ▶ 생산연도 : 1958
- ▶ 수량 : 2권
- ▶ 공개재분류 : 비공개 제2호
- ▶ 비공개대상정보
-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11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3.5), 제7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3.20)

●● 개요

1950년대 국군 현대화 계획 및 재편성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 기록물 상세내용

《국군병력감축 및 재편성》에는 미국 국방부 맥스웰 테일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손원일 장군이 로버트슨에게 보낸 서한, 국군 병력감축 및 재편성 관련 회의 요약본, 국방부 예산 설명자료(for F.Y.1957) 등이 첨부되어 있다. 주로 국군 병력감축 및 재편성 관련 내용으로 핵무기 배치, 훈련 범위 등 민감한 안보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국군통신장비현대화5개년계획》은 백선엽 육군참모총장의 육군통신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 앞 보고기록물로서 군사안보 관련 현안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국군통신장비현대화5개년계획》, 《국군병력감축 및 재편성철》은 1950년대 국군통신장비 현대화 및 국군병력 재편성과 관련하여 핵무기 배치, 훈련범위 등 민감한 안보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비공개한다.

2. 통 일 부

● **대상기록물** : 인사발령원본, 상훈대장 등 16권

● **생산연도** : 1969~1979

● **생산기관 연혁** :

1969.01.29. ~ 1990.12.27. 국토통일원

1990.12.27. ~ 1998.02.28. 통일원

1998.02.28. ~ 현재 통일부

● **개 요**

통일부는 1969년 「정부조직법」과 「국토통일원 직제」에 의해 설치된 국토통일원으로 시작하여 1990년 12월 제정된 「정부조직법」과 다음해 1월 제정된 「통일원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해 통일원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였다. 통일원은 이후 199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일부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였다.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정보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통일교육원은 1972년 4월 22일 「통일연수소 직제」에 의해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소로 시작하여 1987년 1월 1일 「통일연수원 직제」에 의해 통일연수원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통일교육원은 1991년 2월 1일 「통일원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해 통일원 통일연수원이 되었다가 1996년 12월 17일 「통일원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해 통일원 교육홍보국의 기능을 이관받고, 통일교육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다. 통일교육원은 1998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해 통일부 소속이 되었다. 주요업무는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교육과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번에 재분류된 기록물은 인사발령, 상훈, 기여금 납입과 관련된 것이다.

인사발령, 상훈 기록물은 기본적으로 공개하되, 신원보증서·이력서·호적등

본 등 개인증빙기록과 징계 관련 인사발령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부분공개)한다. 기여금 납입 기록은 개인정보가 대부분이므로 비공개한다.

● 유형별 총괄표

유 형	생산연도	권 수	기록물철	공개구분
인 사	1969~1979	16	인사발령원본, 인사발령대장, 상훈대장, 기 여금납입총괄표	부분공개 /비공개
합 계	1969~1979	16		

- ▶ 기록물철 제목 : 인사발령원본, 인사발령대장, 상훈대장, 기여금납입총괄표
- ▶ 생산기관 : 통일원 총무과, 통일교육원 기획지원부 서무과
- ▶ 생산연도 : 1969~1979
- ▶ 수량 : 16권
- ▶ 공개재분류
 - 부분공개 제6호
 - 비공개 제6호(기여금납입총괄표)
- ▶ 비공개대상정보
 - 신원보증서, 이력서, 신원증명원, 채용신체검사서, 병적증명원서, 호적등본, 자격증 사본, 사직원
 - 징계 관련 인사발령자의 이름·소속·직위, 수상자의 본적 및 주소의 읍·면·동 이하, 생년월일
-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12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5.22), 제17차 기록물공개심의회 (2009.12.14)
 - 제8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6.26),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 (2009.12.18)

개 요

통일부 공무원의 인사 및 기여금 관련 기록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인사발령원본》은 공무원 임용, 면직, 승급, 발령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속, 직급, 성명, 발령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임용의 경우 〈신원보증서〉, 〈이력서〉, 〈신원증명원〉, 〈채용신체검사서〉, 〈병적증명원서〉, 〈호적등본〉, 〈자격증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다. 면직의 경우에는 〈사직원〉이 첨부되어 있다.

《인사발령대장》은 발령일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발령사항, 발령권자, 발령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발령사항에는 징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상훈대장》에는 상장번호, 수상자 성명, 비고와 함께 수상자의 본적, 주소, 직업 및 직위, 생년월일, 수여연월일, 공적표시 등이 기재되어 있다.

《기여금납입총괄표》에는 〈공무원연금기여금 입금통지서〉, 〈기여금 등 납입총괄표〉, 〈공무원연금카드부분 송부〉, 〈재직기간 합산승인 통보〉, 〈신분변동 등 확인자료 제출〉, 〈미납기여금 추징통보〉, 〈기여금 납부내역총괄표 첨부제출〉, 〈연금법령 개정에 따른 합산반

납금 정정 통보), <봉급명세서> 등이 편철되어 있다. <기여금 등 납입총괄표>에는 발신(시행연월일, 기관번호, 기관명), 확인(기여금징수의무자, 인사담당자), 총괄(봉급지급총괄, 기여금 등 총계, 매월기여금, 소급기여금, 합산반납금, 입대휴직금, 기여금면제자 등), 기여금 등 납입총괄 내역, 신분변동내역(성명, 직급·호봉, 변동일자, 연금번호 등), 소급기여금·합산반납금·입대휴직추징금·해외파견예입금 납입내역 및 기여금면제자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봉급명세서>에는 개인별 급호, 본봉, 직책수당, 근속수당, 총액, 기여금, 소득세, 주민세, 방위세, 적금, 수령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위 기록물은 통일부의 인사업무 및 기여금 관련 업무에서 생산된 것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 근무상황, 징계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해당 기록물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사발령원본》, 《인사발령대장》, 《상훈대장》 등 인사 관련 기록물은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없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투명행정 구현 및 행정연구 참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조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기여금납입총괄표》는 개인정보가 대부분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한다.

3. 국방부

● **대상기록물** : 병무, 국유재산, 인사 등 832권

● **생산연도** : 1945~1979

● **생산기관 연혁** :

1948.07.17.~ 현재 국방부

● **개요**

국방부는 1945년 11월 13일 미 군정청의 국방사령부로 시작하여 1946년 국방부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948년 「정부조직법」에 의해 국방부가 설치되었다. 주요업무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이다.

국군의무사령부는 1954년 3월 국방부 육군의무기지 사령부로 시작하여 1965년 6월 육군의무사령부를 거쳐 1971년 1월 1일 「국군의무사령부령」에 의해 국군의무사령부로 변경하였다. 주요 업무는 군진의학의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계획을 수립, 통제·감독 등이다.

한미연합사령부는 1978년 제11차 안보협의회회의에 의한 한미군사위원회의 전략 지시에 의해 11월 7일 창설되었다. 주요 업무는 팀스피리트 훈련 등 한미 휘하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948년 12월 7일 「국방부직제」에 의해 국방부 연합참모회의로 시작하여 1954년 2월 17일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인 합동참모회의로 변경된 후 1954년 4월 연합참모본부, 1961년 7월 연합참모국, 1963년 6월 1일 「국군조직법」 제13조에 의해 합동참모본부로 변경되었다. 주요 업무는 군령과 국방정책 수립에 있어 대통령을 보좌하고, 각 군 간의 협조체제 유지와 합동작전 수행 등 군의 총괄적인 문제를 협의·지휘하는 임무 등이다.

국방대학교는 1955년 8월 13일 「국일반명령 제231호」에 의해 국방부 국방대학으로 시작하여 1957년 1월 14일 「국방연구원령」에 의해 국방연구원, 1961년 12월 31일 「국방대학원설치법」에 의해 국방대학원으로 변경된 후 2000년 1월 1

일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해 국방대학교로 발전하였다. 주요업무는 국가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국방관리·연합 및 합동작전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연구·분석,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다.

이번에 재분류된 기록물은 예비군 편성 및 방위소집, 의무조사보고서, 전공사상자명부, 사체해부감정결과 등 병무 관련 기록과 국유재산 매각·교환·증여·양여 등의 기록, 인사(상훈, 인사발령, 징계) 기록 등이 대부분이다.

예비군 편성 및 방위소집, 의무조사보고서, 사체해부감정결과 등 병무 관련 기록 중 개인식별정보와 의료기록이 대부분인 기록물은 비공개하였다. 그 외에는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하였다. 국유재산 기록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하여 국방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할 정보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하였다. 법무·행형, 인사, 소송 등의 기록에서 개인정보가 대부분인 기록물은 비공개하되, 그 외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하였다.

● 유형별 총괄표

유 형	생산연도	권 수	기록물철	공개구분
병무(1)	1972~1978	24	어민예비군철, 방위소집해제철, 편성관계철, 민원관계철 등	부분공개 /비공개
병무(2)	1955~1979	121	의무조사보고서철, 전공사상자명부 및 발급대장, 사체해부감정결과통보, 원호보고서철 등	부분공개 /비공개
국유재산	1963~1978	262	매각, 교환, 증여관계, 양여, 국유재산매각건철 등	부분공개
법무·행형	1958~1979	22	8·15 사면감형복권관계철, 사형관계철 등	부분공개
법령·예규	1945~1979	55	훈령, 대통령령, 군정법령, 군인보수법관계철 등	공개 /부분공개
인사(상훈)	1950~1979	160	일반명령철(무공훈장관계), 상이기장수여자명부, 공로훈장대장, 장관표창장수여대장 등	부분공개
인사·징계	1946~1977	152	인사기록카드, 장교임관순대장, 인사명령, 복무기간 합산철, 징계관계철 등	부분공개 /비공개
소원·소송	1969~1979	26	소송관계철, 소원, 화해판결관계철	부분공개
기타(1)	1946~1978	7	역사일지, 국방부소개, 국제결혼관계철, 주월군경리지원 등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타(2)	1979	3	박대통령시해사건진상보고서, 전시국방계획지침, 국방기본시책	공개 /비공개
	1945~1979	832		

병 무 (1)

- ▶ 기록물철 제목 : 어민예비군철, 방위소집해제철, 편성관계철, 민원관계철, 재수생병역·부정의병전역관계철
- ▶ 생산기관 : 국방부 동원국 예비전력과, 인사국 군종과, 인사복지국 인사기획과
- ▶ 생산연도 : 1972~1978
- ▶ 수량 : 24권
- ▶ 공개재분류
 - 부분공개 제6호
 - 비공개 제6호(방위소집해제철)
- ▶ 비공개대상정보
 - 개인의 이름, 주소의 읍·면·동 이하
 - 예비군 전출자의 군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의 읍·면·동 이하
 - 부정의병전역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군번, 본적, 주소의 읍·면·동 이하, 여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 특별의무심사위원의 이름
-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1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5.22), 제8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6.26)

개 요

국방부의 예비 전력(戰力)인 어민예비군, 향토예비군 편성 및 방위소집해제, 부정의병 전역자 처리 등의 업무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동력어선 선주 및 승선원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 중 예비군 편성대상자를 중심으로 편성한 《어민예비군》철에는 <어민 예비군 편성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증정 통보>, <어민 예비군 중대 운영 실태 확인 방문결과(보고)>, <어로보호 합동 점검결과>, <회의소집>이 편철되어 있다. <어민 예비군 편성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증정 통보>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어민예비군86중대 창설에 즈음하여 어민에게 협조와 지원으로 취약도서 어민의 안전어로보호는 물론,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유공자에 대하여 감사장을 증정한다는 통보이다. 증정일시, 장소, 유공자명단에는 소속 및 직책, 직위,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어민예비군중대 운영실태 확인 방문결과(보고)>는 어민 예비군 편성실태 확인 방문 결과를 보고

한 것으로 방문일시, 방문지역, 방문관, 착안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운영실태 확인 방문 결과보고가 첨부되어 있다. 방문지역, 방문일정, 방문관(계급, 성명), 착안사항, 실태(조직편성면, 편성현황 통계, 신분별 편성 현황(장교, 하사관, 병, 보충역, 지원자), 자원관리면, 지휘운영면, 교육훈련면, 시정계획(문제점, 시정계획, 주무부서, 협조부서)이 기재되어 있다. <어로보호 합동 점검결과>는 어로보호 합동점검결과에 대한 자체 세부 시행 계획을 대간첩 대책본부장에게 보낸 것으로 어로보호 합동점검 결과시정 계획이 첨부되어 있다. <회의소집>은 대간첩 대책 본부 주관 하에 실시한 어로 보호 관계기관 합동 점검결과 어민 예비군 편성 운영에 관한 결함 사항이 있어, 이를 시정 조치하고자 관계기관 실무자 토론회를 개최하니 관계관을 참석시켜 달라는 내용의 공문이다. 일시, 장소, 참석범위가 기재되어 있고,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다. <회의록>에는 어로보호 점검결과 보고, 어로보호합동점검결과 시정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방위소집해제철》은 <방위소집해제 의결서>, <병급 전역대상자 연명부>, <의무조사보고서>, <공무상병인증서>가 편철되어 있다. <방위소집해제의결서>에는 의무조사 개최기간, 의무조사 실시인원, 의무조사위원회 위원장, 위원, 간사의 계급,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병급 전역대상자 연명부>에는 병원명, 계급, 군번, 성명, 주특기, 전상구분, 병명, 입원 연월일, 전입연월일, 귀향지, 역종구분이 기재되어 있다. <의무조사보고서>에는 계급, 군번, 성명, 입대연월일, 군복무기간, 생년월일, 병과주특기, 주민등록번호, 입원연월일, 입원전 소속, 발병장소, 전공상 구분, 현병원전입일, 입원기간, 진단명, 진단번호, 심신 장애등급, 신체장애등급, 병력, 현증세, 병리시험 및 엑스선 소견, 예후판정, 본적, 귀향지, 담당군의관의 계급·성명, 담당부장의 계급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공무상병인증서>는 계급, 군번, 성명, 생년월일, 당시소속, 복무연한, 입대연월일, 본적, 주소, 전공상 구분, 전공상연월일, 전공상장소, 발생원인 및 사유, 발생당시 수행직무 내용, 목격자 및 지휘관, 확인일자, 확인부대장의 소속·계급·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편성관계철》은 예비군 편성 기피자 단속, 각종 규정, 심신이상자의 예비군 훈련 처리 문제 등의 해결과 관련된 기록물 철로서 <예비군 문제점 건의>, <군속예비군의 자원관리>, <예비군편성요강수정건의>, <예비군 편성 기피 및 누락자 색출 정리 현황 보고>가 편철되어 있다. <예비군 문제점 건의>는 참모 방문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건의한다는 공문으로 문제점이 기재되어 있다. <군속예비군의 자원관리>는 예비군 편성대장 군속 중 전출입자와 퇴직자는 예비군 편성시행업무요강에 의거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퇴직자들이 편성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 바 관계부대에 전출자나 퇴직자에 대한 처리규정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하라는 공문이다. <예비군편성요강

수정건의)는 편성업무요강의 수정을 건의한 공문으로 현행제도, 건의안이 기재되어 있고, 육군 참모차장에게 송부된 전남 지방 감사결과문이 첨부되어 있다. <감사결과문>에는 소속, 직위, 성명, 이유(근무태만, 중대원 인솔 불철저) 등 감사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예비군 편성 기피 및 누락자 색출 정리 현황 보고>는 예비군 편성 기피 및 누락자 색출 정리 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지역별 색출정리현황통계표가 첨부되어 있다.

《민원관계철》은 <청원서처리>가 편철되어 있다. <청원서처리>는 청원서를 이첩하니 적의 처리하시고 청원인에게 회신하여 주라는 공문으로 향토예비군에 관한 처리사항을 보여주고 있다. 주로 제안, 종전의 문제점, 구상안이 기재되어 있고, <예비군 전출자 명부(소속, 계급, 군번,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출지, 전출일시 기재)>가 첨부되어 있다.

《재수생병역, 부정의병전역관계철》은 <부정의병 전역자 처리>, <부정의병전역자 처리계획>, <부정의병 전역자 추가보고>, <신체검사 수검통지서 발급지시>, <출국자통보>, <부정의병 전역자 신검>이 편철되어 있다. <부정의병 전역자 처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병 전역한 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공문으로 신체검사의 실시,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전역특명의 취소, 잔여복무 기간의 보근, 형사사건에 계류 중에 있거나 범법 사실이 발견된 자에 대해서는 의법 처리 후 보근 조치 하라는 내용으로 <부정의병 전역자 명단>이 첨부되어 있다. <부정의병전역자명단>에는 성명, 생년월일, 군번, 본적, 주소, 입대일자, 전역근거가 기재되어 있다. <부정의병전역자 처리계획>은 현역 복무 중 부정한 방법으로 의병 전역한 자에 대한 군복무 잔여기간의 보근 조치를 시행코자 하니 재가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으로 <부정의병 전역자 처리 계획>이 첨부되어 있다. <계획>에는 목적, 방침, 일반계획, 신체검사, 문제점 및 해결방안, 시행일정표 등이 제시되어 있고, 부정의병전역자 명단이 첨부되어 있다. <부정의병 전역자 추가보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병 전역한 자 중 현재 국외에 출국 중인 자들에 대하여 관계 부처 및 친권자와 협조하여 조속히 귀국하도록 조치·처리하라는 공문으로 해당자의 성명, 생년월일, 본적, 주소, 군번, 입대일자, 전역일자, 전역근거가 기재되어 있고, <부정에 의한 병적 기록표의 변조방지> 특별지시문이 첨부되어 있다. <신체검사 수검통지서 발급지시>는 부정의병 전역자 처리계획에 따라 신체검사 수검 대상자에 대한 수검통지서 발급을 수도통합병원장이 시행하도록 지시한다는 공문으로 대상자, 통지서, 송달방법, 신체검사일이 기재되어 있고, 대상자 명단(계급, 군번, 성명, 생년월일, 본적, 주소), 통지서(본적, 주소, 계급, 군번, 성명, 생년월일) 양식이 첨부되어 있다. <출국자통보>는 부정의병 전역자 명단에 의거 수검통지서를 발급한 결과 출국자가 발견되었기에 통보하니 참고바란

다는 내용의 공문으로 계급, 군번,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이 첨부되어 있다. <사실증명원>에는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성별, 여권번호, 용도, 사실증명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부정의병 전역자 신검>은 부정의병 전역자에 대한 심검결과를 통보한다는 것으로 <부정의병전역자 특별 의무심사 의결서>, <판정표>가 첨부되어 있다. <의결서>에는 특별의무심사 개최기간, 특별의무심사 개최장소, 특별의무심사 실시 인원, 특별의무심사위원회위원들의 전문과목, 계급, 성명, 사인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표>에는 성명, 생년월일, 입원일, 전역일, 수도병원 판정, 국방부 판정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재수생 대책에 검토자료>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 입학 재수생 및 무직 고등학교 졸업자가 할일 없이 21세까지 징집 대기 상태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입대 연령의 인하 조정, 군 교육기관의 활용 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입영자의 학력별, 연령별 현황 등이 첨부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이상은 국방부 동원국의 예비전력(戰力)인 어민예비군 편성, 방위소집해제, 향토예비군 편성, 부정의병 전역자 처리 등과 같은 업무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이들 기록물 가운데 비공개 대상정보는 유공자명단에 포함되 있는 소속 및 직책·직위·성명, 전역대상자의 계급·군번·성명·주특기, 청원인의 주소와 성명, 부정의병 전역자의 성명·생년월일·군번·본적·주소, 의무조사보고서, 공무상병인증서 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와 개인 증빙기록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하였다.

하지만, 본 기록물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민예비군철폐》, 《편성관계철폐》, 《민원관계철폐》은 예비군 편성 및 제도적인 문제점을 청원받은 사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서 어민예비군 편성, 향토예비군 편성, 민원이 제기된 제도적 문제점 등을 통하여 1960년대 이후 한국 군사제도사 연구의 자료로서 활용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청원인, 예비군 전출자, 감사대상자의 개인식별정보는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방위소집해제철폐》은 방위소집 해제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가 대부

분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비공개한다.

《재수생병역, 부정의병전역관계철》은 부정의병 전역자들을 처리한 기록물로서 공개하여 부정의병 전역실태 및 부정의병과 관련된 병역제도의 개선을 위해 연구자료로 활용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정의병전역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병 무 (2)

- ▶ 기록물철 제목 : 의무조사보고서철, 전공사상자명부 및 발급대상(파월포함), 사체해부감정결과통보, 전사망보고서철, 원호보고서철, 배상결정서원본
- ▶ 생산기관 : 국방부 인사복지국 복지과,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 ▶ 생산연도 : 1955~1979
- ▶ 수량 : 121권
- ▶ 공개재분류
 - 부분공개 제6호(배상결정서원본)
 - 비공개 제6호
- ▶ 비공개대상정보 : 신청자 및 위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의 읍·면·동 이하
-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12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5.22), 제8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6.26)
 - 제1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12.14),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12.18)

개 요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의 전공사상자에 대하여 의무조사, 사체해부감정, 전사망보고, 원호보고 등의 업무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의무조사보고서철》은 <파월, 전역자 원호 대상보고>, <의무장교 심사결과 통보>, <국내 의무조사보고> 등이 편철되어 있다. <파월, 전역자 원호 대상보고>는 원호대상 보고로 해당자의 계급, 군번, 성명, 원호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원호병원 이관 대상자 연명부>, <신체상이증명서>, <공상확인서>, <공무상 병인증서 대치 인사명령>, <전역명령>이 첨부되어 있다. <원호병원 이관 대상자 연명부>에는 직급, 군번, 성명, 장애등급, 병명, 전공상, 초입일, 전입일, 제대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의무조사보고서>에는 계급, 군번, 성명, 입대연월일, 군복무기간, 생년월일, 병과주특기, 주민등록번호, 초입원연월일, 입원 전 소속, 발병장소, 전공상 구분, 현병원 전입일, 입원기간, 진단명, 진단번호, 심신장애 등급, 신체장애등급, 병력, 현증세, 병리시험 및 엑스선 소견, 예후판정, 본적, 귀향지, 담당군의관의 계급, 성명, 담당부장의 계급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확인서>는 휠체어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한 확인서로 확인자의 계급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진단세부기록서>는 계급, 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 기능장애, X-선, 원병성명, 상병연

월일, 장소, 전공상구분, 기왕증, 가족병력, 현증(상병명, 원인, 경과), 정신소견, 흉부X선 소견, 국소소견, 매독반응, 검뇨소견, 정신기능장애의 상황, 시력, 청력, 치아소견, 종합장애판정급수, 진단연월일, 군의관의 계급·군번·성명, 병원장의 계급·군번·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신체상이증명서>는 계급, 군번, 성명, 최초치료병원, 최종치료병원, 전공상구분, 초진연월일, 최종진단명, 중요 치료 및 수술기록사항, 군의관 의견(군의관의 계급, 성명), 작성부대명, 증명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공상확인증서>는 계급, 군번, 성명, 생년월일, 제대당시 소속, 복무연한, 입대연월일, 전공상 연월일, 제대연월일, 본적, 주소, 전공상 원인, 전공상 당시소속, 전공상 장소, 군인 연금법 제2조 해당 여부, 통보일자, 병원장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장애보상금지급대상자조서>는 계급, 군번, 성명, 생년월일, 상이당시의 소속 부대, 전역 당시의 소속 부대, 입관일자, 장애의 원인이 된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의 직책 및 그 내용, 장애의 원인이 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사유, 발생연월일, 장소, 소속부대의 입원 또는 후송 특명호수, 입원당시의 소속부대와 후송 및 이송된 병원명, 기타 본인의 의견, 전역후의 주소, 수도통합병원장의 계급·군번·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의무장교 심사결과 통보>는 의무 장교 심사결과를 통보한다는 공문으로 의무장교 심사결과가 첨부되어 있다. <의무장교 의무심사자 연명부>에는 소속, 계급, 군번, 성명, 병과, 병명이 기재되어 있다. <국내의무조사보고>는 해당병원의 6월중 국내 의무조사서를 보고한다는 공문으로 군별 <연명부>, <의무조사보고서>, <진단세부기록 및 의견서>, <장애 급여금 대상조서>, <신체상이증명서>, <전공상확인서>, <공무상 병인증서>, <대치 인사명령>이 첨부되어 있다. <국내환자 의무조사 보고 연명부>는 계급호봉, 군번, 성명, 병과주특기, 전공상 구분, 병명, 의무조사, 의무심사, 비고가 기재되어 있다. <공무상 병인증서>는 계급, 군번, 성명, 생년월일, 당시소속, 복무연한, 입대연월일, 본적, 주소, 전공상구분, 전공상연월일, 전공상장소, 발생원인 및 사유, 발생당시 수행 직무 내용, 목격자 및 지휘관, 확인일자, 확인부대장의 소속·계급·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전공사상자명부 및 발급대장(파월포함)》에는 <전공상자 연명부 및 확인서 발급대장>이 편철되어 있다. <전공상자 연명부 및 확인서 발급대장>은 군별, 각군 발급번호, 계급, 군번, 성명, 생년 및 입대연월일, 제대당시 소속, 전공상 및 제대연월일, 제대구분, 본적, 현주소, 상이장소, 상이처, 원호처 발송 근거 및 연월일이 기재되어 있다.

《사체해부감정결과통보》에는 <감정서>가 편철되어 있다. <감정서>는 사체해부 감정서로서 해부 대상자의 소속, 계급, 성명, 나이, 군번, 사체감정을 의뢰한 의뢰자의 소속, 계급, 성명, 입회관의 계급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주로 감정사항에는 자타살의별, 익사 여부, 사인, 사후경과시간, 기타 참고사항, 해부검사소견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전사망보고서철》은 〈전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인사처리〉, 〈전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인사처리〉가 편철되어 있다. 〈전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인사처리〉는 사망보고한다는 공문으로 계급, 군번, 성명, 사망일시, 병명, 원소속, 구분(순직 등의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인사기록카드〉, 〈사망진단서〉, 〈사망경위서〉, 〈공무상병인증서〉가 첨부되어 있다. 〈전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인사처리〉는 사망자의 공무상병인증서를 송부하니 업무에 착오없이 바란다는 공문으로 계급, 군번, 성명, 사망일시가 기재되어 있고, 〈공무상병인증서〉가 첨부되어 있다.

《원호보고서철》에는 〈원호대상자보고〉가 편철되어 있다. 〈원호대상자보고〉는 전역자 중 원호대상자를 보고한다는 공문으로 〈연명부〉, 〈진단세부기록서〉, 〈전공상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가 첨부되어 있다. 〈연명부〉에는 계급, 호봉, 군번, 성명, 병과주특기, 전공상구분, 병명, 재해보상, 원호(64항, 1항등이 기재됨)가 기재되어 있다.

《배상결정서원본》은 각종 배상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정서 철로서 〈배상심의 결정서〉가 편철되어 있다. 〈배상심의결정서〉에는 승인요청 사건번호, 승인요청지구심의회, 신청인의 주소·직업·성명·출생연월일, 심의결과, 의견, 특별심의회 위원장 및 위원들의 성명과 날인이 기재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이상은 국방의무 수행 중 사망·부상자, 전역자들에 대하여 의무조사 및 원호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이들 기록물 가운데 비공개 대상정보는 계급, 군번, 성명, 병명, 급수, 주소와 개인병력에 관한 상황을 보여주는 〈진단세부기록서〉, 〈신체상이 증명서〉, 〈공무상 병인증서〉 등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하였다.

《의무조사보고서철》, 《전공사상자명부 및 발급대장(파월포함)》, 《사체해부감정결과통보》, 《전사망보고서철》, 《원호보고서철》 등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공개원칙 적용 대상 기록물이지만, 개인식별정보 및 의료진단기록 등이 대부분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비공개한다.

《배상결정서원본》의 경우는 투명한 배상심의를 위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신청자와 위원들의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국유재산

- ▶ 기록물철 제목 : 매각(협의지시), 교환(506보안대), 증여관계(한국비료), 양여, 특회재산(상도동), 국유재산매각건철
- ▶ 생산기관 : 국방부 군사시설국 관재보상과, 시설국 관재과, 총무과
- ▶ 생산연도 : 1963~1978
- ▶ 수량 : 262권
- ▶ 공개재분류 : 부분공개 제6호
- ▶ 비공개대상정보
 - 이름, 주소의 읍·면·동 이하 등 개인식별정보
 - 재산포기각서, 가족대장, 재산권리증서, 주민등록표, 인우보증서, 인감증명원
-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12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5.22), 제8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6.26)

개요

국방부가 소유한 주둔지, 훈련장, 작전시설로서 군의 병영생활을 유지하고 전투력 유지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군용지 및 타부처 국공유지, 민간 소유 재산에 대하여 관리(취득, 유지, 보존, 운용), 처분(매각, 취득, 교환, 양여 등)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매각(협의지시)》에는 <재산운용계획의 빈번한 변경 억제>, <매각건철 반송 상신>, <부동산 시가 감정의뢰>, <매각건철 보완 상신>, <국유재산 매각상신 서류 보완>, <국유재산 매각상신>,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 <국유재산매각상신>, <국유재산매각>, <국유재산 매수에 대한 건의>가 편철되어 있다. <재산운용계획의 빈번한 변경 억제>는 육군참모총장이 공병감에게 보낸 것으로 재산 처리방안이나 또는 이미 확정된 재산 운용계획을 빈번히 변경 상신하므로 재산 관리의 혼란을 자초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재산 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요청한 공문이다. 대상 재산의 소재지 및 평수가 기재되어 있다. <매각건철 반송 상신>은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매각상신 재산은 군용필요에 의하여 처분 업무가 재검토 되어야하므로 매각 일건 서류를 반송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으로 재산의 주소지와 평수가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 시가 감정의뢰>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시가 감정을 의뢰하니 감정 후 감정서를 송부하여 주라는 공문으로 <재산

목록(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과 <지적도>가 첨부되어 있다. <매각건철 보완 상신>은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재산의 매각상신 중 미비 사항에 대하여 보완 제출하니 조치 바란다는 공문으로 재산명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예정가격, 신청인), 매각건철이 첨부되어 있다. <국유재산 매각상신 서류 보완>은 상신한 재산을 검토한 바 서류 미비로 반려하니 보완 후 상신하라는 공문으로 재산의 표시와 미비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재산명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비고에는 신청인의 성명 기재되어 있기도 함)>, <토지대장등본>, <재산평가조서(재산소재지, 재산종별, 재산구조, 재산수량, 재산의 위치, 재산현황, 건물의 용도 및 실태, 재산주위환경, 도시계획 관계, 교통사정, 장래성, 전기수도시설, 인근재산의 매매실례, 조사자의견)>, <경작확인원(주소, 성명,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위원인의 성명, 주소)>, <부지증명원>, <재산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다. <국유재산매각상신>은 목록 재산에 대하여 교외이전 세입제 원용으로 처분하고자 매각상신하니 조치를 바란다는 공문으로 재산목록(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단가, 금액, 신청인)이 기재되어 있고, <재산명세서(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지적, 용폐지적, 대장가격)>, <이유서(외각에 위치한 불요지로 판단, 용도 폐지 상신하니 승인하여 주라는 이유서로 이유인의 계급, 소속, 성명, 일자가 기재)>, <매수경위서-작성상 불필요한 지역이므로 용도폐지 상신 하였다는 경위서로 작성자의 소속, 직위, 성명이 기재>가 첨부되어 있다.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는 한국감정원이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부동산 시가감정의뢰에 대하여 감정회보 한다는 공문으로 <감정서>가 첨부되어 있다. <국유재산매각>은 경북 영일군에 매각함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제26조 6항을 적용하여 매각 대금에서 50%를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당부로서는 군용시설 교외 이전 특별회계세입상에 차질을 가져오게 되므로 불가하니 조속히 매수하여 주라는 공문으로 재산의 소재지, 평수가 기재되어 있다. <국유재산 매수에 대한 건의>는 경상북도에서 작성한 것으로 공장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국방부 소관 재산이 있어 협의한바 결과를 기재하고, 협의결과 내용, 경위서, 관련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교환(506보안대)》에는 <국유재산교환상신>, <재산교환협의상신>, <이유서>,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 <소공지구 재개발 사업 협조요청>, <부대건물이전건의>, <부대건물신축건의>가 편철되어 있다. <국유재산교환상신>은 육군 보안사령부 예하 506보안부대의 현주둔 지역인 서울시 소공지구 개발계획에 의거 고층빌딩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이전하여야 할 실정이므로 민유재산을 선정, 교환하고자 상신하니 조치를 바란다는 공문이다. 재산의 표시에 국유재산의 소재지, 민유재산의 소재지, 평수가 기재되어

있고, <교환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재산교환협의상신>은 보안사령부에서 참모총장에 게 보낸 것으로 해당 사령부가 관리하는 군용재산과 개인소유재산의 교환협의를 신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으로 <국유재산교환요청서>, <이유서>, <감정서>, <교환계약서안>, <교환승낙서>, <재산포기각서>, <위치도>, <지적도>, <토지대장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가옥대장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가격평정조서>가 첨부되어 있다. <국유재산교환요청서>는 소재지, 국유재산 색인번호, 지번, 지목, 지적, 국유재산 대장 가격, 교환채택가격, 현소유자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교환계약서>에는 교환 재산인 국유재산과 민유재산의 소재지, 평수,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재산포기각서>는 재산평가상의 차액분에 대하여 대금의 청구나 기타방법의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로 갑과 을의 재산 소재지, 평수, 재산평가상의 차액, 주소, 성명, 제출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재산가격평정조서>는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단가, 금액, 출원인, 조서보고자의 소속, 계급,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교환승낙서>는 표시재산과 국가소유인 재산의 교환을 승낙한다는 승낙서로 승낙인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감정서>는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것으로 감정인의 직위와 성명, 감정가격, 사업체명 및 성명, 감정일자, 감정목적, 소재지, 지번, 용도, 구조, 면적, 감정가격이 기재되어 있다. <소공지구 재개발 사업 협조요청>은 서울특별시에서 국방부에 보낸 것으로 소공지구의 개발 필요성이나 시행계획 내용에 대하여 알려 드린 바 있으나 추후 시행될 자금조달 방안 및 시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드리니 시정에 최대한 협조를 바란다는 공문이다.

《증여관계(한국비료)》는 <징발재산 매수 대금 수령>, <부동산 기증에 대한 회신>, <부동산 기증>, <회사 소유 부동산(임야) 기증>, <기증재산 조화에 대한 회신>,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처리지시>가 편철되어 있다. <징발재산 매수 대금 수령>은 징발재산의 매수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 통보하였으니 통지서를 받은 후에 해당은행에 가서 토지대금을 수령하시기 바란다는 공문으로 재산의 표시에는 소재지, 수신자에는 징발재산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매수결정통지서>가 첨부되어 있다. <부동산기증에 대한 회신>은 자주 국방 달성을 위해 군부대 훈련장으로 기증한 건에 대하여 국유로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절차를 이행코자 하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달라는 공문이다.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재산권리증서>, <법인등기부 등본>, <대표이사 인감증명>, <이사회 결의서>가 첨부되어 있다. <부동산 기증>은 재산현황, 기증자, 증여목적(훈련장 부지)이 기재되어 있다. <회사 소유 부동산(임야) 기증>은 방위성금 모금 운동과 관련하여 폐사 소유 부동산을 기증한다는 공문으로 <기증 부동산 내역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등급, 평가기준액)가 첨부되어 있다. <기증재산 조회에 대한 회신>은 한국 비료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 기증의사를 표시하는 공한을 접수하고, 국유재산으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는 공문으로 기증재산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처리지시>는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로부터 국유재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 관리 후 결과보고 하고, 본 재산의 현 실태를 조사 후 군소유 부분은 계속 확보하고, 잔여 불요지는 사전 점유지 정리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한 것으로 재산의 소재지, 목적물이 기재되어 있고, <재산권리증서>, <토지대장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양여》에는 <국유재산 양여>, <국유재산 양여 검토보고>, <국유재산 양여신청>, <국유재산 양여신청 반려>, <국유재산 무상 양여>가 편철되어 있다. <국유재산양여>는 양여 요청한 재산이 군 수송업무수행을 위하여 계속 군 통제하에 있어야 할 재산이므로 양여 불가함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란다는 공문으로 해당 재산의 소재지, 평수가 기재되어 있다. <국유재산양여 검토보고>는 검토 지시받은 해당 재산은 고속도로를 통한 육로 수송시 사용키 위한 진입로로서 군 통제하에 있어야 함으로 양여불가함을 보고한다는 공문으로 해당지의 소재지, 평수가 기재되어 있다. <국유재산 양여신청>은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환·증평 간 지방도로에 편입된 국방부 소관 재산에 관하여 양여 신청을 접하고 이를 시달하니 내용 조사 후 양여 가능한 재산이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점유 재산 정리계획에 의거 재무부에 추가 협의하고자 하니 실태를 조사·보고하라는 공문으로 해당 재산의 소재지, 평수가 기재되어 있다. <국유재산 무상 양여>는 국방부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낸 것으로 양여 요청한 건에 대하여 양여증서를 송부하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으로 양여증서가 첨부되어 있다.

《특회재산(상도동)》은 <토지분할신고>, <토지분할측량>, <시가감정의뢰>,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 <국유재산 매수요구>, <군용시설 교외이전 특별회계 대부인 선정 통보 및 대부 계약>, <납세대행인 결정 신고서 송부>가 편철되어 있다. <토지분할신고>는 현지 사용인이 지적협회에 측량을 의뢰하여 지적협회로부터 측량을 완료하고 과세지정신고서가 송부하여 왔으므로 관인날인 신고하고자 건의하니 재가하여 주라는 공문으로 <과제지정 신고서>, <분할도>가 첨부되어 있다. <토지분할측량>은 대한지적협회에서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토지소재지>, <임야분할 신고서>, <임야분할도>, <건축대지증명원-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점유자별 지번, 평수>, <주민등록표>가 첨부되어 있다. <시가 감정의뢰>는 국방부에서 관리중인 해당 재산에 대하여 감정 의뢰하니 감정하신 후 감정서를 송부하여 달라는 공문으로 재산의 소재지, 평수가 기재되어 있고, <지적도>가 첨부되어

있다.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는 의뢰한 감정의뢰에 대하여 회보한다는 공문으로 <감정서>, <청구서>가 첨부되어 있다. <국유재산 매수요구>는 재산을 매각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공문으로 <재산의 소재지 및 매각대금, 매수자>가 첨부되어 있다. <군용시설 교외이전 특별회계 대부인 선정통보 및 대부 계약>은 군용시설 특별회계 재산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의거 대부인을 선정 통보하여 계약서 안과 같이 대부 계약체결하고자 하니 재가하여 달라는 공문으로 대부 재산의 표시와 대부료 및 수대부자 현황(지번, 지목, 수량, 대부료, 성명)이 표로 기재되어 있고, <대부료 산정조서>, <대부인 선정통보>, <대부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납세대행인 결정 신고서 송부>는 재산을 매각하였기에 납세대행인을 결정 통보한다는 공문으로 재산의 표시 및 매수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납세대행인 결정신고서(과세물건의 표시, 매각대금 납부방법, 납세 대행인의 주소와 성명)>가 첨부되어 있다.

《국유재산매각건철》은 <국유재산대부·매각>, <매도증서발급>이 편철되어 있다. <국유재산대부·매각>은 군용시설 교외 이전과 관련하여 대부매각번호, 감정번호, 대부·매각연월, 대장번호, 소유권이전연월일, 재산종별 수량, 재산소재지, 신청자의 주소·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매도증서발급>은 육군보관청에서 매각한 재산으로서 매수한 자에게 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매도증서를 발급하고자 재가하여 주라는 공문으로 재산의 표시, 매각대금, 수신처에는 매수한 자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위임장>, <매도증서>, <재산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 <국유재산매매계약서>, <국유재산 매수요구서>,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각서>, <대부인 선정통보서>, <임대료산정조서>, <가격사정표>, <부동산감정표>, <재산평가조서>, <대부매각조사서>, <국유재산 대부 허가신청서>, <등기부 열람조서>, <토지대장등본>, <지적도>, <인우보증서>, <인감증명원>이 첨부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이상은 국방부가 소유한 주둔지, 훈련장, 작전시설로서 군의 병영생활을 유지하고 전투력 유지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군용지 및 타 부처 국공유지, 민간 소유 재산에 대하여 관리(취득, 유지, 보존, 운용), 처분(매각, 취득, 교환, 양여 등)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이들 국유재산 관련 기록물 가운데 비공개 대상정보를 살펴보면 재산 처리과정에서 매수자와 인수자의 성명·주소,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토지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첨부서류로서 <주민등록표>, <인감증명서>가 포함되어 있다. 기존에는 정보공개법 제9

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에 의해 공개될 경우 국방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이익을 해하거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였다.

그러나, 위 기록물들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최소한의 비공개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기록들은 국방부가 군용지의 병영시설과 훈련장 등의 교외 이전이나 지자체의 도시계획에 따라 편입된 국유재산을 매각, 양여 등의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서 군 재정사 및 국방부 국유재산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에 매우 귀중한 역사적인 기록물로서 공개하여 역사연구의 사료로서 활용하는 것이 비공개하여 보존하는 것보다 더 공익이 크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록물이 군사시설 이전과 작전계획 변경에 따른 부대의 통·폐합이나 이전, 주류군재산(한·미상호 방위 조약에 의하여 미군에 공여한 국유재산) 인수 등에 따른 유희 국유재산의 소유권이나 기타의 권리를 처리함에 있어 매각, 환매, 교환, 양여, 시설물 철거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보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 개인신상기록을 제외하고 공개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현저하게 침해할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의 기록물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 및 증빙 기록을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법무·행형

- ▶ 기록물철 제목 : 8.15 사면 감형 복권 관계철, 사면·감형·복권관계철, 사형관계철
- ▶ 생산기관 : 국방부 법무관리관
- ▶ 생산연도 : 1958~1979
- ▶ 수량 : 22권
- ▶ 공개재분류 : 부분공개 제6호
- ▶ 비공개대상정보
 - 이름, 군번, 주소 및 본적의 읍·면·동 이하
 - 호적등본, 진단서, 유언서
-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12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5.22), 제8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6.26)
 - 제1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12.14),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12.18)

개요

국방부의 사면, 감형, 복권, 사형집행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8.15 사면, 감형, 복권 관계철》은 <군별, 죄과별 사면감형통계>, <특별사면 및 특별감형 실시건의>, <1군급식비 부정사건관련자>, <자료보고>, <8.15사면 요강안 송부>, <자료보고 추가지시>, <특별사면 및 특별감형 실시>, <특별감형 실시결과보고>, <감형장 반송>, <특별사면 및 특별감형 실시 결과보고>가 편철되어 있다. <군별, 죄과별 사면감형통계>에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일반교도소의 특별사면, 특별감형 통계가 기재되어 있다. <특별사면 및 특별감형 실시건의>는 제25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군관계 수형자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감형을 시행 건의한 것으로 특별사면자들의 성명과 사건명이 기재되어 있고, <8.15사면 요강안>이 첨부되어 있다. <요강안>에는 사면의 목적, 사면의 종류, 특별사면의 대상과 효과, 특별감형의 대상과 효과가 기재되어 있고, 특별사면에 제외되는 범죄가 첨부되어 있다. <1군급식비 부정사건 관련자>에는 범죄개요, 관련자들의 성명, 당시 계급, 직명, 원 형기, 1차 감형, 현재복형기간, 수감교도소가 기재되어 있다. <자료보고>에는 형집행정지자, 가석방자 및 각 교도소에 수용되어 형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특별 사면자 및 특별 감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것으로 사면 기준이 기재되어 있다. <8.15사면 요강안 송부>는 8.15특별 사면 및 특별감형에 따른 당부의 사면 요강을 송부하니 국무회의에 제출하여 달라는 공문으로 <사면요강안>이 첨부되어 있다. <자료보고 추가지시>는 형집행 정지자, 가석방자 및 각 교도소에 수용되어 형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특별 사면 및 특별감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공문이다. <특별사면 및 특별감형 실시>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특별사면 및 특별감형을 실시하기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기에 특별사면장 및 특별감형장을 송부하니 집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으로 특별사면 및 특별감형자 명단, 특별사면장, 특별감형장이 첨부되어 있다. <총괄표>, <특별사면 일람표>, <특별감형자 일람표>, <군별 통계>, <특별사면자>, <감형자명부>에는 본적, 성명, 성별, 연령, 죄명, 형명, 형기, 형기기산일, 8.15현재 복형기간, 잔형기, 복형장소가 기재되어 있다. <특별감형 실시결과보고>는 광복절 특별감형자의 감형을 실시하였기에 보고한다는 공문으로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죄명, 형종료일, 감형일수가 기재되어 있다. <감형장 반송>은 장물취득 절도로서 감형 구신하였으나, 적용법조가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5조, 제2조 1항 1호에 해당하기에 감형장을 반송한다는 공문이다. 대상자의 죄명, 형명·형기, 성명, 연령이 기재되어 있고, <감형장>이 첨부되어 있다. <감형장>에는 본적, 성명, 연령, 죄명, 형명·형기, 수용교도소가 기재되어 있다. <특별사면자조서>에는 사면대상자의 인적사항(본적, 주소, 성명, 수용교도소, 연령, 성별), 죄 및 형(확정연월일, 확정법원, 죄명, 형명형기, 형기기산, 형집행기간, 잔형기), 심사사항(범죄 동기 및 정상, 감형될 기간, 성행, 행장 성적, 징벌, 보호관계, 상벌기타), 범죄개요가 기재되어 있다.

《사면·감형·복권관계절》은 법무부 교도소 군수형자 중 특별사면 대상자 자료제출과 총괄표, 통계표, 특별 사면사 명단, 특별 사면자 조서, 특별 사면 대장자 판결문(보통군법회의, 고등군법회의 판결문 포함), 특별 사면대상자 확인서, 교도소장에서 보내는 형집행지휘서 사본이 편철되어 있다. <특별사면자 조서>에는 대상자 인적사항(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령, 생년월일, 성별, 수용교도소), 죄 및 형, 심사사항, 범죄개요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국방부 특별사면 자료 제출 지시에 따른 특별사면 요강(안) 및 업무처리지침, 군수형자 중 특별사면 자료제출관련 군행형관계관 회의 소집 공문과 회의참석자 명단,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범 처리지침, 대통령공고, 긴급조치 제9호 위반자 현황(총집수인원, 석방자, 석방구분, 미석방이유가 포함) 등이 첨부되어 있다.

《사형관계절》은 <사형집행명령>, <사형집행계획>, <사형집행상신>, <대법원형확정 명령 제43호>, <사형집행종료보고>가 편철되어 있다. <사형집행명령>은 사형집행 상신 관련

공문으로 군법회의법 제498조의 규정에 의거 사형집행을 명하니 집행하고 결과를 보고 하라는 공문이다. 해당자의 신분, 성명, 생년월일, 본적, 죄명, 확정일, 사형집행명령일이 기재되어 있고, <사형집행명령서>, <사건기록부>가 첨부되어 있다. <사형집행명령서>에는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계급, 죄명, 범죄개요, 사건관련인,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별지에 주소, 성명, 계급, 생년월일, 죄명,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사형집행계획>은 대상자의 인적사항, 본적, 주소, 성명, 계급, 죄명, 사형집행계획 예정일, 사형집행 장소가 기재되어 있다. <사형집행상신>은 사형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군법회의법 제497조에 의거 형집행을 명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으로 해당자의 신분, 성명, 비고에는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사형 집행구신서>, <건철표>, <판결>,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사형집행구신>에는 군법회의에 소송기록을 제출하니 사형집행명령을 하여 주라는 구신으로 피고인, 죄명, 판결(군법회의, 선고, 확정), 확인(연월일, 요지), 형명, 수용교도소가 기재되어 있고, 기록 및 판결등본, 확인서, 건강진단서, 호적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건철표>에는 피의자, 피고인의 성명, 죄명, 재판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판결>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의 인적사항, 관여한 검찰관, 변호인, 항소인, 변론, 원판결, 주문, 사건관련인들의 성명, 재판장, 법무사, 심판관의 계급·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확인서>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본적,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생년월일), 판결(연월일, 요지),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형확정 명령 제43호>는 판결내용이 표로 제시되어 있고,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죄명, 1심판결, 확인, 2심판결, 3심판결, 형확정일, 복형장소가 기재되어 있고, <호적등본>,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다. <사형집행종료보고>는 사형집행을 종료하였기에 보고한다는 공문으로 사형집행명령일자, 신분, 성명, 죄명, 사형집행 일자, 사형집행 장소가 기재되어 있고, <육군에서의 사형집행종료보고>가 첨부되어 있다. <사형집행종료보고>에는 사형수의 본적, 주소, 소속, 계급 및 군번, 성명, 연령, 죄명, 집행명령일, 일시, 장소가 기재되어 있고, <사형집행조서>가 첨부되어 있다. <사형집행조서>에는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계급, 죄명, 범죄개요, 사건관련인·피해자의 성명, 집행장교의 계급·성명·군번이 기재되어 있고, <유언서>가 첨부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이상은 군의 법무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이 특별사면의 집행, 감형, 복권 및 사형 등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이들 대상기록물 가운데 비공개 대상정보는 특별사면 대상자의 성명, 계급, 군번, 죄

명, 사형집행 대상자의 성명, 주소, 계급, 생년월일, 죄명, 〈특별사면자조서〉 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와 개인 증빙기록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하였다.

하지만, 본 기록물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면, 감형, 복권관계철》은 사면 실시 당시 법무부가 발표한 사면 발표문 및 보도자료에 이미 명단이 발표되었고,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감형의 경우에도 잔형의 집행이나 교정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예상되지 않으므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대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두24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11.26 선고 2003누23143 판결)을 한 바 있다. 다만, 모든 대상자를 실명으로 공개할 경우 사면, 감형자의 수형 사실이 함께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사형관계철》은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형의 집행'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므로 공개하여 사형제도 연구나 사회사 연구 등 다양한 학술연구의 자료로서 활용케 하는 것이 비공개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보다 공익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특별사면 및 사형 기록물 일체를 공개로 재분류하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개인식별정보 및 증빙기록을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법령·예규

- ▶ 기록물철 제목 : 훈령, 대통령령, 군정법령집, 군인보수법관계철, 보수수당관계철
- ▶ 생산기관 : 국방부 법무관리관 법제담당관, 동원국 예비전력과, 인사복지국 인사기획과
- ▶ 생산연도 : 1945~1979
- ▶ 수량 : 55권
- ▶ 공개재분류 : 공개
- ▶ 비공개대상정보
-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12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5.22), 제8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6.26)
 - 제1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12.14),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12.18)

개요

국방부의 각종 법령, 규칙, 예규와 관련된 기록물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훈령》은 〈국방부조사대사무분장 및 운영규정〉, 〈검열실시명령서〉, 〈합동참모본부처무 규정〉, 〈주외무관선발규정개정령〉, 〈군체력 검정규정〉, 〈비밀취급인가 및 신원조사 규정 중 개정령〉, 〈각군공통 물자조달규정 중 개정령〉,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중 개정령〉, 〈국방부 위임 전결 사항 규정 개정령〉, 〈군사통계위 규정 개정령〉, 〈군사통계 위 규정 개정〉, 〈군사보고 통계규정〉, 〈군용매장물자발굴 등 처리규정〉, 〈도망병 방지를 위한 훈령 제80호〉등이 편철되어 있다.

《대통령령》은 〈국방부직제(대통령령 제37호)〉, 〈병역임시조치령〉, 〈해군사관학교령〉, 〈해군기지설치령〉, 〈국군징계령〉, 〈통제부직제〉, 〈공군본부직제〉, 〈육군병원직제〉, 〈계엄하 군사재판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대통령령이 첨부되어 있다.

《군정법령집》은 법제처에서 군정법령 중 폐지 또는 실효된 것이 적지 않으나 그 중에는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아직 그 효력이 존속되어 있는 부분 또한 적지 않으므로 군정법령의 효력유무를 판별케 하여 그 효력이 존속된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집록·간행한 간행물이다. 〈위생국설치에 관한 건〉, 〈재산이전금지〉, 〈일반인의 무장해제〉, 〈일본육해군 재산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관방지방과폐지〉, 〈일본인의 등기〉 등에 대하여 실효 유무

를 표시해 두어 행정자료로 참조토록 하였다.

《군인보수법관계철》에는 군인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 군속인사법시행 규칙 중 개정령, 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 폐지령, 군인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재외공관주재무관보수규정 중 개정령(안), 군인보수법시행령개정(안) 등이 편철되어 있다.

《보수수당관계철》은 국방부 인사복지국 인사기획과에서 생산된 문서로 군인제도 연구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구조성비 지급 의견, 군인평균호봉추이, 군인 각종 수당 집행실적, 군인군속 봉급 결산추계, 군인력 운영 및 급여예산집행, 군인보수법 시행령개정 요청, 특수장려수당 지급방안 제출, 정근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및 회신문서, 특수 장려수당 지급방안(보고), 공중근무자와 기술장병 처우개선 상신, 특수장려수당 지급 건의, 위험수당(병)지급 기준액 인상지급, 수당지급 기준 개선 회신, 정밀 고가정비 운용 하사관 인사관리, 군인수당 기준액 조정 협의(경제기획원), 기능사 장려금 지급제도 개선(안) 등 각종 특수장려수당, 군인수당, 주한미군 특수근무요원 수당 등 수당 지급 개선과 군인보수법 시행령 개정 요청 관련 기록들이 편철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이상은 국방부의 각종 인사, 조직, 보수, 법령 등에 관한 예규, 규칙 등을 편철한 것으로,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이다.

이미 국방부는 국민 편의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소관 훈령·예규·고시의 제정·개정 사항은 '사전공표대상'으로 고시나 보도자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법령, 예규·지침 기록물은 공개한다.

인 사 (상훈)

- ▶ 기록물철 제목 : 일반명령철(무공훈장관계), 상이기장수여자명부, 공로훈장대장, 을지훈기대장, 장관표창장수여대장, 대한민국훈장기장대장(육군)
- ▶ 생산기관 : 국방부 인사복지국 인사근무과
- ▶ 생산연도 : 1950~1979
- ▶ 수량 : 160권
- ▶ 공개재분류 : 부분공개 제6호
- ▶ 비공개대상정보 : 군번, 본적 및 주소의 읍·면·동 이하, 공적조서
-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12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5.22), 제8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6.26)
 - 제1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12.14),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12.18)

개 요

국방부의 상훈 및 표창 관련 기록물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일반명령철(무공훈장관계)》에는 〈6.25전선유공자〉, 〈3등무공훈장〉, 〈4등무공훈장〉 등이 편철되어 있다. 〈6.25전선유공자〉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1950년 12월 30일 부로 6.25사변 각 지구 전선 유훈자에 무공훈장수여를 확인하는 기록으로 계급, 성명, 군번, 소속이 기재되어 있다. 〈3등무공훈장〉, 〈4등무공훈장〉, 〈육군장교무공훈장〉 등은 무공훈장수여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상이기장수여자명부》는 〈특별, 보통 상이기장 수여자 명부〉, 〈훈장수여자명부〉가 편철되어 있다. 〈특별, 보통 상이기장 수여자 명부〉에는 기장증 번호, 계급, 군번, 성명, 소속, 본적, 주소, 일반명령호수, 수여 연월일이 기재되어 있다. 〈훈장수여자명부〉에는 훈기번호, 훈경 및 기장번호, 일반명령호수, 수여연월일, 계급, 계급군번, 성명, 소속, 공정약기(수공지구, 수공기간, 당시직책, 전과 또는 전사상 구분)가 기재되어 있다.

《공로훈장대장》은 〈색인목록〉, 〈훈기대장〉이 편철되어 있다. 〈색인목록〉에는 군번, 계급 및 직위, 부대명 또는 성명, 소속 및 기관명, 향수가 기재되어 있다. 〈훈기대장〉에는 훈장종별, 훈기번호, 훈장번호, 수여연월일, 군번, 소속 및 기관명, 계급, 직위, 성명 및

생년월일, 국적 또는 본적, 주소, 일반명령호수, 수여관직명이 기재되어 있다.

《을지훈기대장》은 <색인목록>, <을지훈기대장>이 편철되어 있다. <색인목록>에는 군번, 계급 및 직위, 부대명 또는 성명, 소속 및 기관명, 항수가 기재되어 있다. <을지훈기대장>은 훈장종별, 훈기번호, 훈장번호, 수여연월일, 군번, 소속 및 기관명, 계급, 직위, 성명 및 생년월일, 본적, 주소, 일반명령호수, 공적이 약술되어 있다.

《장관표창장수여대장》은 <색인목록>, <장관표창장수여대장>이 편철되어 있다. <색인목록>에는 군번, 계급 및 직위, 부대명 또는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대장>에는 표창장 수여자의 본적, 주소, 직위, 군번, 계급, 성명, 생년월일, 수여연월일이 기재되어 있다.

《대한민국훈장기장대장(육군)》은 일련번호, 증서호수,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수여일자로 구성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위 기록물은 국방부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자에 대한 서훈에 관한 내용으로, 다양한 훈·포장, 표창자의 상훈 내역을 살펴볼 수 있다.

이들 상훈 관련 기록물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하여,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원칙을 적용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록물은 개인 또는 단체의 공로를 치하하는 것으로 공개 시에 개인의 비밀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요소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수훈자에 대한 이름을 포함한 소속, 직위, 생년월일, 수여연월일, 공적내용 등 대장형식의 정보는 공개한다. 다만, 개인의 공적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조서나 증빙자료 및 군번, 주소·본적의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인사·징계

- ▶ 기록물철 제목 : 인사기록카드, 장교임관순대장, 인사명령(갑,을,병,장교), 군무원인사명령원본철, 복무기간 합산철, 징계관계철, 징계의결기록(을)철(국군수도통합병원), 징계 및 항고관계철
- ▶ 생산기관 : 국방부 총무과, 인사국 인사과·인사관리과, 기획관리실, 조직관리관, 군무지원단 의무실·지원대대, 국방대학원 행정부, 한미연합사령부
- ▶ 생산연도 : 1946~1977
- ▶ 수량 : 152권
- ▶ 공개재분류
 - 부분공개 제6호
 - 비공개 제6호(인사기록카드, 장교임관순대장)
- ▶ 비공개대상정보
 - 생년월일, 군번, 주민등록번호, 주소의 읍·면·동 이하
 - 사직원, 복직원, 진단서
 - 징계협약자·대상자·처분자 및 관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군번, 소속, 계급, 본적 및 주소의 읍·면·동 이하 등 개인식별정보
 - 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이름
 - 피의자의 이름, 계급, 군번, 가족사항, 주소의 읍·면·동 이하
-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12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5.22), 제8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6.26)
 - 제1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12.14),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12.18)

개요

국방부 및 소속기관, 직할 부대의 인사·복무·징계 관련 업무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인사기록카드》는 사진, 성명, 본관, 성별, 생년월일, 본적, 주소, 생활근거지, 호주 성명 및 관계, 신체상황, 재산, 병역관계(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정당사회단체, 가족관계, 자격면허, 포상서훈, 징계형벌, 훈련, 외국시찰수학, 학력, 경력, 외국어해독,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 승진순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교임관순대장(200002-208000)》은 <기록삭제확인부>, <대장>이 편철되어 있다. <기록삭제확인부>에는 작성연월일, 인적사항(군번, 성명), 삭제사항(최종진급 연월일, 처벌기록), 취급자, 확인관, 인정관의 도장과 사인이 날인되어 있다. <대장>에는 군번, 성

명, 생년월일, 병과, 기별, 입관연월일, 진급연월일, 최종학교명, 출신도 및 군, 전군사경력연수 및 최종계급, 포상사항, 징벌사항(탈영이나, 징계사항 등이 기재), 기타사항(주로 전사연도)이 기재되어 있다.

《인사명령》은 각 군 및 국방부 본부, 예하기관에서 생산된 인사명령으로 전속, 보직부여, 보직변경, 진급, 임명, 파견 등 인사명령과 호봉승급, 호봉재부여 등 호봉발령, 계급 유형(장교, 장군, 하사관, 군무원 등)에 따른 인사명령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공통적으로 소속, 계급, 군번, 성명, 명령사항, 군사특기가 수록되어 있다. 군무원의 경우에는 소속, 직급, 성명, 순번, 직렬이, 교수의 경우에는 소속, 직급, 성명이 수록되어 있다.

《군무원인사명령원본철》은 군무원들에 대한 임명, 면직과 관련된 기록물로서 <군속 면관 상신에 관한 건>, <군속 면관 상신>이 편철되어 있다. 주로 해당자들의 성명, 부여순번, 임명직위, 호봉, 연령, 학력, 경력 및 연수, 추천 급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군속 면관 상신에 관한 건>은 근무태만자의 출근부 원본을 제출하라는 공문으로 대상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군속 면관 상신>은 군속을 군속령 제17호 2항에 의거 면관 시키고자 상신하니 재가하여 주라는 공문으로 번호, 급호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군속면관상신>이 첨부되어 있다. <군속면관상신>에는 번호, 급호수, 직명, 성명, 연령, 입관연월일, 면관사유, 복무기간, 신청부대가 기재되어 있다.

《복무기간합산철》은 감사원 장려비 지급 질문서 및 답변서, 기술장려비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군인보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청원서, 복무기간 합산, 군인수당 법정 현실화 계획, 계급별 보수비교표, 연도별 봉급액, 호봉기준표, 군 경력 합산 방안 검토 보고, 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회계 질의,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급여 성격 수당 예산현황 통보, 군속 기술수당 지급 질의 및 답변서, 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회계질의 회신, 전산업무 종사자 수당지급 지시, 법무관 및 군의관 처무개선(안), 전직호봉 합산 문의, 경력(재직)조회 회보,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문서, 감사원 처분요구 결산현황 등이 편철되어 있다.

《징계관계철》은 <합동참모부 징계의결기록>, <징계위원회 회부 건의>, <보직해임>, <위원소집>, <출석요구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상황일지>가 편철되어 있다. <합동참모부 징계의결기록>에는 비행건명, 성명, 계급, 소속, 군번, 징계위원회 위원의 직위·계급·성명, 간사·서기의 성명, 결정사항에는 해당자에 대한 징계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징계의결서>가 첨부되어 있다. <징계의결서>에는 개최일자, 개최장소, 비행인의 인적사항(소속, 계급, 군번, 성명), 원심비행건명, 원심비행사실, 심사개요가 기재되어 있다. <징계위원회 회부 건의>는 업무상 비위 장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건의하니 재가하여 주라는 공문으로 해당자의 계급, 군번, 성명, 일시, 장소, 징계위원회 구성(위원장의 성명, 계급)이 기재되어 있다. <보직해임>은 징계위원회의 결과대로 보직해임한다는 공문으로 해당자의 계급, 군번, 성명, 병과, 소속이 기재되어 있다. <출석요구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통보하니 출석하라는 공문으로 출석일자, 출석장소, 해당자의 소속, 계급, 군번,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의 비행사실을 신문한 것으로 피의자의 성명, 주소, 소속, 계급, 군번, 연령, 학력, 가족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의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진술서>에는 증인들의 진술서로 징계대상자의 성명, 진술자의 군번, 소속, 성명, 계급이 기재되어 있다. <상황일지>는 일시, 장소, 내용, 신고자의 주소와 성명,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상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징계의결기록(을)》에는 비행건명, 성명, 계급, 소속, 군번, 징계위원회의 위원의 직위, 계급, 성명, 사인, 간사, 서기의 성명, 결정사항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징계의결서>가 첨부되어 있다.

《징계 및 항고관계철》에는 징계항고서 접수통고, 징계항고심사의결기록, 징계항고심사결정통지서, 징계처분항고서 등이 편철되어 있다. <징계항고서 접수통고>에는 항고인의 인적사항(소속, 계급, 군번, 성명, 주소) 및 범행일시, 장소, 범행사실, 원심처분 결과, 요망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징계항고 심사의결기록>에는 원심비행건명, 항고인의 소속·계급·군번·성명, 비행사실, 항고이유, 심사개요, 결정, 항고심사권자의 조치 사항 및 일자, 징계항고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징계항고 심사결정통지서>에는 소속, 계급, 군번, 성명, 결정사항 및 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징계처분항고서>에는 소속, 계급, 군번, 성명, 항고이유 등이 기재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인사, 징계 관련 기록물에는 개인의 인사이력 및 징계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개인의 인적사항과 근무상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위 기록물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하여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사기록카드》는 개인정보가 대부분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한다.

《장교임관순대장》은 장교들의 임관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징계, 훈포장(주로 전쟁이나 작전에서 전과에 따른 훈포장 수여) 사실, 장교들의 소속, 진급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어 장교들의 공적, 진급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록물이다. 해당 대장은 인사기록카드와 같은 유형의 기록물로 개인식별정보 제외 후 공개할 경우 그 외의 정보들이 무의미하고, 현재에도 군 장교로서 활동하고 있는 군인들이 있으므로 비공개하여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인사명령》, 《군무원인사명령원본》 등 임명·임면 관련 기록은 인사발령 공문 등 성명, 소속, 직급, 직위 및 발령사항 정보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업무수행 과정상의 정보이고 개인의 비밀 및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공개하고, 징계로 인하여 인사발령을 받는 경우에는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징계관계철》, 《징계의결기록》은 직무 수행상 발생한 과실·위법사항에 관한 것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군번, 소속 정보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부분공개한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해당 기록물과 내용상 동일한 유형의 감사처분결과, 감사처분요구서 등을 홈페이지와 책자발간 등을 통해 사전공개하고 있는데, 감사대상자 이름과 소속 정보 등을 삭제하고 있다. 또한, 이들 기록물에 포함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등은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록으로 개인, 제3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소원·소송

- ▶ 기록물철 제목 : 소송관계철, 소원, 화해판결관계철(차량창B지역)
- ▶ 생산기관 : 국방부 군사시설국 관재보상과, 법무관리관
- ▶ 생산연도 : 1969~1979
- ▶ 수량 : 26권
- ▶ 공개재분류 : 부분공개 제6호
- ▶ 비공개대상정보
 - 소청인·소원인·이의신청자·이해관계자·피고·원고·대부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본적 및 주소의 읍·면·동 이하, 군번, 주민등록표, 납세필증, 각서
 - 소원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이름
-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12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5.22), 제8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6.26)
 - 제1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12.14),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12.18)

개요

국방부의 국유재산 및 토지수용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소원 관련 기록물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소송관계철》은 〈승소판결에 대한 집행의뢰〉,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 경정 결정 신청에 관한 회보〉, 〈소송 수행자 임명의뢰〉, 〈소송결과통보〉, 〈강제집행 및 소송 비용 회수〉, 〈망실회수재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처리 지시〉가 편철되어 있다. 〈승소판결에 대한 집행의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나라의 일부 승소 확정 부분에 대한 집행 의뢰 홍보하였으나 확정 여부에 대한 증명과 별지목록이 없어 조치할 수 없으니 확정증명을 송부하여 달라는 공문이다. 원고와 피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되었으므로 결과보고 한다는 것으로 재산의 소재지 평수가 기재되어 있다. 〈소송 수행자 임명의뢰〉는 군 공부에 의거 방과제토지매입으로 별지에 명시된 재산매도인은 권석판결의 사유이므로 별첨 임명자 명단과 같은 소송수행자를 임명의뢰하니 조속히 조치 바란다는 공문으로 임명의뢰자 명단과 재산의 소재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가 기재되어 있다. 임명의뢰자명단에는 소속, 계급, 군번,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임명자의 날인이 표시되어 있다. <소송결과통보>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국가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기에 그 사본을 송부한다는 공문으로 원고와 피고의 성명, 판결문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판결문에는 피고, 원고의 주소와 성명, 주문과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 <강제집행 및 소송 비용 회수>는 부정농지분배 사건에 관하여 국가가 승소함으로써 소유권 이전 및 소송 비용 회수에 대한 문제는 해당 군 법무감으로 하여금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여 조치하도록 하라는 공문으로 사건번호,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망실회수재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처리 지시>는 망실 국유재산 중 법정 화해 또는 국가승소로 인하여 회수 확정된 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 수속에 필요한 재반 구비서류를 업무의 신속, 편의를 위하여 현지 군에서 직접 당해 사건의 수송 수행자와 협의 취득하여 조속히 시행토록 지시하라는 공문이다.

《소원》은 일반법인 또는 개인과 국방부, 군기관 간 소원 신청 사건 기록으로, 부정당 업자제재, 소원에 대한 심의자료, 소원심의상신, 소원심의결과와견상신, 소원장전달, 소원장환부, 토지수용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및 대금수령통지, 토지수용대금수령통보, 소원취하통보 등이 편철되어 있다. 또한 부정당 업자 제재보고서, 소청심사청구서, 소원 심의 자료, 소원 재결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부정당 업자 제재보고서>에는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성명·생년월일, 해당조항, 해약연월일, 제재연월일, 제재내용 및 기간, 만료연월일,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보증금 처리결과, 기타 참고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소청심사청구서>에는 소청인의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주소, 소청의 취지, 소청의 이유 등이 기재되어 있다. <소원 심의 자료>에는 소원장(소원인의 주소·직업·생년월일·연령·성명, 피고인, 소원의 요지, 불복의 이유), 법인 등기부 등본, 계약서 사본, 수정계약서 사본, 계약해제통보 사본, 부정당 업자 제재 통지사본, 해약통보 철회 건의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소원 재결서>에는 사건번호, 소원인의 주소, 성명, 주문, 이유, 소원심의회 위원장 및 위원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소원심의회의록이 첨부되어 있다.

《화해판결 관계철(차량창 B지역)》은 <소원심의자료 송부의뢰>, <소원심의자료 송부>가 편철되어 있다. <소원심의자료 송부의뢰>는 제기된 소원에 대한 심의자료를 송부하여 달라는 공문으로 소원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소원장>이 첨부되어 있다. <환지설명서(중전의 토지, 환지 후 토지, 소유자의 성명)>, <환지에정지내 건축부지사용승인원>, <농지위원회 결정문(이의신청자, 이해관계자, 농지의 표시, 판정내용)>, <등기부 등본>, <소송위임장(소원인의 이름, 주소)>이 편철되어 있다. <소원심의자료 송

부)는 소원인의 소원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료를 송부한다는 회신이다. 소원내용(재산의 소재지, 소원인, 소원의 취지, 사유, 의견)이 기재되어 있고, <판결문(피고, 원고의 주소와 성명 기재)>, <국유재산매수요구서(수신자의 주소와 성명, 재산의 소재지, 지번, 재산종별, 대부수량, 평가액 기재)>, <국유재산 대부계약서(재산의 소재지, 평수, 대부자의 주소와 성명, 수대부자의 주소와 성명 기재)>가 첨부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이상은 국방부의 국유재산 및 토지수용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소원 관련 기록물이다.

이들 소송이나 소원 관련 기록물 가운데 비공개 대상정보를 살펴보면 소송·소원 신청자의 성명, 주소, 나이, 소속, 직위, 원고와 피고의 주소와 성명, 제3자의 성명, 소청·소원위원들의 소속과 성명 등과 같은 개인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기존에는 소송, 소원 관련 기록물철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의해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하였다.

그러나 위 기록물들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기록물은 국유재산, 군 인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 부당한 행정집행에 대한 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정·투명한 군행정 구현을 위해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개인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따라서 소송, 소원 관련 기록 일체를 공개로 재분류 하되, 소송관계철, 소원관계철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소, 본적 등을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기 타 (1)

- ▶ 기록물철 제목 : 1960~77년 역사일지, 국방본부 역사일지, 국방부소개, 국제결혼관계철, 주월군경리지원
- ▶ 생산기관 : 국방부 정책기획국, 인사복지국 인사관리과, 재정국 이재과, 기획관리실 총무과
- ▶ 생산연도 : 1946~1978
- ▶ 수량 : 7권
- ▶ 공개재분류
 - 공개(국방부역사일지, 국방부소개)
 - 부분공개 제6호(1965~75년 역사일지, 주월군경리지원)
 - 비공개 제6호(국제결혼관계철)
- ▶ 비공개대상정보 : 사건 관련 피의자의 이름, 소속, 직위, 군번
-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12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5.22), 제8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6.26)

개 요

국방부의 역사편찬을 위한 일지 작성 및 주월남파병 군인들의 월남인과의 결혼, 급여금 예치와 관련된 기록물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1960~75년 역사일지》는 〈연혁〉, 〈역대지휘관명단〉, 〈역대지휘관명단(역대부지휘관명단, 역대 수사부장 명단, 역대 행정과장 명단, 역대 계획과장 명단, 역대 지도과장 명단, 역대 수사과장명단, 역대 보좌관 명단, 역대 감찰과장 명단 등)〉, 〈역사일지〉, 〈중요취급사건〉 등이 편철되어 있다. 〈연혁〉에는 연월일, 건명, 내용, 정원, 근거가 기재되어 있다. 〈역대지휘관명단〉에는 순위, 계급, 성명, 재직기간이 기재되어 있다. 〈역사일지〉에는 대대장 별로 역사일지가 작성되었는데, 대대장의 사진, 성명, 일지에는 국방부장관 초도순시, 징계권승인, 서류이관, 군수품단속실무자회의, 이임, 표창(수여관의 계급,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고, 〈중요취급사건〉이 첨부되어 있기도 하다. 〈중요취급사건〉에는 사건 관련자들의 소속, 직위, 성명, 나이, 사건내용, 조치, 담당수사관의 계급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관급원피횡령, 징발토지 매수대금 사기사건, 해병사단 보일러 설치공사 부정, 유류부정발급사건 관련자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국방부역사일지》는 1946~66년까지 연도별 국방부 역사일지가 편철되어 있다. 역사일

지에는 연월일, 기사가 기재되어 있다. <역대장차관 임기-성명, 취임연월일, 사임연월일>, <국방부 기구표>는 국방부 기구가 변경된 시기별 기구표가 첨부되어 있다.

《국방부소개》는 1962년에 작성된 국방부 소개내용이다. 혁명공약, 공무원윤리강령, 행정부 기구표, 국방부 연혁, 중요인사(역대 국방부장관, 차관, 정무차관, 차관보, 기획조정관의 이름과 임기), 각군(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의 성명과 임기), 국방부 기구표, 국방부직제, 각군편제(육군, 해군, 공군), 최고회의 및 내각수반 훈령 중 주요사항 발췌, 기타 사무실 배치도 등이 기재되어 있다.

《국제결혼관계철》은 월남파견 군인들이 월남 현지에서 결혼한 것을 승인한 기록물철로서 <주월한국군 장병과 월남여자와의 국제결혼에 관한 질의에 대한 응답>, <국제결혼현황>, <국제결혼>, <국제결혼 승인>등이 편철되어 있다. 주로 국제결혼을 필요한 개인의 인적사항(성명, 나이, 출신학교, 군번, 계급), 호적등본, 부모동의서, 지휘관 의견서, 신원조사서, 사진, 월남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이 편철되어 있다. 또한 <배경조사서>에는 책임장교 계급·성명, 조사자 계급·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주월군경리지원》은 <주월한국군 재해급여금 잔액 인수>, <주월한국군 재해급여금 잔액 인수 예탁>, <주월한국군 재해급여금 잔액인수 통보>, <파월재해급여금 정산현황제출>, <주월한국군재해급여금 이자접수 예치>가 편철되어 있다. <주월한국군 재해급여금 잔액 인수>는 육군 중앙경리단에서 관리하여 오던 주월한국군 재해급여금 잔액을 인수하고자 하니 결재를 바란다는 공문으로 인수금액, 인수일자, 인수방법, 인수전·후의 명의자의 계급, 소속, 군번,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주월한국군 재해급여금 잔액 인수현황-예금종류, 계약금액, 계약기간, 이율, 예금은행명>, <주월 한국군 재해급여금 집행현황>, <은행이자비교표>가 편철되어 있다. <주월한국군재해급여금 잔액 인수 예탁>은 육군 중앙경리단에서 관여하여 오던 주월한국군 재해급여금 잔액을 인수, 예탁하였기에 보고한다는 공문으로 <주월한국군재해급여금잔액인수현황 및 인수후 예탁현황>, <금전신탁 신탁 이익계산서>, <인수증-인수자의 소속, 직위, 군번, 성명>이 첨부되어 있다. <주월한국군 재해급여금 잔액인수 통보>는 주월한국군 재해급여금 잔액을 인수하였기에 통보한다는 공문으로 <잔액인수현황>이 편철되어 있다. <파월재해급여금 정산현황제출>은 파월 재해급여금 수령 및 정산 현황과 파월 재해급여금 보관현황을 제출한다는 공문으로 <파월 재해급여금 수령 및 정산 현황>, <파월재해급여금 보관 현황>, <브라운각서>, <국방부 훈령 제120호-주월한국군 재해급여금 지급 규정을 개정>이 첨부되어 있다. <주월한국군 재해급여금 이자 접수 예치>는 주월한국군 재해급여금 발생이자를 원금예치은행에 재에

치하고자 결재를 바란다는 공문으로 이자발생내역, 은행예탁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자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위 기록물은 국방부의 정책기획실, 기획관리실에서 작성한 시기별 국방부 역사편찬의 참고자료 및 소개 기록물로,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하여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국방부 역사 관련 기록물철은 이미 생산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역사일지 등의 내용이 국가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판단되지 않고, 이미 대다수 내용들은 『국방부사』, 『국방사』, 『국방백서』 등 국방연구사에서 거의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대장, 장교, 기구표 등은 공개정보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1960~75년 역사일지》에는 각종 사건의 피의자 개인식별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개인식별 정보 및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또한, 월남파병과 관련하여 생산된 《국제결혼관계철》은 월남파병 군인들에 대하여 월남인과의 결혼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서 개인정보가 대부분이므로 비공개한다. 《주월군경리지원》은 주월군 재해급여금의 인수, 예치에 관한 사항으로 담당 군인들의 군번은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기 타 (2)

- ▶ 기록물철 제목 : 박대통령시해사건진상보고서, 전시국방계획지침, 국방기본시책
- ▶ 생산기관 : 국방부 기획관리실 기획조정관 기획총괄담당관, 정책기획국
- ▶ 생산연도 : 1979
- ▶ 수량 : 3권
- ▶ 공개재분류
 - 공개
 - 비공개 제2호(전시국방계획지침, 국방기본시책)
- ▶ 비공개대상정보
-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1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12.14),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12.18)

개 요

국방부의 사건진상보고서, 국방정책, 전시계획지침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박대통령시해사건진상보고서》에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여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사건 진상보고서가 편철되어 있다. 사건의 발생 순서를 시간의 흐름대로 정리하였으며, 특히, 김재규의 이동경로를 상세히 보고하였다. 본 사건진상보고서는 당시(1979년 11월 6일) 계엄사가 언론에 발표한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 수사내용 발표 전문'과 동일한 내용이다.

《전시국방계획지침》은 1976~1979년까지 전시국방계획지침이 편철되어 있다. 개요, 전시정부기본정책의 기본방향, 전시국방계획지침의 기본방향, 일반지침, 일반지침 및 세부지침, 세부지침 및 세세부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산 당시에는 군사2급 비밀 문서였으나 비밀이 해제되었다.

《국방기본시책》은 연도별 국방기본정책 문서가 편철되어 있다. 생산 당시에는 대외비(군사 2급비밀) 문서였으나 생산 1~2년 후 일반문서로 전환되었고, 국가목표, 국방목표, 국방기본정책 방향, 국방기본정책, 국방기본정책 및 기본방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목표, 국방목표, 국방기본정책방향, 기본정책, 기본정책 및 기본방침, 기본방침 및 일반

지침, 기획 및 계획지침(부대계획지침, 재정지침)이 수록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본 기록물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대통령시해사건진상보고서》는 당시 언론에 발표된 계엄사의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 수사내용 발표 전문'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전면 공개한다.

《전시국방계획지침》, 《국방기본시책》은 연도별 국방기본정책 문서로 국방목표, 국방기본정책, 기본방침 및 지침 등이 수록되어 있어, 국방·국가안보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한다.

4. 검찰청

● **대상기록물** : 판결문, 사건부, 명부 및 색인부 등 51,353권

● **생산연도** : 1944~1979

● **생산기관 연혁** :

1948.08.02. ~ 현재 대검찰청

● **개요**

대검찰청은 1948년 8월 2일 「검찰청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주요업무는 각종 사건의 수사, 전국의 검찰청 지휘·감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서울고등검찰청은 1908년 경성공소원 검사국으로 시작하여 1912년 경성복심법원 검사국을 거쳐 1945년 경성공소원 검사국으로 변경되었다. 경성공소원 검사국은 1947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948년 「검찰청법」에 의해 법원조직에서 분리·독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업무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 일대를 관할하며 산하 지방검찰청 및 지청을 지휘·감독하고 항소사건 소송 관리, 항고사건 처리, 행정소송 대행 및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항소심 소송 대행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산하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여주지청, 평택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원주지청, 속초지청, 영월지청)이 있다.

대전고등검찰청은 1992년 2월 15일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치되었다. 주요업무는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관장하며 소속 지방검찰청과 지청을 지휘·감독한다. 산하에는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 공주지청, 논산지청, 서산지청, 천안지청), 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 제천지청, 영동지청)이 있다.

대구고등검찰청은 1908년 8월 대구공소원 검사국으로 시작하여 1912년 대구복심법원 검사국을 거쳐 1945년 대구공소원 검사국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였다. 대구공소원 검사국은 1947년 1월 1일 대구고등검찰청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948년 「검찰청법」에 의해 법원에서 독립하였다. 주요업무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관할하며, 소속 지방검찰청과 지청을 지휘·감독한다. 산하에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 경주지청, 김천지청, 의성지청, 영덕지청, 포항지청, 상주지청, 서부지청)이 있다.

부산고등검찰청은 1987년 9월 1일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치되었다. 주요업무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관할하며 부산·울산·창원지방검찰청 및 산하 지청들을 지휘·감독한다. 산하에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통영지청, 밀양지청, 거창지청), 울산지방검찰청이 있다.

광주고등검찰청은 1952년 4월 1일 설치되었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지역의 지방검찰청 및 지청을 지휘·감독한다. 산하에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장흥지청, 순천지청, 해남지청),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정읍지청, 남원지청), 제주지방검찰청이 있다.

이번에 재분류된 대상 기록물은 판결문·약식명령 등 재판기록과 형사사건기록, 각종 사건부, 명부·색인부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검찰청 기록물은 공개원칙을 적용하여 판결문·약식명령 등 재판기록은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하였다. 다만, 가정보호사건·성범죄사건·소년보호사건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비공개하였다.

형사사건기록·공안사범기록은 주로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간첩관련 사건기록으로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하였지만 비공개하였다. 다만, 포고령 및 군정법령 위반 사건기록은 개인식별정보를 삭제 후 공개(부분공개)하였다.

각종 사건부, 명부, 색인부, 사건기록관리 기록물은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하되, 색인부와 같이 개인정보가 대부분인 기록물은 비공개하였다.

● 유형별 총괄표

유 형	생산연도	권 수	기록물철	공개구분
재판기록	1946~1979	19,288	판결문, 약식명령, 결정문	부분공개 /비공개
수 사	1967~1976	29	수사사건의견서철, 수사종결사건철 등	부분공개 /비공개
사형·사면· 감형·복권	1952~1979	160	사형집행관계철, 특별사면, 사면·감형·복 권에 관한 문서 등	부분공개
정보·보안	1975~1979	56	보안처분결정서, 보안처분청구서, 보안처분 사안부, 보안처분대상자동향조사서철 등	부분공개 /비공개
형사사건기록	1947~1979	11,839	형사사건기록, 공안사범기록 등	부분공개 /비공개
사건부	1944~1979	7,146	형사사건부, 민사사건부, 항고사건부, 공소 사건부, 검사사건부, 수사사건부 등	부분공개
명부·색인부	1946~1979	5,649	수형인명부, 구속자명부, 형사피의자(피고 인)색인부, 수형인색인부 등	부분공개 /비공개
사건기록관리	1946~1979	5,582	형사사건기록보존부, 집행원부, 기록 및 증 거물송부부, 공판사건기록관리부, 사건기록 대출부 등	공개 /부분공개
법령·예규	1958~1979	158	인사예규, 예규철, 검찰예규집, 송무예규철, 보안예규 등	공개 /부분공개
통 계	1945~1979	924	통계연표, 각종범죄통계표철, 집행통계표철, 사회안전법관계통계표철 등	공개 /부분공개
회 의	1966~1979	25	전국검사장회의관계철	공개 /부분공개
기 타	1948~1979	163	배상금지급신청접수대장, 국유재산대장, 공 증증서철, 사건수리통지서철, 월례보고서철 등	공개 /부분공개
인사·징계	1958~1979	325	인사기록카드, 인사발령원본, 인사발령대장, 임용관계철, 연금, 기여금, 변호사징계관계 철 등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소 송	1976	9	중요사건보고서철(손해배상)	부분공개
합 계	1944~1979	51,353		

재판기록(판결문, 약식명령, 결정문)

- ▶ **기록물칠 제목** : 판결문, 형사판결원본, 재판서원본, 형사판결원부, 민사판결문, 행정소송판결문, 약식명령, 약식명령원본, 형사재판서원본(약식명령), 결정서, 결정문, 불기소처분항고결정문, 사건송치결정서철, 소년부송치결정서, 재항고결정서, 재정신청결정문, 항고결정서, 항고결정문, 행협결정서, 배상결정서

▶ 생산기관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집행과
-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소송사무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 동부지청 · 북부지청 · 성동지청 · 의정부지청 · 인천지청 · 여주지청 · 강릉지청 · 속초지청 · 원주지청 사무국 집행과 · 사건과
-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 공주지청 · 서산지청 · 천안지청 · 홍성지청 사무과, 청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집행과, 영동지청 · 제천지청 · 충주지청 사무과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 김천지청 · 상주지청 · 안동지청 · 영덕지청 · 의성지청 사무과
- 부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거창지청 · 밀양지청 · 진주지청 · 통영지청, 마산지방검찰청, 마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
-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목포지청 · 순천지청 · 장흥지청 사무과, 전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집행과, 군산지청 · 남원지청 사무과, 제주지방검찰청 사무국

▶ 생산연도 : 1946~1979

▶ 수량 : 19,288권

▶ 공개재분류

- 부분공개 제6호
- 비공개 제3호 · 제6호(가정보호사건 · 성범죄사건 · 소년보호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 비공개대상정보 : 사건번호, 피고인 및 사건 관련인의 개인정보

(이름, 직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적의 읍 · 면 · 동 이하, 이력, 경력 등)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8.9.10), 제5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8.10.2)
- 제9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8.12.3), 제6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8.12.14)
- 제1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12.14),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12.18)

개요

검찰의 중요업무인 재판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판결문, 약식명령, 결정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기록물 상세내용

《판결문》, 《형사판결원본》, 《판결원본》, 《재판서원본》, 《형사판결원부》 등에는 사건번호, 피의자의 본적·주거·직업·이름·나이, 주문, 이유, 판결연월일, 판결기관, 판사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 '이유'에는 피고인의 이력, 경력 및 사건경위가 기술되어 있으며,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과 사건 상황이 육하원칙에 의해 기술되어 있다.

《민사판결문》은 대한민국을 원고 또는 피고로 하는 사건에 대한 판결문으로 일정한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사건번호·사건명, 원고(피고)의 성명·주소·법률상 대표자·소송수행자, 변론종결일, 주문, 청구취지, 이유, 판결일, 판사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유'에는 사건경위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나라가 원고 또는 피고인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속,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대부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건물철거, 손해배상 등의 판결문이다.

《약식명령》, 《약식명령원본》, 《형사재판서원본(약식명령)》은 사건번호, 해당인의 본적·주거·직업·이름·나이, 죄명, 범죄사실, 판결내용, 적용법조문, 판결일, 담당법원, 재판관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약력, 경력이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결정문'은 사건이송 결정, 정식재판기각 결정, 공소기각 결정, 항소기각 결정, 상소기각 결정, 재심신청에 대한 결정,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형의 소멸에 관한 결정, 항고·재항고 또는 준항고·재준항고에 대한 재판 확정기록이다.

《결정서철》, 《결정문》, 《결정문원본》, 《형사결정원본철》에는 결정문이 편철되어 있다. <결정문>에는 사건번호, 죄명, 피고인의 인적사항(성명, 직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거, 본적), 검사, 변호인, 수감장소, 주문, 이유, 적용법조, 일자, 판사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결정문》, 《재항고결정서철》에는 결정서가 편철되어 있다. <결정서>에는 사건번호, 항고인·재항고인(고소인)의 주소 및 성명, 피항고인·피재항고인(피고소인)의 주소 및 성명, 원결정청, 원결정일, 주문, 이유, 검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대검에 의한 재항고기각 결정서철》에는 결정서가 편철되어 있다. <결정서>에는 사건번호, 재항고인(고소인)의 주소 및 성명, 피재항고인(피고소인)의 주소 및 성명, 원결정청, 원결정일, 주문, 이유, 검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송치결정서》, 《사건송치결정서 및 수리통지서철》, 《사건송치결정서철》은 다른 검찰청으로 송치하기 위한 기록으로, <송치결정서>, <사건수리통지>문건이 있다. <송치결정서>

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령, 죄명, 결정일, 송치할 청, 송치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고, <사건수리통지>는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령, 죄명, 송치년월일, 수리연월일, 기록번호, 기록권수,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신청사건 결정문》은 관할법원, 사건번호,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피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주문, 이유, 적용법령, 연월일, 판사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공소제기 재기수사 결정(항고)》은 재기수사를 명령하는 결정서로 형제번호, 항고인의 주소 및 성명, 피항고인의 주소 및 성명, 주문, 이유, 연월일, 검사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유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재기수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

《행협결정서철》은 지방검찰청 내의 지구배상심의회에서 심의내용을 법무부에 보내고 법무부가 다시 그 보고에 대해 배상결정되었음을 지구배상심의회에 통지하는 내용의 문건으로, 법무부에서 결정한 <배상결정서>가 첨부되어 있다. <배상결정서>는 신청사건번호, 신청인(주소, 성명, 직업), 주문, 결정이유에서 사고상황(피해자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사고발생일시·장소 가해자 성명 및 소속, 사고상황), 배상책임유무에서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책임 여부, 신청금액에 관련되어 받은 금액, 사전지급 금액, 배상액인용내역, 상속비지급액, 비고로 구분하여 작성되어 있으며,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이상은 검찰청 주요 업무인 재판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판결문, 약식명령, 결정문, 결정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결문, 약식명령 등 재판기록은 고유한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피의자의 본적·주거·직업·이름·나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유' 부분에는 해당인의 이력과 경력 및 사건경위가 육하원칙에 의해 기술되어 있다. 또한 판결일, 담당법원, 재판관명이 기재되어 있다. 결정문 및 결정서 기록도 재판기록의 일종으로 판결문과 유사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판기록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청구), 제22조(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 제한) 규정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포함 기록으로 보아 비공개해 왔다.

그러나, 해당 기록물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대법원도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여 비실명화를 전제로 판결문은 국민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중요 판례는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인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한없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59조 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규정에서도 재판확정기록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판결문 및 약식명령, 결정문, 결정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즉, 이름·주소·본적·나이·직업 전체를 삭제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현저히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은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다만, 가정보호사건·성범죄사건·소년보호사건의 판결문 및 약식명령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비공개한다.

수 사

- ▶ **기록물철 제목** : 수사사건의견서철, 내사사건의견서철, 수사종결사건철, 외국인범죄에 관한 철
- ▶ **생산기관**
 - 부산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사무국 사건과, 광주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청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수사과
- ▶ **생산연도** : 1967~1976
- ▶ **수량** : 29권
- ▶ **공개재분류**
 - 부분공개 제6호
 - 비공개 제3호·제6호(가정보호사건·성범죄사건·소년보호사건 관련 수사기록)
- ▶ **비공개대상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본적의 읍·면·동 이하 등 개인식별정보
-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9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8.12.3), 제6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8.12.14)

개 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를 검찰에 보고한 기록으로 사건발생 신고 및 접수, 조사, 종결, 송치 과정이 담겨 있다.

기록물 상세내용

《수사사건의견서철》은 <사건송치서> 양식에 <의견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사건송치서>는 피의자명, 구속여부, 죄명, 발각원인, 접수일, 구속일, 의견, 증거품, 비고로 구성되어 있고, 비고에는 수사지휘 검사명이 나오기도 한다. 여기에 <압수물건총목록>, <사건기록목록>,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다. <의견서>에는 피의자의 본적, 주거, 직업, 성명, 나이, 생년월일, 범죄사실, 의견, 담당검찰청 수사담당 및 검사장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내사사건의견서철》에는 <내사보고>와 함께 <압수물건총목록>, <사건기록목록> 등이 첨부되어 있다.

《외국인범죄에 관한 철》은 경찰청에서 외국인 범죄에 대해 검찰청에 보고한 것이다. <외국인범죄 발생보고>는 해당 사건의 발생일시 및 장소, 피해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인적사항(주거, 자동차 번호, 이름, 생년월일, 직업, 군번 등), 발생개

요, 경찰조치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다. 검사지휘사항과 검사명, 담당 경찰관 직급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공무집행 증명서>, <구급 인도 요청서> 및 <인수증> 등이 증빙자료로 첨부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검찰청의 업무 중 수사와 관련한 기록물로 사건의 발생 및 처리 유형에 따라 편철하였다. 수사기록은 사건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건 발생, 결과 보고 등의 문건과 <진술조서> 등 수사과정의 문건, 수사를 종결하고 해당 검찰에 송치한 <사건송치서>로 구성되어 있다.

수사 과정에서 생산된 것으로 피의자, 진정(탄원)인, 관련인 등의 성명, 주소, 본적, 직업, 나이, 이력 및 경력 등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사건발생에서부터 수사 진행 및 종결시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수사담당 경찰관의 성명과 직위가 나타나 있다. 검찰로 송치 또는 이송된 이후에는 검사 성명도 기재되어 있다.

위 기록물은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전 비공개사유 중 하나였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수사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는 생산 후 30년 경과로 인해 이미 사안이 종료된 사건으로 비공개 보호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개인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로 유효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실명화하여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수사 관련 기록물은 성명, 주소, 본적, 나이, 직업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은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다만, 가정보호사건·성범죄사건·소년보호사건 등은 보도금지 규정 외에 판례나 학설상 인정되는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성명권의 개념을 포괄하는 인격권’ 보호를 위해 비공개한다.

사형·사면·감형·복권관계철

▶ **기록물철 제목** : 사형집행관계철, 사형확정수에 관한 기록, 사형집행에 관한 문서, 형미집행에 관한 기록, 특별사면, 특별감형자 사실통보, 특별사면 등 관계철,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문서, 특사에 관한 철, 특별사면 및 감형자 명단, 좌익수 석방 통보

▶ **생산기관**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집행과
-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공판부 공판사무과, 의정부지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사무과
-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사무국 집행과, 홍성지청 사무과
-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사무국 사건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진주지청 사무과
- 광주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청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수사과

▶ **생산연도** : 1952~1979

▶ **수량** : 160권

▶ **공개재분류** : 부분공개 제6호

▶ **비공개대상정보**

- 이름, 사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본적 및 주소의 읍·면·동 이하 등 개인식별정보
- 호적등본, 건강진단서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9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8.12.3), 제6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8.12.14)
- 제1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12.14),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12.18)

개요

검찰의 판결 이후 교도소의 수감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업무로 사형판결 확정 통보와 특별사면·감형 결정 기록물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사형집행관계철》은 법무부에서 검찰에 보낸 사형집행명령으로 대상자의 <사형집행에 관한 기록>이 있다. 여기에는 기록번호, 형명, 판결확정, 선고법원, 주임검사, 재감교도소, 사형확정카드번호, 피고인 본적·주거·성명·성별·생년월일, 죄명이 기재되어 있다. 검찰이 작성한 <사형판결확정보고>를 법무부, 교도소 등에 통지하였다. <판결문>, 호적등본, <사형확정수에 대한 재심상황 등 보고>, <재심상황표>, <사형집행촉탁>, <사형집

행명령서》 등 사형에 이르기까지의 관련 기록이 편철되어 있다.

《사형확정수관계서철》, 《사형집행에 관한 문서》에는 사형집행에 관한 기록, 사형판결확정 보고, 사형확정수에 대한 재심상황 보고, 사형집행종료보고 등이 편철되어 있다. 사형확정수의 사건번호, 인적사항(본적, 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령), 죄명, 재판내역, 재감교도소, 재심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외에도 판결문, 호적등본, 건강진단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형미집행에 관한 기록》은 〈형미집행에 관한 기록〉 양식에 따라 피고인의 인적사항, 죄명, 선고연월일, 확정연월일, 법원명, 형명·형기, 시효, 종결사유, 비고로 작성되어 있고, 〈재판집행촉탁〉, 〈형집행장〉이 첨부되어 있다.

《특별사면, 특별감형자 사실통보》는 지청에서 대검에 〈특별사면장 및 특별 감형자 부여 결과 보고〉를 하고 해당 경찰서와 행정기관에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특별사면 및 특별 감형자 사실통보〉, 〈사면장 수령증〉, 〈특별사면·감형자 조서〉 및 사면대상자의 개인식별정보(성명, 본적, 주거,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연령 등), 형집행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특별사면 등 관계철(감형, 복권)》은 검찰총장과 지청장 사이에 주고 받은 문서로 3급 비밀이었다가 일반문서로 재분류되었다. 〈특별사면 등 자료제출(추가)〉, 〈특별사면 및 감형자료 제출 지시〉, 〈사면작업처리지침〉, 〈특별사면장 및 특별감형장 부여 결과 보고〉 등의 문건이 있다. 특별사면자, 감형자, 복권자 등 대상자의 성명, 성별, 죄명, 형명·형기, 본적, 주소,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특사에 관한 철》은 법무부의 〈특별사면 및 특별감형에 관한 내시〉에 따라 지청에서 지검에 특별사면 및 감형자에 대해 〈특별사면자조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것이다. 이 조서는 인적사항, 죄 및 형, 심사사항, 범죄개요,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사면 및 감형자 명단》은 특별사면자 대상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집행제번호, 성명, 성별, 죄명, 형명·형기, 확정연월일, 형집행기간, 잔형기간, 사면구분, 사면·감형된 형기, 비고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문서》에는 특별사면 요강 및 업무처리지침, 형집행 정지자 처리사항 등이 편철되어 있다. 〈형집행 정지자 처리사항〉에는 수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죄명, 선고일 및 형기, 확정일, 잔형 형기, 정지일 및 사유, 형집행장 발부일,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일, 비고, 특별사면 해당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좌익수 석방통보》는 해당인의 본적, 주소,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명·형기(통산), 형기기산일, 형기종료일, 석방종류, 출소연월일, 전향여부, 보호자의 주소, 성명, 가족명, 범죄개요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사진이 첨부되어 있기도 하다.

❁ 공개재분류 결과

검찰의 판결 이후 교도소의 수감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업무로 사형판결 확정 통보와 특별사면·감형 결정 기록에는 수형자의 최초 판결문부터 수형생활 중의 재심기록, 결정문 등 관련 재판기록과 형집행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져 있다.

해당 기록물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형관련 기록'은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형의 집행'이라는 점에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나, 비실명화하는 것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공개함으로써 제도 연구나 사회사 연구 등 학술자료로서 활용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사면 기록'은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당사자들의 사생활 비밀 등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면 실시 당시 법무부가 발표한 사면발표문 및 보도자료에 이미 명단이 발표되었고, 사면권의 남용을 견제할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등이 형성되도록 정보 접근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공개로 얻는 이익이 당사자들의 사생활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감형의 경우에도 '잔형의 집행이나 교정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예상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두24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11.26 선고 2003누23143 판결). 그러나, 모든 대상자를 실명으로 공개할 경우 사면·감형의 수형 사실이 함께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 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사면·감형에 관한 기록물은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본적·주소 등의 개인식별정보와 호적등본, 건강진단서 등을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좌익수 석방통보》는 좌익수 석방 사실을 관련 정보기관에 송부한 것으로 해당자의 수형기록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전향사실 및 사진까지 편철되어 있어 개인정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에 개인식별정보 및 가족관계, 사진 등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 **기록물철 제목** : 보안처분결정서, 보안처분 등 결정문, 보안감호처분 결정서 등본철, 보안처분대상자신고서철, 청구서부본철, 보안처분청구서, 보안처분청구(신청)자 관리대장, 보안처분사안부, 보안처분면제결정 신청사안부, 보안처분지휘서송부부, 보안처분대상자동향조사서철, 보안처분대상자신고접수대장, 보안처분대상신고자색인부, 보안처분대상자선별순위명부, 출국금지요청서

▶ **생산기관**

- 대검찰청 공안부 공안제1과
-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공안제1과, 동부지청 수사과, 수원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 공안과
-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사무국 집행과, 청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집행과, 충주지청 사무과, 천안지청 사무과
-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 공안과, 창원지방검찰청 사무국 서무과, 진주지청 사무과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 의성지청 · 상주지청 사무과
-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사무국 공안과, 남원지청 사무과

▶ **생산연도** : 1975~1979

▶ **수량** : 56권

▶ **공개재분류**

- 부분공개 제6호
- 비공개 제6호(보안처분청구서, 보안처분청구자 관리대장, 보안처분대상자신고서철, 보안처분대상자 동향조사서철, 보안처분대상자 신고접수대장, 보안처분자 색인부 등)

▶ **비공개대상정보** : 이름, 본적 및 주거의 읍·면·동 이하, 직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령, 여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9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8.12.3), 제6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8.12.14)
- 제1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12.14),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12.18)

●● **개 요**

검찰청의 보안처분 신청 및 결정, 보안처분 면제결정, 기간갱신 등의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과 출국금지 관련 기록물이다.

●● **기록물 상세내용**

《보안처분 등 결정문》, 《보안처분 결정서철》, 《보안감호처분 결정서 및 의결서 등본철》

에는 <의결>과 <결정>이 편철되어 있다. <의결>에는 청구검사, 신청인·피청구자(본적, 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령), 주문, 이유, 적용 법조, 연월일, 보안처분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유가 첨부되어 있다. 이유에는 원인사실과 소명자료, 결정이유가 기재되어 있다. 원인사실에는 신청인의 이력 및 경력, 좌익관련 활동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인 정보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결정>에는 청구검사, 신청인·피청구자(본적, 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령), 주문, 이유, 적용 법조, 연월일, 법무부장관명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서부분철》, 《보안청구부분철》, 《보안처분 기간갱신 청구불청구》는 지청에서 법무부에 보낸 보안처분 신청서, 보안처분 면제결정신청서, 기간갱신 불청구조치 승인품신 등이 편철되어 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본적, 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다. 의견을 첨부하였는데 여기에는 소명자료 및 조사사항으로 보안처분 대상자 여부, 신원사항(학력, 경력, 종교, 가입단체, 병역관계, 해외여행, 가족 및 연고자, 재산, 주거 이동상황, 기타 전과, 건강상태), 보안처분 해당 범죄, 행형 사항, 전향여부, 출소 후 동향, 신원보증인 관계가 있으며 조사결과 의견이 작성되어 있다. <기간갱신 불청구조치 승인품신>에는 피보안처분자의 인적사항과 기간갱신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대한 의견이 작성되어 있다.

《보안처분청구서》, 《보안처분청구서(면제기간 갱신)》는 지청에서 법무부에 보안처분을 청구하기 위해 보낸 문서로, 피청구자의 인적사항(본적, 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과 동행보고일시, 장소 및 비고로 구분하여 작성되었고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다. <의견서>에는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호관찰처분으로 피청구자의 신원사항(교육, 경력, 종교, 가입단체, 병역관계, 해외여행, 연고자, 재산정도, 가족관계, 주거이동상황), 보안처분 해당범죄, 행형사항, 전향 여부, 출소 후의 동향, 보안처분으로 인한 영향, 종합의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어 있다.

《사안인지승인품신서철》은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보낸 피보안처분자 기간갱신 사안인지 승인 품신이 편철되어 있다. 피보호처분자의 인적사항(주거,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민등록번호), 전향 여부, 인지 경위,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유에는 보안처분 기간 중 동태(생활상태, 가족관계, 재산관계, 일반 범죄입건 수형관계, 국가시책에 대한 호응도, 기타 참고사항), 기간갱신 필요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보안처분청구(신청)자 관리대장》은 관리번호, 접수일자, 관할청, 성명, 생년월일, 처분일자 및 종류,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보안처분대상자신고서철》은 보안처분대상자 신고서, 좌익수형자 및 요시찰인 석방통

보 등이 편철되어 있다. <보안처분대상자 신고서>에는 대상자의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원적, 본적,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 출소예정일시, 거주예정지 도착예정일시, 출소 후의 생활계획, 출소 후의 동거가족(관계, 성명, 연령, 학력, 직업 등), 보안처분 해당 범죄(범죄사실요지, 판결 내용, 전향관계), 신고일자 및 신고인 등이 기재되어 있다. <좌익수형자 및 요시찰인 석방통보>에는 본적, 주소, 귀주지,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죄명, 형명·형기(통산), 형기기산일, 형기종료일, 석방종류, 출소연월일, 전향 여부, 보호자의 주소, 보호자 성명 및 연령, 가족명, 범죄개요 등이 기재되어 있다.

《보안처분사안부》, 《보안처분 면제결정 신청사안부》에는 사안번호, 수리일자, 구분, 주임검사, 신청인 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별, 성명, 연령, 생년월일), 동행보호 경찰·검찰, 해제연월일 및 사유, 검사처분(보안처분청구, 불청구 조치), 결정 연월일·요지, 보관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보안처분지휘서송부부》는 송부월일, 수신처, 집행원부번호, 지휘서 구분, 수령인, 판결등본 송부월일 및 수령인, 피청구인(피보안처분자), 비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안처분대상자동향조사서철》에는 <보안처분대상자 동향조사서>가 편철되어 있다. <보안처분대상자 동향조사서>에는 경찰서 고유번호, 성명(가명), 생년월일, 본적, 출생지, 주소, 학력, 성별, 주민등록번호, 직업, 재산, 월수입, 주택, 경력, 가족관계(관계, 성명, 연령, 학력, 직업), 신원보증인 및 관계(관계, 성명, 연령, 직업, 주소), 처분과 관련된 범죄사실, 출소 후 동향, 특기사항, 전과 관계, 처분의견 및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다.

《보안처분대상자 신고접수대장》, 《접수부》, 《선별순위명부》에는 접수번호, 일시 및 장소, 신고자 주소 및 성명, 연령, 직업, 접수 취급자가 기재되어 있다.

《보안처분자 등 색인부》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주임검사 성명, 형사사건 번호,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보안처분대상신고자 색인부》는 주임검사, 신고일련번호,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출국금지요청서》, 《출국금지·해제통보》는 검찰청에서 법무부로 출금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한 기록으로, 진행번호, 대상자의 인적사항(본적, 주거, 성명, 성별, 직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출국금지 사유 및 해제 사유, 출국금지 기간, 결정일자, 결정법원, 죄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이상은 검찰청의 보안처분 신청 및 결정, 보안처분 면제결정, 기간갱신 등의 과정에서 생산된 것과 출국금지 관련 기록물이다.

위 보안처분 및 출국금지 관련 기록물들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청구서부분철》, 《보안청구부분철》, 《보안처분 기간갱신 청구 불청구》, 《보안처분청구서》, 《보안처분청구서(면제기간갱신)》, 《사안인지승인품신서철》, 《보안처분청구(신청)자 관리대장》, 《보안처분대상자 신고서철》, 《보안처분대상자 동향조사서철》, 《보안처분대상자 신고접수대장》, 《접수부》, 《선별순위명부》, 《보안처분자 색인부》 등은 개인정보가 대부분이므로 비공개한다.

《보안처분 등 결정문》, 《보안처분 결정서철》, 《보안처분의결결정등본》, 《보안처분사안부》, 《보안처분면제결정신청사안부》, 《보안처분지휘서송부부》, 《출국금지》 등의 기록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은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형사사건기록

▶ **기록물철 제목** : 형사사건기록, 내란(불기소사건기록), 공안사범기록, 공안사범기소유예자공소보류자동태보고서철, 공소보류승인관계철

▶ **생산기관**

-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사무국 집행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속초지청·원주지청 사무과
-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 사무과·사무국 집행과, 천안지청·홍성지청·논산지청 사무과, 청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집행과, 영동지청·제천지청·충주지청 사무과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의성지청 사무과
-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사무국 집행과
-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집행과, 목포지청·장흥지청 사무과, 전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집행과, 군산지청 사무과

▶ **생산연도** : 1947~1979

▶ **수량** : 11,839권

▶ **공개재분류**

- 부분공개 제6호 (포고령 및 군정법령 위반 사건기록)
- 비공개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 **비공개대상정보** : 피의자 및 증인·피해자·사건 관련인의 이름, 본적 및 주소의 읍·면·동 이하, 보증서, 지문대조방조회, 전향서, 사망진단서, 각서, 본적조회서, 진단서, 신분조회, 반성문 등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13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6.18) / 제8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6.26)
- 제1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12.14) /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12.18)

개 요

각 지방검찰청에서 형사사건의 조사 및 사건 송치 등 수사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형사사건기록》은 저마다 특유의 목적과 성질을 지니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수사의 경과 및 결과를 보여주는 수사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수사사건기록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크게 진술서류, 보고서류, 기타서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진술서류에는 〈피의자신문조서〉, 〈증인진술조서〉, 〈진술서〉가 해당된다. 대체로

〈진술서〉의 경우 진술거부권 고지를 하고, 증인격인 참고인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그 사건과의 이해관계를 명백히 한 후 진술하는 형식이다.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내용이라면 진술을 반복할 경우에 대비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증인 인적사항(주거, 직업, 성명, 연령), 증인의 사상이나 관념, 사건과 관련된 문답(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성명이 기재되기도 함), 진술일자, 수사기관의 담당자 계급 및 성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를 특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다음 피의자에게 사건의 요지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진술하도록 하는 형식이다. 구성은 피의자 성명, 연령, 직업, 주거주소, 본적, 피의자의 범죄사실 여부와 종류, 개인의 재산 및 생활정도, 가족의 성명, 가족의 연령, 정당사회단체 가입여부, 사상적 성향, 존경하는 인물, 취미, 성격, 교우관계, 피의사건 종류, 범죄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문답, 신문일시, 입회관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보고서류의 경우는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상황을 상사에게 보고하는 서면들이다. 이들 기록들은 수사서류 간 연결이 명확하여 당시 수사과정을 잘 볼 수 있다. 〈수사보고서〉는 대체로 상단중앙에는 작성자의 소속기관명, 우측상단에 작성 연월일을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에는 수신, 제목, 전문, 본문, 작성자의 소속·계급·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심지보고〉는 생산기관명, 수신자, 제목, 용의자의 인적사항(본적, 주소, 직업, 성명, 연령), 용의사실, 참고사항, 수사담당자 계급 및 성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행보고〉는 생산기관명, 수신자, 제목, 보고일자, 용의자 성명, 인적사항(본적, 직업, 주소), 범죄개요, 소견, 보고자의 계급과 성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인지보고〉의 경우에는 생산기관명, 수신자, 제목, 공범자가 새롭게 인지되었다는 보고내용, 보고일자, 수신자, 제목, 공범자의 인적사항(본적, 주소, 연령), 범죄사실, 소견, 보고자 계급 및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수사과정에서 보고서, 진술서와는 특성이 다른 각종 영장신청, 구속통지서 발송, 구속기간 연장신청, 사실조회 등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영장신청서〉, 〈구속통지서〉, 〈구속기간연장신청서〉, 〈불기소장〉, 〈증거자료〉, 〈사실조회〉, 〈감정서〉, 〈탄원서〉, 〈공소장〉, 〈상고·항고 이유서〉 등이 있다. 〈의견서〉는 일반적으로 사건을 이첩, 송치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기록으로 피의자, 공범별, 죄명별, 범행일시 순으로 나누어 알아보기 편하도록 기재하였는데 〈의견서〉의 구성은 피의자의 본적·주소·성명·연령·직업 등의 개인정보, 범죄사실에 대한 개요(관련 주변인물의 성명기재), 작성연도, 수사기관의 담당자 직위 및 성명 등이다. 구속영장은 구속영장 번호, 구속자의 주소, 직

업, 성명, 성별, 구속이유, 구속영장 발부 일자, 발부기관(법원), 판사 성명, 구속한 일시, 구속한 장소, 인치한 일시, 인치한 장소, 피의사실, 구속영장을 처리한 일자, 영장처리기관명, 영장처리담당자 계급 및 성명, 뒷면에 범죄사실과 구속사유를 기재하고 있다.

《공안사범기록》은 형사사건기록과 같이 <사건송치서>, <압수금품총목록>, <서류표목>, <의견서>, <피의자의 동행보고>,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이 편철되어 있다.

《공안사범기소유예자 공소보류자 동태보고서철》은 <공안사범 기소유예자 동태파악 결과보고>가 편철되어 있다. <공안사범 기소유예자 동태파악 결과보고>는 해당 지검의 공안사범 기소유예자의 동태를 파악해 결과보고한 공문으로 <공안사범 기소유예자 동태보고>, <공안사범 기소유예자 명부>가 첨부되어 있다. <공안사범 기소유예자 동태보고>에는 진행번호, 사건번호, 성명, 동태(특이사항이 기재됨), 비교에는 공안사범의 종류가 기재되어 있다. <공안사범기소유예자명부>는 진행번호, 사건수리일자, 주임검사, 사건번호, 사건수리청, 피의자의 인적사항(본적, 주거지, 직업, 성명, 가명, 연령,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죄명(처분), 범죄개요, 송치일자, 송치관서, 구속일자, 경찰총장 승인일자, 승인이유, 석방일자, 검찰처분일자, 처분청명 처분검사, 공소시효 완성일자, 재기수사일자, 재기수사결과, 시찰관서 통보, 중앙정보부 통보일, 시찰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공소보류승인관계철》에는 <공안사범 불기소처분에 대한 품신>, <공안사범 불기소 처분에 대한 품신>, <공안사범 처리 승인> 등이 편철되어 있다. <공안사범 불기소처분에 대한 품신>은 해당 검찰청에서 검찰총장에게 공안사범 처리에 대한 의견을 품신한 것으로 피의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다. <의견서>에는 피의자의 본적, 주거지, 처분, 직업, 성명, 출생연월일, 나이,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범죄사실에는 가족의 성명·나이, 사건 관련인의 성명, 제3자의 성명·주소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공안사범 불기소 처분에 대한 품신>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공소보류 처분코저 품신하니 승인하여 달라는 공문으로 송치관서 및 송치의견, 피의자의 본적, 주거지, 직업, 나이, 성명, 처분이 기재되어 있고, <피의사실 및 불기소 이유>가 첨부되어 있다. <피의사실 및 불기소 이유>에는 범죄사실 요지, 피의자의 성명, 불기소 이유 등이 기재되어 있다. <공안사범 처리 승인>에는 공안사범에 대한 의견을 품신한 사실에 대하여 의견대로 처리 승인한 공문으로 피의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이상은 지방검찰청에서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과 공안사범관련 기록물이다. 이들 기록물은 해방 이후부터 1979년까지 주로 미군정 포고령 위반, 미군정법령 제19호 위반, 사문서 위조, 국가보안법위반,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 간첩·간첩방조, 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 직권남용, 반공법위반, 내란의 죄(내란, 소요, 집시법위반) 등 주로 공안사범에 대하여 수사한 기록물 철이다.

《형사사건기록》, 《불기소사건기록》, 《공안사범기록》, 《공안사범기소유예자공소보류자 동태보고서철》, 《공소보류승인관계철》 등에 포함된 비공개 대상정보는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피해자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수사관, 증인이나 참고인과 같은 제3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주소·나이·직업·이력·경력 등 사생활에 관한 정보들이 기본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증인진술조서〉 중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증인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정보들이 문답을 통해 기재되어 있고, 〈피의자 신문조〉서나 〈증인진술서〉에는 배후인물들에 대한 성명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사건기록물을 생산한 수사관, 조사관, 보고자들의 소속·계급·성명이 각 건마다 기재되어 있다. 기존에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 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 사건 관계인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및 「형사소송법」,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하여 비공개하였다.

이들 기록물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사건기록》 중 포고령 및 군정법령 위반 사건기록은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좌익사건실록』에 이미 상당수 공개되어 있다. 또한 생산된 지 60년이 경과하여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정보원·정보수집기법 등 정보수집경로와 방법이 노출되어 장차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해지거나 향후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여 진다. 다만, 피의자, 증인, 참고인 등 사건관련자들의 개인식별정보와 개인신상정보 등은 여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사건 관련자들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식별정보를 삭제 후 공개(부분공개)한다.

나머지 《형사사건기록》 및 《공안사범기록》은 주로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간첩 관련 사건기록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에 의거 비공개한다.

각종 사건부

- ▶ **기록물철 제목** : 형사사건부, 형사신청사건부, 민사사건부, 행정소송사건부, 한미협회사건부, 항소·상소·상고사건부, 항고사건부, 상소결과부, 공소사건부, 재심사건부, 재정신청사건부, 검사인지사건부, 공조사건부, 내사 및 진정사건부, 검시사건부, 검사사건부, 공판장기미제사건부, 수사사건부, 소재수사지휘부, 범죄사건부, 항소상고결과부, 고소고발사건부, 무죄사건부, 기타 사건부

▶ 생산기관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집행과
-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서울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서울지방검찰청 수원지청·여주지청·의정부지청 사건과, 수원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춘천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속초지청·원주지청 사무과
-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사무국 집행과,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공주지청·서산지청·천안지청·홍성지청 사무과, 청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집행과,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제천지청·충주지청 사무과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김천지청·상주지청·안동지청·영덕지청·의성지청 사무과
-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사무국 서무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밀양지청·진주지청·통영지청 사무과, 마산지방검찰청 사무국 서무과, 마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사무과
-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서무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순천지청·장흥지청 사무과, 전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서무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남원지청 사무과, 제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서무과

- ▶ **생산연도** : 1944~1979

- ▶ **수량** : 7,146권

- ▶ **공개재분류** : 부분공개 제6호

- ▶ **비공개대상정보** : 피의자 또는 피고인, 항고인 등의 이름·주민등록번호·연령·주거·직업 등 개인식별정보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9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8.12.3), 제6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8.12.14)
- 제1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12.14),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12.18)

개요

검찰청의 수사, 재판, 집행 등의 업무과정에서 생산된 대장류 형식의 사건부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형사사건부》는 피의자가 형사사건으로 공소되어 검사의 처분에 따라 처리되는 과정이

수록된 대장이다. 일정한 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입하는 것으로, 양식은 사건번호, 수리일자, 구분(송치기관, 고소·고발·인지 사건 등), 주임검사, 피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성별·연령·주거·직업, 죄명(수리, 처분), 구속일자(경찰, 검사, 법원), 석방 또는 석방취소 연월일 및 사유, 검사처분(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타관송치, 공소취소), 불기소 항고, 재정신청, 약식명령(연월일, 요지, 정식재판), 판결(선고, 요지), 재판확정일 및 집행(징수)원부번호, 집행석방지휘, 상소제기일 및 결과부번호, 압수번호, 송치의견, 비고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상단에 고무인으로 구속, 완결 등이 표시되어 있다.

《형사신청사건부》는 진행번호, 수리일자, 주임검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주거, 직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령), 신청인 또는 항고인의 인적사항(주거,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령), 사건표목, 본안사건(죄명, 공판 또는 수사구분), 결정연월일 및 요지, 항고연월일 및 요지, 재항고연월일 및 요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사사건부》에는 지방검찰청·고등검찰청·대검찰청의 사건번호,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번호, 원고·피고·참가인의 성명, 사건명, 소가(訴價), 제소 또는 응소일자, 집행보전 사건번호, 관련사건의 사건번호, 상대방, 법원 및 번호, 담당검사,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 소관부처, 1심·2심·3심 판결문 송달일자 및 결과, 상소여부 및 결정일자, 기록인계일자 및 인계청, 기록인수일자 및 인수청, 판결요지, 소송비용 정산관계(지급일자 및 금액, 환부일자 및 환부액), 임의변제(청구일자 및 금액, 지급일자 및 지급액), 구상권 행사일자, 채무명의 이첩일자, 기록보존(확정일자, 보존연한, 보존기간, 보존번호, 폐기일자)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행정소송사건부》는 사건번호, 담당, 접수일자, 원고, 피고, 사건표목, 재소일자, 관계부처,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 제1심 법원 및 사건번호, 결과 일자 및 요지, 비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미행협사건부》는 사건번호, 수리일자, 구분(송치기관, 고소·고발·인지 사건 등), 주임검사, 피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연령, 주거, 직업), 죄명(수리, 처분), 구속일자(경찰, 검사, 법원), 석방 또는 석방취소 연월일 및 사유, 검사처분(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타관송치, 공소취소), 불기소 항고, 재정신청, 약식명령(연월일, 요지, 정식재판), 판결(선고, 요지), 재판확정일 및 집행(징수)원부번호, 집행석방지휘, 상소제기일 및 결과부번호, 압수번호, 송치의견, 비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또한,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때 작성되는 《항

소·상소·상고사건부》는 진행번호, 수리일자, 주임검사, 인적사항(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령), 죄명, 구속일자, 석방일 및 사유, 석방취소일 및 사유, 제1심 및 제2심 법원·판결일자·판결요지, 항소 또는 상고 제기일자, 기록송부일자, 상고심 종결 일자·요지, 판결확정일 및 집행·징수원부번호, 집행·석방지휘일자, 기록 수령·반환일자, 1심형제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항고사건부》에는 진행번호, 수리일자, 주임검사, 항고인 및 피항고인 성명, 죄명, 불기소 결정(청명, 기록번호, 연월일, 요지), 기록송부일, 종결 연월일 및 요지, 재항고 결과 연월일 및 요지, 항고인 통지 연월일, 기록수령일, 기록호,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형사상소결과부》에는 진행번호, 기록번호, 주임검사, 피고인의 성명, 죄명, 구속일자, 석방일 및 사유, 제1심·항소심·상소심 판결일자, 요지, 상소 취하 일자,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처분에 불복시 재항고할 수 있다. 이때 작성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사건관계서철》에는 결정문이 편철되어 있다. <결정문>에는 진행번호, 재항고인 및 피재항고인의 이름·주거, 주문, 이유, 결정연월일, 검사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공소사건부》에는 진행번호, 수리일자, 주임검사, 피고인의 인적사항(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령, 성별), 죄명, 구속 및 구속갱신 결정일자, 석방일 및 사유, 석방취소일 및 사유, 제1심 및 제2심·상고심 법원·판결일자, 판결요지, 판결확정일 및 집행징수원부번호, 집행·석방지휘일자, 기록 수령·반환일자,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當否)를 다시 심리하게 되는데, 이를 ‘재심’ 이라한다. 《재심사건부》에는 진행번호, 수리일자, 주임검사, 인적사항(성명, 주거, 주민등록번호, 직업), 죄명, 원판결(선고연월일, 확정연월일, 요지), 형집행(시기, 종기), 재심(청구일자, 청구인, 청구취하, 결정연월일 및 요지), 형의집행정지석방(검사, 법원), 구속일자, 즉시항고(제기자, 제기일 및 항고사건부번호, 결과), 재심판결(선고일자, 요지), 재판확정일자 및 집행징수원부번호, 집행석방지휘, 상소제기일자 및 상소결과부번호, 원사건형제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하였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송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형사소송 절차이다. 《재정신청사건부》에는 진행번호, 수리일, 주임검사, 재정신청인(주거, 주민등록번호, 성명),

피재정신청인(주거,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령), 죄명, 불기소처분(청명, 사건번호, 연월일, 요지), 종결(검찰청 연월일·요지, 고법통지일, 고검송부일, 고법송부일), 법원 연월일·요지, 결정수리일, 기록(수령일, 반환일) 등이 기재되었다.

《검사인지사건부》는 사건번호, 수리일자, 구분(송치기관, 고소·고발·인지 사건 등), 주임검사, 피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연령, 주거, 직업), 죄명(수리, 처분), 구속일자(경찰, 검사, 법원), 석방 또는 석방취소 연월일 및 사유, 검사처분(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타관송치, 공소취소), 불기소 항고, 재정신청, 약식명령(연월일, 요지, 정식재판), 판결(선고, 요지), 재판확정일 및 집행(징수)원부번호, 집행석방지휘, 상소제기일 및 결과부번호, 압수번호, 송치의견, 비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사공조 관련 기록물인 《공조사건부》에는 진행번호, 수리일, 주임검사, 촉탁(청명·연월일·번호), 촉탁사항, 종결(연월일, 요지), 회답 등이 기재되었다. 촉탁사항에는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죄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내사사건부》, 《진정사건부》는 진행번호, 수리일, 주임검사, 진정인(성명, 주거), 피진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진정 사실의 요지, 진정사건지휘(연월일 및 관서, 내사기간, 보고연월일), 종결(연월일, 요지), 형사사건번호, 진정인결과통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검시사건부》는 진행번호, 수리연월일, 수리구분, 주임검사, 발견일시, 변사자의 인적사항, 검사의 검시연월일, 검시지휘, 검시결과, 처분, 형사사건번호, 비고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변사자의 인적사항>에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고, <검시지휘>에는 검시연월일, 관서, 지휘요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검시결과>에는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에는 처분연월일과 내사종결, 송치종결, 유족에게 인도, 가해자 입건 등의 처분요지가 기재되어 있다.

《검사사건부》에는 접수월일, 기록번호, 피의자(주민등록번호, 성명), 죄명, 신병, 검사처분, 판결결과,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공판장기미제사건부》는 피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한 장기미제사건에 관한 기록물로, 사건번호, 피고인의 성명, 죄명, 기소(상소)연월일, 선고연월일, 확인,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수사사건부》는 접수번호, 죄명, 발각원인, 접수일자, 긴급수속, 구속(영장발부, 집행), 석방, 사건송치월일 및 송치관서, 검사처분 월일 및 요지, 재판결과 월일 및 법원, 요지, 피의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연령, 본적, 주거, 직업), 송치서사본기록철 정수, 압수부 번호, 압수물, 범죄수사부 번호, 비고(검사, 담당, 고소고발인)로 구성되어 있다.

《소재수사지휘》는 검찰청에서 각 경찰서로 소재수사를 의뢰한 기록으로 진행번호, 형제번호, 주임검사, 피의자(성명, 연령,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등)와 함께 소재수사한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보낸 소재수사보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재수사보고>에는 피의자, 가족 및 관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범죄접수부》, 《범죄수사부》에는 결재, 진행번호, 수리연월일, 구분(기소, 내사 등), 담당자, 주임검사, 지휘기간, 죄명, 피의자 성명, 피해자(고발, 투서자)성명, 처리 연월일 및 요지, 사건번호, 압수번호, 사건송치 연월일 및 의견,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범죄사건처리부》, 《범죄사건부》에는 죄명, 발각원인, 수리일자, 구인일자, 유치일자, 석방일자, 훈계방면일자, 사건송치 일자 및 송치기관, 검찰관 처분 일자 및 요지, 판결일자 및 요지, 피의자의 주소·직업·성명·연령, 범죄사실 개요 등이 기재되어 있다.

《고소고발사건부》는 진행번호, 수리일자, 수리구별, 진정인의 성명·소속·주소, 피진정인의 성명·소속·주소, 내사사실의 개요, 지휘 연월일 및 관서, 종료 연월일 및 요지,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수사고소고발 무인허가 경제사범》에는 농어촌 부흥을 저해하는 범죄(도박, 산림법 위반, 축산법 위반 등), 수출·건설을 저해하는 범죄, 중요 범죄 등의 접수·기소·불기소·이송·미제기간 등의 통계가 기재되어 있다.

《고소장 접수부》에는 주임검사, 형제번호, 구속일자, 죄명, 피의자성명,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비고에는 고소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고소고발접수부》는 사건번호, 수리일자, 구분(송치기관, 고소·고발·인지 사건 등), 주임검사, 피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등록번호, 성별, 연령, 주거, 직업), 죄명(수리, 처분), 구속일자(경찰, 검사, 법원), 석방 또는 석방취소 연월일 및 사유, 검사처분(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타관송치, 공소취소), 불기소 항고, 재정신청, 약식명령(연월일, 요지, 정식재판), 판결(선고, 요지), 재판확정일 및 집행(징수)원부번호, 집행석방지휘, 상소제기일 및 결과부번호, 압수번호, 송치의견, 비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두고소고발 접수부》는 접수번호, 접수일자, 전담검사, 신고인의 인적사항(주거, 주민등록번호, 직업, 성명),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주거, 주민등록번호, 직업, 성명), 처리내용(처리요지, 죄명, 사건번호),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무죄사건부》, 《무죄확정사건 접수부》, 《무죄사건수발부》는 접수번호, 접수연월일, 평정 담당검사, 피고인, 죄명, 제1심 형제번호·청명·수사검사·공판관여검사·선고연월일·요지, 제2심 항소번호·청명·공판관여검사·선고연월일·요지, 제3심 상고번호·선고연월일·요지, 평정검사에 기록인계일, 평정서 제출일, 비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침해사건부》는 사건번호, 수리연월일, 수리구분, 건명, 협의자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피해자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사건개요, 처리연월일, 처리구분, 담당관,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비송사건부》는 진행번호, 형제번호, 주임검사, 피고인의 성명 및 연령, 죄명, 약식명령 연월일·법원·요지(형명 금액), 정식재판 청구 및 취하 연월일, 재판확정 연월일, 징계번호, 집계번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송사건접수 및 처리부》는 사건번호, 접수연월일, 구분, 주임검사, 사건명, 신청인 성명 및 주소(검찰청 검사 성명), 사건 본인 또는 위반자 성명 및 주소, 신청연월일, 종국 연월일 및 요지, 항고연월일, 항고결과, 재항고연월일, 재항고결과, 비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기소처분사건부》는 진행번호, 접수일자, 주임검사, 사건표목, 원검찰청명 및 기록번호, 원처분 연월일 및 요지, 항고인 주거 및 성명, 피의자 주거 및 성명, 종국(終局) 연월일 및 요지, 재항고 연월일 및 요지, 항고인에게 통지 연월일, 원검사에 처분명령 연월일, 기록수령 연월일, 비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소중지자사건재기부》는 연번호, 형번호, 피의자, 죄명, 재기 연월일 및 형번호, 주임검사,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이상의 기록물은 검찰청의 수사, 재판 및 행형의 업무 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유형의 대장으로, 대장 유형에 따라 기술항목이 다르긴 하지만 해당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항고인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령, 주거, 직업 등의 개인식별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이들 기록물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대장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구체적인 내용 보다는 주로 사안이 발생한 일자, 담당자 등 단편적인 정보일 수 있으나, 해당 사안을 확인하는 중요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항목별 유형으로 관련 현황과 통계를 작성하는 등의 학술자료로 충분히 이용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비실명화하여 공개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각종 사건부 기록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항고인 등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거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명부 · 색인부

▶ **기록물철 제목** : 수형인명부, 구속자명부, 기소중지자명부, 형미집행자명부, 형집행정지자명부, 공안사범 명부, 집행원부, 재판집행촉탁부, 피의자 및 피고인색인부, 형사민사사건색인부, 항소항고상고사건색인부, 수형인색인부

▶ **생산기관**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집행과
-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서울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서울지방검찰청 수원지청 · 여주지청 · 의정부지청 사건과, 수원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춘천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 속초지청 · 원주지청 사무과
-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사무국 집행과,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 공주지청 · 서산지청 · 천안지청 · 홍성지청 사무과, 청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집행과,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 제천지청 · 충주지청 사무과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 김천지청 · 상주지청 · 안동지청 · 영덕지청 · 의성지청 사무과
-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사무국 서무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 밀양지청 · 진주지청 · 통영지청 사무과, 마산지방검찰청 사무국 서무과, 마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사무과
-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서무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 순천지청 · 장흥지청 사무과, 전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서무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 남원지청 사무과, 제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서무과

▶ **생산연도** : 1946~1979

▶ **수량** : 5,649권

▶ **공개재분류**

- 부분공개 제6호
- 비공개 제6호(색인부, 공안사범명부)

▶ **비공개대상정보** : 수형인 및 피의자(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의 읍 · 면 · 동 이하 등 개인식별정보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9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8.12.3), 제6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8.12.14)
- 제1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12.14),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12.18)

개 요

검찰청의 수사, 재판, 집행 등의 업무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명부 및 색인류 기록물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수형인명부》는 대장으로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구성항목은 주민등록번호, 본명, 별명, 생년월일, 직업, 본적, 주소, 죄명, 형명 · 형기, 처형회수, 선고법인, 선고연

월일, 확정연월일, 수형인명표 송부일자, 주무과, 과장확인,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구속자명부》에는 구속(취급자, 구속별 일시), 석방(취급자, 연월일, 사유), 죄명 및 형명 형기, 인상(키, 용모, 얼굴특징 등), 착의, 구속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거, 본적), 전과, 공범 관계자 성명, 가족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다.

《기소중지자명부》에는 진행번호, 형제번호, 주임검사, 기소중지자(피의자) 성명·주민등록번호·성별·연령·직업·주거, 죄명, 시효일자, 완결일자, 기소중지사유, 수사지휘 일자 및 경찰서, 촉탁일자 및 검찰청, 비고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형미집행자명부》는 진행번호, 집행번호, 주임검사, 피고인(성명, 본적, 주거, 직업, 연령, 죄명, 판결(법원, 선고, 확정), 형명형기, 시효, 영장발부(연월일, 원부번호, 결과), 집행지휘,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형집행정지자명부》는 집행번호, 기록번호, 주임검사명, 수형자(본적, 주거, 주민등록번호, 직업, 성명, 연령), 감호 또는 보호자(주거,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령), 판결법원 및 연월일, 형과 형집행 정지 사항, 잔형기, 형집행, 통지, 비고 등의 항목으로 작성되어 있다.

《형집행유예인명부》는 진행번호, 주임검사, 사건번호, 피고인(성명, 본적, 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연령), 죄명, 판결(법원, 선고, 확정), 형명·형기, 시기일자, 종기일자, 집행유예통지, 주거이전사항, 집행유예취소,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공소보류자명부》는 형제번호, 수리일자, 구분, 주임검사, 피의자(주거, 직업, 성별, 성명, 연령), 죄명, 구속일자, 석방연월일 및 사유, 보석 구속 정지의 취소, 검사처분, 불기소 항고, 약식명령 연월일 및 요지, 판결 연월일 및 요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시찰인명부 공소보류자》에는 공소보류자 시찰조회서와 회답서가 편철되어 있다. <공소보류자 시찰조회서>에는 피의자의 주거·성명·연령, 죄명, 결정 검찰청 및 연월일, 공소보류사유, 범죄사실, 신원 보증 또는 보호자의 주거·성명·연령이 기재되어 있다. <회답서>에는 주거지의 현재여부, 현재의 사상동향 및 시찰결과, 공소보류 취소사유, 참고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동행보호인명부》에는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거), 동행보고(일시, 장소, 해제일시, 해제사유), 인상(키, 용모, 얼굴 특징 등), 착의, 전과, 가족관계, 보안처분 사안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정보사범명단》은 검거연월일, 검거장소, 검거기관, 성명, 송치연월일, 송치기관, 재판 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처리자명단》은 형제번호, 수리일자 및 구분, 검찰관, 죄명, 피고인, 직위, 구속연월일, 공소연월일, 비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안사범 명부》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본적, 주소, 직업, 학력, 주요 경력, 가입단체 및 부서, 죄명, 처분일자 및 관서요지, 제가여부, 전향여부,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공안사범 중 기소유예자 명부 및 동태현황》, 《공안사범 공소보류자 명부》, 《공안사범 기소유예자명부》에는 공안사범 기소유예자 명부, 공안사범기소유예자 동태보고, 공안사범 공소보류자 명부 등이 편철되어 있다. <명부>에는 진행번호, 사건수리일자, 주임검사, 사건번호, 사건수리청, 피의자의 인적사항(본적, 주거, 직업, 성명, 가명, 연령,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죄명(처분), 범죄개요, 송치일자, 송치관서, 구속일자, 검찰총장 승인일자, 승인이유, 석방일자, 검찰처분 일자, 처분청 처분검사, 시찰관서 통보, 시찰관서, 시찰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다. <공안사범기소유예자 동태보고>는 진행번호, 사건번호, 성명, 동태,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피의자(피고인)색인부》는 매월 초 또는 매년 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작성된 기록으로, 사건번호, 피의자(피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임검사,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민사)사건색인부》, 《색인부》, 《재정신청·내사사건색인부》는 주임검사, 사건번호,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항소항고상고사건색인부》는 성명, 사건부 번호,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담당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수형인색인부》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한자로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책과 정 숫자도 기재되어 있다(예 : 책45/474정).

●● 공개재분류 결과

이상의 기록물은 검찰청의 수사, 재판 및 행형의 업무 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유형의 명부 및 색인부 기록으로, 유형에 따라 기술항목이 다르긴 하지만 해당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수형인 및 피의자(피고인)·신고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직업 등의 개인식별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이들 기록물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각종 명부는 수형인 및 피의자(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다만, 색인부 기록과 공안사범명부는 개인정보가 대부분이므로 비공개한다.

사건기록관리

▶ **기록물철 제목** : 집행원부, 재판집행촉탁부, 형사사건기록보존부, 청내기록인계인수부, 완결 및 사건기록인계부, 기록 및 증거물송부부,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수사·향소기록송부부, 공판사건기록관리부, 형사기록인계인수부, 향소·상소·상고기록인계인수부, 타청 및 소년부이송부, 사건기록대출부, 서무기록보존부, 보존문서 기록대장, 폐기문서대장

▶ **생산기관**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집행과
-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서울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서울지방검찰청 수원지청·여주지청·의정부지청 사건과, 수원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춘천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속초지청·원주지청 사무과
-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사무국 집행과,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공주지청·서산지청·천안지청·홍성지청 사무과, 청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집행과,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제천시청·충주지청 사무과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김천시청·상주시청·안동지청·영덕지청·의성지청 사무과
-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사무국 서무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밀양지청·진주지청·통영지청 사무과, 마산지방검찰청 사무국 서무과, 마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사무과
-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서무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순천시청·장흥지청 사무과, 전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서무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시청·남원지청 사무과, 제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서무과

▶ **생산연도** : 1946~1979

▶ **수량** : 5,582권

▶ **공개재분류**

- 공개(서무기록보존부, 보존문서기록대장)
- 부분공개 제6호

▶ **비공개대상정보**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9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8.12.3), 제6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8.12.14)
- 제1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12.14),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12.18)

개요

검찰청의 수사, 재판 및 행형의 업무 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집행원부》는 진행번호, 기록번호, 주임검사, 피고자·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

령, 죄명, 재판 또는 처분(법원 또는 검찰청, 연월일, 형명, 형기, 금액, 기타), 상소(제기일, 취하일, 포기일), 재판확정일, 형기기산일, 지휘일, 촉탁(연월일, 수탁청 및 재판집행 촉탁부번호), 형미집행자명번호,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재판집행촉탁부》에는 개인별로 집행번호, 사건번호, 주임검사, 피고인의 개인정보(주거,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령), 죄명, 판결법원 및 선고·확정일, 형명 형기, 집행원부 번호, 촉탁 연월일 및 청명·촉탁사유·회보 연월일, 집행상황 조회 연월일·회보 연월일, 기타,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형사사건기록보존부》는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하여 영구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기록물로서 기록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성명, 죄명, 종결구별, 종결연월일, 보존철번호, 재판원본편철번호, 보존종별, 보존종료연도, 폐기인가 인(印), 폐기연월일, 비고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내기록인계인수부》는 형제번호, 성명, 기소 또는 이송, 집행일, 징수일, 압수일, 사건일, 보존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

《완결기록인계부》는 송부월일, 기록번호, 수령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송기록인계부》는 일련번호, 사건부 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원피고별, 당사자 성명, 시간명, 송부연월일 및 근거, 송부사유, 송부처,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기록인계부》는 연월일, 주임검사, 사건종별, 사건번호, 수령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죄기록인계부》는 일련번호, 사건번호, 피고인 성명, 죄명, 자료과 인계일, 수령자, 평정번호, 평정검사, 기록반환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혁검인수인계부》는 혁검경찰부 해체에 따르는 기록문서 및 재산 인수 인계기록으로서, 보존기록 내역, 벌과금 처리내역, 보석금 보관 내역, 형사보상금 신청기록 내역, 압수금품 내역, 압수금품 중 현물 인계분 등이 편철되어 있다.

《기록 및 증거물송부부》는 집행번호, 송부월일, 기록번호, 주임검사, 피고인 성명, 죄명, 송부사유, 기록권수, 수령인,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는 공소제기 사실을 기재하여 법원확인을 받은 기록으로 송부(공소)연월일, 형제번호, 피고인 성명, 법원접수, 법원번호, 기록반환,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수사, 항소기록송부부》는 진행번호, 송부월일, 기록번호, 주임검사, 피고인, 죄명, 송부사유, 기록건수, 수령인,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공판사건기록관리부》는 기소연월일, 형제번호, 신병(구속·불구속), 피고인, 죄명, 법원번호, 수사검사·관여검사, 제출일자, 법원수령인, 선고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형사기록인계인수부》는 인계연월일(송부월일), 형제번호(사건번호), 피의자 피고인 성명, 죄명, 송부사유, 기록권수, 인수자(수령인),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항소, 상소, 상고기록인계인수부》는 접수월일, 사건번호, 피고인, 죄명, 권수, 구속만료일, 공판부 인계월일 및 수령인, 기록반환일, 상소심 송부월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청 및 소년부이송부》는 진행번호, 송부월일, 기록번호, 주임검사, 피고인 성명, 죄명, 송부사유, 기록권수, 수령인, 비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기록대출부》는 형제번호, 기록권수, 대출 연월일, 대출자, 반환 연월일, 비고(대출사유)로 구성되어 있다.

《서무기록보존부》는 진행번호, 연도, 기록부책(記錄簿冊) 명칭, 책수, 소재, 보존종별, 보존시기, 보존종료연도, 폐기인가 인(印), 폐기연월일,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보존문서기록대장》은 연도, 보존기간, 보관철(분류번호, 기능명칭 및 부제목), 보관처(서고), 파기연월일,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폐기문서대장》에는 폐기문서목록, 사건기록폐기목록 등이 편철되어 있다. <폐기문서목록>에는 생산년도, 분류번호, 기능명칭 및 부제목, 보존기간, 비고가 기재되어 있으며, <사건기록폐기목록>에는 일련번호, 기록번호, 성명, 죄명, 보존기간,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이상은 검찰청의 수사, 재판 및 행형의 업무 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령 등의 개인식별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기록물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대장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구체적인 내용 보다는 주로 사안이 발생한 일자, 담당자 등 단편적인 정보일 수 있으나, 해당 사안을 확인하는 중요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항목별 유형으로 관련 현황과 통계를 작성하는 등의 학술자료로 충분히 이용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비실명화 하여 공개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형사사건기록보존부》, 각종 기록인수인계부, 각종 기록송부부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완결기록인계부》, 《서무기록보존부》, 《보존문서기록대장》은 비공개 대상정보가 없으므로 공개한다.

법령·예규

▶ **기록물철 제목** : 인사예규, 예규철, 회계예규철, 예규에 관한 기록, 검찰예규집, 예규관계철, 보안예규, 관리예규훈령, 송무예규철

▶ **생산기관**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공판송무과·총무과 기획과
-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 서무과,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청·의정부지청 사무과
-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사무국 집행과
- 대구고등검찰청 사무국 서무과
-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사무과
- 광주고등검찰청 사무국 서무과·총무과

▶ **생산연도** : 1958~1979

▶ **수량** : 158권

▶ **공개재분류** : 공개 / 부분공개 제6호

▶ **비공개대상정보** : 이름, 주소의 읍·면·동 이하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9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8.12.3), 제6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8.12.14)
- 제1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12.14),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12.18)

개 요

검찰청의 인사, 회계, 송무, 보안 등에 관한 예규·규칙 등을 편철한 기록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인사예규철》에는 인사사무처리지침(예규 제106호), 고용원임용보고개선, 공무원정년 연장, 일용잡급고용규정 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자료, 보수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1980년 실업계학교 우수졸업생의 공무원임용계획 등이 편철되어 있다.

《예규관계철(인사)》에는 일용잡급고용규정 제정, 인사사무처리지침 통보, 사법서사인가에 대한 승인지침변경, 4급이하 공무원 인사관리철저, 공무원정년연장 등이 편철되어 있다.

《송무예규철》에는 의료보험에 따른 각종신고요령 통보, 대통령각하 연두순시시 지시사항 및 동지시사항 실천지침 시달,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국가배상업무처리지침시달(통보), 불기소사건의 소재수사결과 보고서 처리에 관한 지시, 1979년도 3/4분기 서정쇄신추진상황시달, 사건처분결과통지제도의 개선(예규 제115호), 판례시달, 압수물처리(예규 제117호), 확정판결시달, 추송서관리(예규 제108호) 등이 편철되어 있다.

《예규철》, 《예규에 관한 기록》, 《검찰예규집》, 《예규관계철》에는 신병처리 지침 시달, 불온간행물 취급지침 개정통보, 위임전결규정 개정, 구속영장 처리표 기재사항 지시, 서식개정 및 제정, 법무부 훈령 제72호 공포, 잡급직원의 휴가처리에 관한기준, 법률질의 해석, 검찰통계사무규정(개정)에 따른 업무지시 등이 편철되어 있다.

《회계예규철》에는 회계예규 개정에 따른 원천징수사무 취급,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기준표 송부, 기안지 서식 변경, 공무원 제수당 지급규정 중 개정,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고용원 규정 등이 편철되어 있다.

《보안예규》에는 보안목표 관리지침 개정 통보와 함께 보안목표 관리지침이 첨부되어 있다.

《관리예규훈령》에는 검찰도서관리규정, 공보업무관리지침, 추송서 관리, 구두고소고발 접수창구 운영지침 시달 등이 편철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검찰청의 인사, 송무, 회계, 보안 등에 관한 예규·규칙 등을 편철한 기록으로,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하여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 원칙을 적용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기록물은 대검찰청의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대검예규 제435호)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소관 훈령·예고·고시의 제정·개정사항은 '행정정보공표대상'으로 고시나 보도자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정보이다. 따라서 예규·규칙 기록물은 공개한다. 다만, 《인사예규철》 등에 인사 관련 질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통 계

▶ **기록물철 제목** : 통계에 관한 기록, 통계연표, 징수통계철, 항고·재항고사건 통계철, 각종범죄통계표철, 집행통계표철, 사회안전법관계 통계표철, 공무원범죄사건, 농어촌범죄사건, 소년범죄사건, 각종 경제사범

▶ **생산기관**

- 대검찰청 총무부 기획과, 공판송무부 집행과
-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서울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사무국 사건과, 서울지방검찰청 수원지청·의정부지청·여주지청 사무과, 춘천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서무과·집행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속초지청·원주지청 사무과
-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사무국 집행과,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공주지청·서산지청·천안지청·홍성지청 사무과, 청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집행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사무과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사무국 사건과·집행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김천지청·상주지청·안동지청·영덕지청·의성지청 사무과
-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사무국 서무과, 창원지방검찰청 서무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밀양지청·진주시청·통영지청 사무과, 마산지방검찰청 사무국 서무과
- 광주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광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서무과·집행과, 목포지청·순천지청·장흥지청 사무과, 전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서무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남원지청 사무과

▶ **생산연도** : 1945~1979

▶ **수량** : 924권

▶ **공개재분류** : 공개 / 부분공개 제6호

▶ **비공개대상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직업, 연령, 본적 및 주소의 읍·면·동 이하 등 개인식별정보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9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8.12.3), 제6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8.12.14)
- 제1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12.14),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12.18)

개 요

검찰의 수사, 사건처리 등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통계기록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통계연표》, 《각종범죄통계표철》에는 구속사건처리인원표, 검사수사사건표, 공무원범죄사건표, 고소고발사건표, 소년범죄사건표, 미군인 등 범죄사건처리표 등이 편철되어 있다. 각 사건표에는 죄명별로 접수건수, 기소·불기소 건수, 미제 건수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집행통계표철》에는 무죄·면소·공소기각·확정보고서 월별 집행행정지자통계표, 보석인원표가 편철되어 있다. <무죄·면소·공소기각·확정보고서>에는 피고인 성명, 죄명, 판결, 판결법원, 판결요지, 판결일자 및 확정일자, 주임검사, 이유 등이 기재되어 있다. <형집행정지자통계표>에는 사유별(질병, 잉태, 기타) 처리 건수가 기재되어 있다. <보석인원표>에는 죄명별 보석허가 건수가 기재되어 있다.

《내사사건통계》는 검찰직원의 내사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검찰직원 내사사건 현황>, <내사결과보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황은 월별로 작성한 것으로 수리연월일, 피진정인 인적사항, 진정인 인적사항, 내사사실의 요지, 최초수리기관, 주임검사, 처분연월일 및 내용, 비고로 나누어 작성되어 있다.

《항고재항고 재정신청사건 통계철》은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항고사건 심리기간 별 통계, 재항고장 송부기간별 통계, 재항고사건 심리기간별 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신청사건 처리표>는 접수처리와 고법처리로 구분하고 지검·지청으로 구분하여 작성된 통계이다.

《통계에 관한 기록》은 <재정신청사건 처리표>와 <벌과금 징수성적표 시정>을 위한 <징수금통계보고>가 있다. 징수금 통계 보고는 종별(벌금, 과료, 몰수금 등)과 처분별(징수금조정액, 처분세액, 미제액, 촉탁액)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회안전법관계 통계철》은 지청에서 지검으로 송부한 보안처분 대상자 위해도 측정, 사회안전법 운영현황 점검 및 보고, 보안처분 대상자 처리 등이 편철되어 있다. 명단 작성 현황, 명단 조정 현황, 자료 수집 현황, 처리현황으로 구분한 현황이 작성되어 있으며, 보안감호, 주거제한, 보호관찰, 면제, 보류, 비대상자, 총대상자별 동향조사서, 1차 명단, 2차 명단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기재하였다. 보안처분대상자 명부에는 경찰서 신고번호, 신고접수일시, 성명,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적용 법조 및 형종 형량, 복역기간, 출소교도소, 직업, 성별, 시찰편입사항,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징수통계철》은 징수금 성적월표로 법무부와 검찰에 보고한 통계이다. <징수금 성적월표>에는 종별(일반재판, 즉결재판)과 처분별(징수금 조정, 처분세액, 미제액, 촉탁반환액)로 구분하여 해당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죄명별 벌금선고 상황표>에는 죄명, 선고인원, 선고액, 평균액, 죄명, 선고인원, 선고액, 평균액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

《공무원범죄사건》, 《농어촌범죄사건》, 《소년범죄사건》, 《각종 경제사범》에는 공무원, 농어촌, 소년 범죄별 통계표가 편철되어 있다. 죄명별로 접수건수, 기소·불기소 건수, 미제 건수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 공개재분류 결과

검찰청의 수사 및 사건처리와 관련한 각종 통계 기록으로,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하여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 원칙을 적용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청의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대검예규 435호)에서도 각종 업무에서 생산되는 통계자료에 대해 행정정보의 공표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사회안전법관계 통계철》과 관련해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들의 전국적 현황과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현황기록이 대남전략에 유용한 정보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로 판시한 예가 있다(대법원 2004.3.18 선고 2001두8254). 그러나, 위 통계자료는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것으로 생산당시의 정보의 민감함은 대부분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내사사건 통계》, 《항고재항고 재정신청사건 통계철》 등도 수사 및 결정이 종료된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통계기록은 공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통계기록과 비교하여 《내사사건 통계》, 《사회안전법관계 통계철》 등은 개인 인적사항, 보안처분대상자 고유번호 등 개인 식별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비실명화 및 해당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전국검사장회의

- ▶ 기록물철 제목 : 전국검사장회의관계철, 전국각급검사장회의
- ▶ 생산기관 : 대검찰청 사무국 총무과
- ▶ 생산연도 : 1966~1979
- ▶ 수량 : 25권
- ▶ 공개재분류 : 공개 / 부분공개 제6호
- ▶ 비공개대상정보 : 수사 관련 용의자(해당자)의 이름 등 개인식별정보
-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9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8.12.3), 제6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8.12.14)
 - 제1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12.14),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12.18)

개요

매년 개최된 전국검사장회의의 준비 및 개최 과정, 회의자료 등으로 구성된 기록물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전국검사장회의관계철》은 전국검사장 회의 개최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전국검사장 회의록>, <검찰총장훈시요지>, <참석자 명단>, <법무부장관 훈시>, <검찰총장 훈시>, <법무부차관 지시사항>, <건의 및 요망사항> 등의 문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의록>은 발언자와 발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회의장 좌석배치표>, <회의 안내장>, <보도자료>, <방송안내문>, <참석자 소속 및 성명>, <국무총리 치사>, <검찰총장 훈시 원고>와 인쇄물이 있다. 비표, 관련기사 스크랩, 회의관련 사진(회의광경, 중앙정보부 초청 오찬)이 첨부되어 있다.

《전국각급검사장회의》는 <전국각급검사장회의회순>, <배석표>, <법무부장관 훈시>, <검찰총장 훈시>, <회의안건> 등의 문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의안건>은 사건처리심사분석, 벌과금 징수강화에 관하여, 예산안설명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처리심사분석’에는 검사수사사건 처리상황, 검사수사사건 청별 접수상황, 검사수사사건 기소상황 등에 대해 분기별, 처리별로 현황이 작성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전국검사장 회의 개최 과정에서 생산된 《전국검사장회의관계철》 등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하여 공개하되, 회의자료(회의록)에 포함된 수사 관련 용의자(해당자)의 이름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 **기록물철 제목** : 배상금지급신청접수대장, 비품대장, 국유재산대장, 비밀취급증발급대장, 공증증서철, 사건수리통지서철, 월례보고서철, 법률구조사건접수부, 징수금 등 성적보고서, 국가배상보존부, 구속적부부신청처리부, 세입의결서, 징수금조정부 등

▶ **생산기관**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집행과
-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 서무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사무과, 춘천지방검찰청 사무국 집행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속초지청 사무과
-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사무국 집행과,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서산지청·천안지청·홍성지청 사무과, 청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집행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충주지청 사무과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사무국 사건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안동지청·영덕지청·의성지청 사무과
-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사무국 서무과, 창원지방검찰청 사무국 서무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사무과
-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서무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군산지청 사무과, 전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서무과, 제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생산연도** : 1948~1979

▶ **수량** : 163권

▶ **공개재분류**

- 공개(비품대장)
- 부분공개 제6호

▶ **비공개대상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직업, 본적 및 주소의 읍·면·동 이하 등 개인식별정보
- 인감증명원, 호적등본, 주민등록표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9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8.12.3), 제6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8.12.14)
- 제1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12.14),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12.18)

개 요

검찰청에서 생산된 공증증서 및 각종 대장류의 기록물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행협 배상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 《배상금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 《배상사건 접수대장》에는 배상금 신청 접수대장이 편철되어 있으며, 일련번호, 접수일자, 신청사건 카드번호, 피해자색인 카드번호, 신청인 성명, 피해자 성명, 가해자 성명, 관련부처, 청

구금액, 완결(동의청구, 부동의, 제소), 비고(청구기각, 지급결정, 신청금액, 지급액 등)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배상금지급 신청접수대장》에는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성명, 신청금액, 가해자 성명 및 소속, 피해자 성명 및 소속, 사고유형(가해유형, 피해유형, 공무상 외), 결정 일자 및 내용, 제소관계, 사후처리 대장번호, 비고(배상결정통지 일자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비품대장》에는 기관 비품의 품명, 단가, 수입 수량 및 누계, 불출(파손, 분실 등), 재고 누계 등이 기재되어 있다.

《국유재산대장》에는 관사내역, 국유재산 현황 등이 편철되어 있다. <관사내역>에는 재산명, 주소, 대지, 소유자, 미등기, 관리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국유재산 현황>에는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 및 지번, 지목, 지적이 기재되어 있다.

《비밀취급증발급대장》에는 결재, 발급번호, 취급 비밀등급, 발급 연월일, 소속, 직위 또는 직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신규 또는 갱신, 회수여부, 주소, 사진 등이 기재되어 있다.

《공증증서촉탁철》, 《공증증서철》, 《공증증서정관인증》, 《공증증서 신청서철》, 《공증원본》, 《공증관계철》등 공증 기록은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사무를 대행할 공증인 직무대행을 임명 또는 해임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인증을 부여하는 증서, 공증증서 정본교부 신청서, 지배인 등기부 발본(拔本), 공증증서 촉탁서, 정관 등이 편철되어 있다. 개인의 성명 및 주소·본적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원, 호적등본, 주민등록표 등이 첨부되어 있다. 《공증증서 수수료》에는 수입인지 첩용대지(貼用台紙)가 편철되어 있으며, 등기목적, 과세 표준액, 등기세, 신청인, 인정가격, 차세액(差稅額)이 기재되어 있다. 《인증부》에는 인증원부가 편철되어 있다. <인증원부>는 등부(登簿)번호, 촉탁인의 주소 및 성명, 증서종류, 증서의 서명 및 날인자, 인증 방법, 입회인의 주소 및 성명, 계인(契印),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접수부》는 접수월일, 접수번호, 건명, 증서번호 또는 등부번호, 촉탁인 주소와 성명, 수수료 일당여비,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수리통지서철》에는 지방검찰청에서 각 지청으로 보낸 사건수리 통지가 편철되어 있다. <사건수리 통지>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성명·연령, 죄명, 송치연월일, 수리연월일, 기록번호, 기록권수,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월례보고서철》에는 검사수사 범죄사건표, 학생범죄사건표, 학교별 학생범인원표, 기소 후 재판까지의 기간표, 제1심 재판결과표, 소년범죄사건표, 공무원범죄 죄명별 인원표, 즉결사건 처리표 등이 편철되어 있다. <각 사건표>에는 죄명별로 접수건수, 기소·불기

소 건수, 미제 건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학교별 학생범인원표>에는 학교명, 학급, 성명, 연령, 죄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기소 후 재판까지의 기간표>에는 사건명과 피의자 성명, 주임검사 등이 기재되어 있다.

《법률구조사건접수부》는 접수번호 및 일자,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대방의 인적사항(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내용, 처리일자, 처리결과, 결재로 구성되어 있다.

《징수금 등 성적보고서》에는 징수금성적월표, 죄명별 벌금선고 상황표가 편철되어 있다. <징수금성적월표>에는 종별(과료, 몰수금, 추징금, 소송비용, 벌금, 과태료 등)징수금 조정액, 처분제액, 미제액, 촉탁반환액이 기재되어 있다. <죄명별 벌금선고 상황표>에는 죄명, 선고인원, 선고액, 평균액이 기재되어 있다.

《국가배상보존부》에는 보존번호, 1심법원 및 사건번호, 당사자(신청인)성명, 사건표목, 보존연월일, 관계부처 등이 기재되어 있다.

《구속적부여부신청처리부》는 신청월일, 피구속자 성명, 죄명, 담당검사, 검사조치, 법원조치, 비고(형제번호), 결재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의결서》는 세입(벌금 및 과태료, 몰수금 등)명세서로, 징제번호, 형제번호, 적요, 징수금,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적요에는 납입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징수금조정부》는 월일, 징제호, 납부인, 죄명, 종류, 징수주임, 조정액, 일계, 월계로 구성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이상의 기록물은 검찰청의 공증증서, 각종 대장류의 기록물이다. 이들 기록물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배상금지급신청접수대장》, 《공증증서철》, 《사건수리통지서철》, 《각종 통계철》 등은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비품대장》, 《국유재산대장》은 비공개 대상정보가 없으므로 공개한다. 다만, 《비밀취급증발급대장》은 개인정보가 대부분이므로 비공개한다.

《월례보고서철》, 《법률구조사건접수부》, 《국가배상보존부》, 《구속적부여부신청처리부》, 《세입의결서》, 《징수금조정부》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징수금 등 성적보고서》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없으므로 공개한다.

인사·징계

- ▶ **기록물철 제목** : 인사기록카드, 인사기록, 비현재직원이력서철, 임용에 관한 기록, 인사발령원본, 인사발령대장, 사령원부, 임용관계철, 임명(4급이하), 임용(3급이상), 상용잡급(임면), 고용원 임명, 면직(4급이하), 상용잡급 전형, 정기승급(4급이하), 연금, 기여금, 변호사징계관계철, 승강임, 신원조사회보철, 포상 등

▶ 생산기관

- 대검찰청 사무국 총무과, 공판송무부 집행과
-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 서무과, 서울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사무국 서무과·총무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사무과
-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사무국 집행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사무과, 청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집행과
- 대구고등검찰청 사무국 서무과·총무과, 대구지방검찰청 사무국 서무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영덕지청 사무과
-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사무국 서무과, 창원지방검찰청 사무국 서무과, 마산지방검찰청 사무국 서무과
- 광주고등검찰청 사무국 서무과, 광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집행과, 전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서무과

▶ 생산연도 : 1958~1979

▶ 수량 : 325권

▶ 공개재분류

- 공개
- 부분공개 제6호
- 비공개 제6호(인사기록카드, 이력서철, 연금, 기여금, 신원조사회보철)

▶ 비공개대상정보

- 인사기록카드, 인사기록, 이력서, 신원조사회보
- 개인식별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본적, 주소의 읍·면·동 이하)
- 호적등본, 사직서(원), 사망진단서 등
- 시험점수, 총점, 순위, 답안지, 채점표 등
- 연금번호, 연금 납입액, 봉급명세서
- 징계기록의 대상자 및 조사관·제3자의 이름, 소속, 직위 등
- 상훈·포상기록 중 가족정보 등 사생활정보, 주소의 읍·면·동 이하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9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8.12.3), 제6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8.12.14)
- 제1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12.14),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12.18)

개요

대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인사, 상훈, 징계, 연금 등 기록물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인사기록카드》, 《인사기록》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본관, 성별, 생년월일,

본적, 주소, 생활근거지, 호주 성명 및 관계, 병역관계, 신체사항(신장, 체중, 시력, 색맹, 혈액형, 건강상태, 종교, 취미, 특기), 재산사항(동산, 부동산, 가옥, 부업명, 부업월수, 재산총액), 정당 사회단체(단체명, 직책, 가입연월일, 탈퇴연월일), 가족사항(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 직장 직위), 학력(기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위), 전력(기간, 근무처, 직위), 임면사항(연월일, 직급, 임면구분, 발령청), 임용자격시험(연월일, 시험종류, 시행청), 외국어해독(외국어명, 상중하), 훈련(기간, 종류, 훈련기간), 외국시찰 및 수학(기간, 목적, 국명), 포상·서훈(연월일, 종류, 시행청), 징계·형벌(연월일, 종류, 발령청), 승급, 경력(기간, 직급, 부서 및 직위, 담당사무, 발령청, 기록자인), 근무성적평정(연월일, 평정점, 기록자인), 승급기록(호봉, 발령연월일, 기록자인), 근속기간합산내역(경력기간, 최초임용직급, 경력내용, 경력연수, 승진제한기간, 발령청, 전력조회기간, 인사담당관확인, 비고), 총경력연수, 승급제한연수, 사정호봉에 요하는 경력, 사정호봉, 작성자 서명, 담당관 서명, 경력평정(연월일, 평정점, 기록자인), 훈련성적(연도 반 기별, 성적점수, 기록자인), 승진순위(연월일, 순위, 기록자인), 적성검사(시행연월일, 일반지능검사, 종합적성검사, 다면적성검사, 적성분야), 비고, 기록사항 확인(일자, 본인 서명, 소속기관장 서명)의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 호적초본, 신원증명서, 병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조사회보서, 재정정보증서(인감증명, 재산증명, 등기부등본), 선서(각서), 임용후보자등록원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비현재직원이력서철》에는 이력서가 편철되어 있으며, 성명, 생년월일, 연령, 출신도명, 본적, 현주소, 호적관계, 호주성명, 학력 및 경력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임용에 관한 기록》, 《인사발령 원본》은 인사발령, 임용, 전보 등 인사기록으로 인사발령은 발령일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발령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공무원임용서는 결재란, 의견, 제목, 일련번호, 성명, 임용사항(직급, 호봉, 부서), 현직(직급, 부서), 임용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임용조사서 및 이력서 등의 인사기록증빙서가 첨부되어 있다. 임용조사서에는 발령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령, 성별, 자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인사발령대장》, 《발령대장》은 일정양식으로 발령일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발령사항, 발령권자, 발령근거, 기재자 날인, 확인자 날인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령원부》, 《임시고용원발령부》에는 발령연월일, 사령사항, 사령발부청명, 직명,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임용관계철》, 《임명(4급이하)》에는〈공무원 신규임용〉, 〈회계공무원 임면〉, 〈인사발령통지〉 등이 편철되어 있다. 〈공무원 신규임용조사서〉에는 발령사항 및 성명, 생년월일,

연령, 성별, 출신학교 등이 기재되어 있다. <회계공무원 임면> 및 <인사발령통지>에는 발령일자 및 발령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임용(3급이상)》에는 <공무원 인사발령통지>, <검사지원자 전형>, <각종위원회 위원 임명>, <사직원 전달> 등이 편철되어 있다. <검사지원자 전형>에는 검사지원자 현황과 검사전형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검사지원자 현황>에는 성명, 연령, 출신지, 학력, 고시성적, 연수원 성적, 병역관계, 석차 합산, 서열,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검사전형 자료>에는 개인별로 성명, 연령, 결혼, 취미, 특기, 본적, 주소, 학력, 경력, 병역(兵役), 재산관계, 가족관계, 시험 성적 및 석순(席順), 신원조회 관계, 채점표, 희망지, 신원보증인 직업·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상용잡급(임면)》, 《고용원 임명》에는 잡급직원·고용원의 신규 고용 및 해임이 편철되어 있다. <공무원 임용조사서>에는 발령사항 및 성명, 생년월일, 연령, 성별, 출신학교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해임>에는 개인별 사직서가 첨부되어 있다.

《면직(4급이하)》은 공무원 면직 및 해면과 관련된 기록으로, 해면에는 개인별 사직서, 호적등본, 사망진단서가 첨부되어 있기도 하다.

《상용잡급 전형》에는 <상용잡급직원 전형실시> 및 <결과판정>이 편철되어 있다. <상용잡급직원 전형실시>에는 전형공고, 전형세부계획이 첨부되어 있다. <전형결과 판정>에는 응시자 성명, 응시자별 필기시험·실기시험·면접시험 점수, 총점, 순위, 최종판단이 기재되어 있으며, 응시자별 답안지, 면접시험 채점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정기승급(4급이하)》에는 <공무원정기승급(5급)>, <호봉정정발령>, <추가승급발령> 등이 편철되어 있으며, 병적조회 및 전력조회 회보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승강임》은 <공무원승진 임용보고>, <승진후보자 내신>, <공무원 임면> 등 인사, 승진에 관한 문서이다. <임용보고>에는 공무원 임용서 및 임용조사서가 첨부되어 있다. <임용서>는 성명, 임용상황(직급, 호봉, 부서), 현직(직급, 부서), 임용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임용조사서>는 발령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령, 성별, 자격(당해급류의 재직기간,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시험, 소지한 자격증), 정원 및 현원,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사직원 제출>에는 성명과 퇴직사유,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비위내용, 비고로 구성하여 작성된 퇴직사유서가 첨부되어 있다.

《신원조사회보철》에는 요청관, 조사이유, 본적, 주소, 부처, 직위,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상관계, 성질·소행, 상벌관계, 기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법제·인사통계 임면철》은 <직무대리 명령>, <면직>, <사직원 전달>, <비밀보관책임자 임명> 등 문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직시험 실시 결과 보고>에는 수험자 소속 및 직급

명, 성명, 합격자 시험성적, 시험위원 위촉 사항으로 과목별 시험위원 직명 및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검찰서기보(을) 전직시험 문제지가 첨부되어 있다.

《연금》에는 <기여금납입총괄표 제출>, <학자금 상환내역 보고>, <기여금 납입일보 재확인 결과 회보>, <연금사무담당자 교체 보고>, <공무원요양기관일람표> 등이 편철되어 있다. <기여금등납입총괄표>, <신분 변동자 내역>, <연금 영수증>, <개인별 봉급명세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연금번호, 성명, 급호, 신분변동내역(연월일, 사유구분), 적요, 소속 등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기여금》에는 <공무원연금기여금 입금통지서>, <기여금 등 납입총괄표>, <공무원연금카드부분 송부>, <재직기간 합산승인 통보>, <신분변동 등 확인자료 제출>, <미납기여금 추징통보>, <기여금 납부내역총괄표 첨부제출>, <연금법령 개정에 따른 합산반납금 정정통보> 등이 편철되어 있다. <기여금 등 납입총괄표>에는 발신(시행연월일, 기관번호, 기관명), 확인(기여금징수의무자, 인사담당자), 총괄(봉급지급총괄, 기여금 등 총계, 매월 기여금, 소급기여금, 합산반납금, 입대휴직금, 기여금면제자 등), 기여금 등 납입총괄 내역, 신분변동내역(성명, 직급·호봉, 변동일자, 연금번호 등), 소급기여금·합산반납금·입대휴직추징금·해외파견예입금 납입내역 및 기여금면제자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포상》은 <포상대상자 추천 공문>으로 <공적조서>가 첨부되어 있다.

《상훈》은 <표창장 수여> 등 문서로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와 위원회 위원장, 위원 및 간사 직급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상벌》은 표창과 비위공무원 처리 등에 관한 문서로 <표창수여보고>, <수상공로자 표창상신>, <품위손상 및 비위공무원 처리결과 통보>, <소청사건 변명자료 제출> 등 문건이 있다. 공적조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비위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변호사징계관계철》에는 <변호사징계개시 신청취하>, <변호사징계개시 신청건의>, <변호사업무 정지처분해제> 등이 편철되어 있다.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본적, 소속, 성명, 생년월일, 연령)과 함께 징계해당사실, 공소장 및 공소사실, 판결문 등이 첨부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위 기록물은 인사, 상훈, 징계, 연금 등 기록물로 개인의 신상정보, 근무평정 정보, 징계 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기존에 인사기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 포함 기록으로 보아 비공개로, 징계 관련 기록은 행정처리 공문은 공개하고 신상조사서나 징계회의록은 비공개하였다.

그러나, 위 기록물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하여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사기록카드》, 《비현재직원이력서철》, 《신원조사회보철》, 《연금》, 《기여금》은 개인정보가 대부분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한다.

《임용에 관한 기록》, 《인사발령원본》, 《인사발령대장》, 《사령원부》, 《임시고용원 발령부》 등 인사 관련 기록물에서 인사발령 공문, 성명, 소속, 직급, 직위 및 발령사항 정보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업무수행 과정상의 정보이고 개인의 비밀 및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공개하되, 진단서, 임용조사서, 사직원 등 개인정보가 상당수 포함된 기록은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징계 관련 기록은 직무 수행상 발생한 과실·위법사항에 관한 것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소속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해당 기록물과 내용상 동일한 유형의 감사처분결과, 감사처분요구서 등을 개인정보 삭제후 홈페이지, 책자발간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상훈·포상 관련 기록은 업무 수행상 공적을 평가하여 상과 훈장을 수여한 것으로 공개하되, 가족정보 등은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소 송

- ▶ 기록물철 제목 : 중요사건 보고서철(부동산), 중요사건 보고서철(손해배상)
- ▶ 생산기관 : 대검찰청 사무국 총무과
- ▶ 생산연도 : 1976
- ▶ 수량 : 9권
- ▶ 공개재분류 : 부분공개 제6호
- ▶ 비공개대상정보 : 원고(피고)의 이름·주소 및 본적의 읍·면·동 이하, 부동산의 지번, 사건번호
-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9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8.12.3), 제6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8.12.14)

개 요

검찰의 업무와 관련한 소송관련 기록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중요사건 보고서철(부동산)》, 《중요사건 보고서철(손해배상)》은 지검에서 법무부에 보고한 <소송사무보고>이다. <소송사무보고>는 소송사건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사건명, 피고명, 주임검사, 소송수행자 검사명, 접수일자, 소송물가액, 진행상황, 소송결과, 송달일자, 청구원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판결문을 첨부하였다.

공개재분류 결과

《중요사건 보고서철(부동산)》, 《중요사건 보고서철(손해배상)》은 지검에서 법무부에 보고한 <소송사무보고>이다. 위 기록물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하여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 원칙을 적용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 소송기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이름, 본적, 주소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한다.

5. 경찰청

● **대상기록물** : 수사, 정보·보안, 외사, 인사 등 6,970권

● **생산연도** : 1945~1979

● **생산기관 연혁** :

1948.11.04. ~ 1974.12.30. 내무부 치안국

1974.12.31. ~ 1991.07.30. 내무부 치안본부

1991.07.31. ~ 현재 경찰청

● **개요**

경찰청은 1945년 해방 이후 설치된 미군정청 경무국으로 시작하여 1946년 경무부를 거쳐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내무부 산하의 치안국으로 변경되었다. 내무부 치안국은 1974년 12월 치안본부로 명칭을 변경한 뒤 1991년 경찰청으로 승격되었다. 주요업무는 치안행정, 경찰인력·장비관리, 방법 및 풍속사범에 관한 지도단속, 교통사범 규제 및 교통 안전지도, 대공정보 수집 및 분석, 외사경찰 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부속기관으로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있다. 또한 전국 특별시·광역시·도에 16개 지방경찰청을 두고 있으며, 지방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재분류된 기록물은 경찰청의 고유업무인 수사, 정보·보안 기록물과 인사·징계 관련 기록물이 대부분이다. 사건종결철, 미제사건철, 도난사건수사철, 수사보고철 등 수사기록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기준을 적용하되, 개인정보와 개인 범죄사실이 대부분인 기록물과 가정보호사건, 성범죄사건, 소년보호사건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수사기록은 비공개하였다.

주로 국가보안법, 간첩, 요시찰 인물의 조사·동향파악 및 관리 등 대공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하였지만,

국가안보 및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비공개하였다. 외국과 관련된 수사, 공작 업무 등 외사 관련 기록물도 비공개하였다.

인사·징계 및 소송, 인·허가 등의 기록물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하여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하였다.

● 유형별 총괄표

유형	생산연도	권수	기록물철	공개구분
수사	1958~1979	4,187	사건종결철, 내사사건종결철, 미제사건철, 사건송치서, 도난사건수사철, 지명통보철, 수사보고철 등	부분공개 /비공개
정보·보안	1952~1979	907	정보사범검거, 국가보안법위반, 공작첩보기록철, 좌익수사철, 관찰보호업무 등	비공개
외사	1955~1978	31	외사관계서류, 외사공작종결, 중요외사사범 등	비공개
국유재산	1961~1975	10	국유재산대장, 공유재산대장, 경무협회 재산관계철 등	부분공개
시설·장비	1965~1978	7	산악초소구축관계철, 전술도로, 무기관계철, 헬기구입 등	부분공개
법령·예규	1973~1977	3	규칙·고시철, 일반법제철, 직제개정	부분공개
학적관리	1959~1977	90	학적부, 경찰교육성적대장, 교육원부 등	부분공개 /비공개
치안일지	1971~1979	81	치안일지, 치안일지대장	부분공개
기타	1949~1979	24	순직경찰관대장, 경찰사 편찬자료, 소방관계철 등	부분공개 /비공개
인사·징계	1945~1979	1,602	인사기록카드,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인사발령대장, 표창대장, 징계기록부, 연금, 기여금 등	부분공개 /비공개
소청·소송	1971~1979	15	행정소송, 소청심사결정문	부분공개
인·허가	1975~1979	13	고물상허가대장, 자동차운전학원설립인가관계철, 용역경비	부분공개
합계	1945~1979	6,970		

수 사

▶ **기록물체 제목** : 사건종결철, 내사사건종결철, 미제사건철, 송치결정서, 사건송치서, 의견서, 피의자인도서, 범죄사건부, 즉심사건부, 구속인명부, 즉결심판서, 도난사건수사철, 처분결과통보철, 진정서, 불온유인물수사, 조사종결사안서류, 지명통보철, 교통사건야기도주차량, 압수부, 수사보고철 등

▶ **생산기관** :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관악·남부·노량진·성동·성북·용산·중랑·청량리경찰서 수사과
-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동래·북부경찰서
-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강화경찰서 방범과
- 경기도지방경찰청 김포경찰서·성남중부·안성경찰서 수사과
-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남해·산청·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
-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군위·문경·영덕·영양·울릉·울진·의성경찰서 수사과
-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강진·곡성·광주동부·담양·해남·화순경찰서 수사과
-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고창·김제·부안·순창·장수·전주·전주북부·진안·정읍경찰서 수사과
-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수사과,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아산·천안경찰서 수사과
-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영동경찰서

▶ **생산연도** : 1958~1979

▶ **수량** : 4,187권

▶ **공개재분류**

- 부분공개 제6호
- 비공개 제6호 (사건종결철, 송치결정서 및 의견서, 범죄접수부, 범죄사건부, 구속인명부, 즉결심판서, 내사공작, 압수부, 지명통보철 등)

▶ **비공개대상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및 본적의 읍·면·동 이하, 나이, 직업 등 개인식별정보와 개인증빙기록
- 가정보호사건, 성범죄사건, 소년보호사건의 수사기록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5차 기록물공개심의회(2008.4.28), 제2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8.7.28)
- 제12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5.22), 제8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6.26)
- 제1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12.14),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12.18)

개 요

경찰청 주요 업무인 수사 관련 기록물로 사건발생, 조사, 종결, 송치의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 기록물 상세내용

《사건종결철》은 사건 조사 후 해당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기 위한 서류, 의견서 및 기록목록, 타 경찰서에 사건을 인계하는 사건인계서, 사건처리인에게 송치사실을 고지하는 사건처리결과통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송치서>에는 번호, 제목, 피의자 성명, 죄명, 발각원인, 접수일, 구속일, 의견, 증거품, 해당경찰서, 사법경찰의 직급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어서, 압수물 총목록과 기록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의견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직업, 본적, 주거),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 전과 및 검찰 처분관계,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범죄사실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내용이 육하원칙에 따라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수사결과 기소 의견이 담겨 있다. <기록목록>은 범죄인지보고,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의 목록으로, 목록상에 기재된 기록물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내사사건기록철》은 진정, 탄원 또는 상급기관의 처리 지시 등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내사기록으로, 내사사건처리기록, 사건보고, 내사지휘 사건송치, 내사결과보고, 민원사건조사계획서, 진술조서, 진정서, 합의서,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서, 확인서 등이 편철되어 있다. <내사사건처리기록>에는 접수연월일, 수사담당자 성명을 포함하여 피내사자의 인적사항, 출처, 내사요지, 수사요지, 압수품 처리, 내사종결사유 등의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수사보고서>에는 신고자 및 피해자 인적사항, 용의자 인적사항, 신고내용, 수사상황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내사종결철》은 진정, 탄원 또는 상급기관의 처리 지시 등으로 시작하여 사건 조사 후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내사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첨부된 <내사결과보고서>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수사결과로 나누어 작성하였는데, 피의자의 인적사항에는 발신자, 진정인의 성명·주소·직업이 기재되어 있고, 범죄사실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의견을 기술한 수사결과가 있으며 형사민원처리부, 진정서, 출석요구서, 진술조서, 사건처리결과통지, 주민등록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의 성명, 본적, 주거, 직업, 나이,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와 사건에 대한 진술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진술일, 장소, 경찰공무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내사공작》은 공작건명에 따라 공작정보기록 양식에 기재한 보고로 3급 비밀이었다가 사건종결로 일반문서로 재분류되었다. <공작정보기록> 양식은 공작대상자의 인적사항, 첩보내용, 담당관(보고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첩보내용에는 입수연월일별로 공작대상자의 행동, 동향, 특이한 점, 주변인과의 관계 등이 작성되어 있고 관련인의 이름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호적등본, 신원조사서, 주민등록표 등이 첨부되어 있다.

《미제사건철》은 범인을 알 수 없는 사건, 해결되지 않은 사건과 관련된 문건이 편철된 기록으로, 주로 도난, 절도, 교통사고 등의 사건발생보고와 수사과정을 기록한 문서들이 다. <사건별 사건처리진도확인표>에는 사건 발생보고, 피해신고서, 상황조사서,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보고, 현장약도, 경찰 조별 배치표 및 수사결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제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품, 피해상황, 피의자 인상착의, 사건발생 장소 등 주로 피해자 측의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진술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건에 따라 사원인사카드, 주민등록표, 주민등록표 초본, 범죄 경력조회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수사미제사건기록철》은 사건접수번호, 접수일, 건명, 발생일시, 장소, 피해자, 피해품, 피해액을 기재한 서류와 사건 수사사항 보고가 있다. 진술조서, 소견서 등이 첨부되어 있기도 하다. 사법경찰의 소속, 직위,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송치결정서》, 《사건송치서(철)》, 《의견서(철)》은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기 위한 사건송치서, 조사과정을 볼 수 있는 기록목록, 의견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송치서>는 작성일시, 피의자명, 죄명, 발각원인, 접수·구속·석방일, 의견, 증거품, 비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관 직위 및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의견서>는 피의자 본적, 주거, 직업, 나이, 생년월일과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 범죄사실, 작성일, 경찰관 직위 및 성명, 수신검찰청 검사장 성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안에 따라 차량번호, 소속회사, 면허번호 등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범죄사실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내용이 육하원칙에 따라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수사결과 기소 의견이 담겨 있다. <기록목록>은 범죄인지보고,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의 목록으로 목록상에 기재된 기록물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처분결과통보철》은 <처분결과통보서 송부표> 양식에 따라 작성된 내용을 치안국장에게 송부하는 기록으로 순번, 작성년월일, 작성번호, 성명, 수형사항, 죄명, 선고연월일,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진정서》는 진정서 접수에 따른 수사첩보보고, 수사보고, 진술조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사첩보보고>는 수집자 소속·계급·성명과 요지, 내용을 기재하였고, 참고기록으로 지적도, 토지대장등본 등이 있다. 또한, <형사민원사건 수사계획 및 점검 확인표>가 작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사건번호, 죄명, 고소인, 접수일자, 접수별, 사건담당자, 처리기한, 본국연장, 검찰연장, 처리일자, 요지, 인적증거로 고소인·참고인 성명, 조사일자, 수사완료 여부, 물적증거 서면 등과 일일점검 및 주간점검이 작성되어 있다.

《불온유인물수사》는 <불온유인물 발견 습득 보고>, <불온서신 발신자 수배>, <불온서신 수사지시>, <반공법위반 범죄인지보고> 등의 문건이 있으며 수사 관련 기록과 동일한 유형이다.

《조사종결사안서류》는 <보안처분사안 송치>, <보안처분사안인지서>, <보안처분사안인지승인 품신> 등의 문건으로 경찰서에서 지청에 보안처분사안을 송치한 것이다. 용의자 성명, 발각원인, 접수·해제 연월일, 의견, 보관물, 비고로 구분되어 있고, 기록목록, 의견서, 보안처분 대상자 동향 조사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보안처분대상자 동향조사서>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출생지, 주소, 학력, 재산, 주택, 경력, 가족관계, 신원보증인 및 배우, 전과관계, 출소 후 특이동향, 처분과 관련된 범죄개요, 경찰서장 의견으로 구분되어 있다. 대상자의 과거 경력 및 이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보안처분사안인지승인 품신>은 용의자 인적사항, 보안처분 해당 범죄사실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사실, 전향 여부, 인지경위, 소속 경찰서, 계급,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교통사고야기도주차량》은 <교통사고야기도주 사건수사 진도 및 확인> 양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사건발생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였는데, 발생일시 및 장소, 피해자 주소, 이름, 나이, 피의자, 수사담당 형사 성명, 신고자 및 신고일시, 현장자료 수집, 용의자, 장물수배자료 수집, 피해품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고, 수사보고 일시와 감독확인이 되어 있다. 도주차량에 대해 수배 조치, 사건발생현장 지도,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이 있다.

《압수부》에는 압수물 번호, 범죄사건 처리부, 압수연월일, 압수물건(품종, 수량), 소유자의 주거 및 성명, 피압수자의 주거 및 성명, 보관자인, 취급자인, 처분월일 및 요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지명통보철》은 지명통보의뢰, 지명통보자 해제 보고, 지명통보 전자계산기 입력요구서의뢰, 기소중지자 발생보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범죄행위로 인해 지명수배된 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첨부된 지명수배 통보 전자계산기 입력요구서에도 역시 피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출생지 등), 죄명코드, 인상복장, 범죄사실 등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찰관계수배서류》는 관명사칭, 사기피의자, 불순용의자, 선거법위반 피의자 등에 대한 지명수배와 수배해제의 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명수배자의 본적, 주소, 성명, 나이 등과 수배내용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십지지문원지송부철》은 경찰서에서 치안본부로 송부한 십지지문원지로 성명, 작성연

월일, 죄명, 발견여부, 발견원지지문번호, 회보연월일, 처분결과 확인으로 구분된 일정한 양식에 작성되었다.

《지문채취대장》은 번호, 월일, 죄명, 피채취자(주소, 성명), 처분결과(연월일, 결과, 보고통보월일), 좌수·우수 각각 5자리 번호로 작성되었다.

《즉심사건부》는 즉심사건부 대장으로 갑지와 을지로 구성된다. 갑지에는 결재란, 사건번호, 사건접수일자, 피의자 개인정보(본적, 주소, 직업, 성명, 성별, 연령), 적용법조, 범죄개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을지는 압수처분(압수일자, 압수번호, 압수물건, 처리일자, 처리내용), 처분내용(훈방 또는 이첩, 즉심청구일자 및 인수자, 처단형), 벌과금징수 및 인도(징수금액, 징수일자, 경리계 인계일자, 검찰인도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결심판서》는 개인별 즉결청구서와 즉결심판서, 행정법규 위반자 적발 보고서, 각서로 구성되어 있다. 즉결청구서 및 행정법규 위반자 적발 보고서에는 출석일시 및 장소, 피고인(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령, 성별), 위반일시 및 장소, 범죄내용, 적용법조, 검거경위 및 검거자 소속, 계급,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범죄접수부》에는 접수번호, 접수일지, 죄명, 범죄일시, 범죄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피의자, 수사담당자, 사건처리부 번호, 압수부 번호, 비고가 대장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범죄사건 처리부》에는 번호, 범죄접수부 번호, 수사 담당자, 죄명, 적용법조, 송치, 송치의견, 발각원인, 증거, 압수부 번호, 압수물,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번호, 피의자(본적, 주소, 출생지, 직업, 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별명, 생년월일), 구속(긴급, 영장 발부, 집행일시, 구속장소), 석방(일시, 이유), 검사처분(월일, 요지), 재판결과(월일, 요지), 범죄통계 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피의자표 등이 기재되어 있다.

《구속인명부(검찰)》는 구속인명부 양식에 따라 작성된 대장이다. 기술항목은 구속(취급자, 구속별 일시), 석방(취급자, 일시, 사유), 죄명 및 형명·형기, 인상(키, 수염, 입, 얼굴, 몸짓, 얼굴색, 머리털, 문신, 눈썹, 용모 등), 착의, 구속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거, 본적, 직업), 전과죄명, 공범관계자 성명, 가족관계, 영치금, 영치물품, 영치금품의 처리상황, 급식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속인명부(수형인)》는 수형인명표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 있다. 인적사항(본적, 주거, 직업, 성별, 주민등록번호, 별명, 생년월일), 죄과(죄명, 판결 선고일 및 법원, 형명·형기, 확정연월일, 처형회수), 수형인명표 수령(본적지, 주거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적지분, 주거지분을 표시하였다.

❁ 공개재분류 결과

경찰청의 주요 업무의 하나인 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기록물로 사건의 발생유형, 처리 유형에 따라 기록물을 편철하였다. 수사기록은 사건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문건과 <진술조서> 등 수사과정의 문건, 수사를 종결하고 해당 검찰에 송치하기 위한 <사건송치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사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것으로 사건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가 기본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의자·진정(탄원)인·사건 관련인 등의 성명, 주소, 본적, 직업, 나이, 이력 및 경력 등이 있으며 수사담당 경찰관의 성명과 직위가 나타나 있다.

기본적으로 사건 및 범죄수사에 관련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범죄의 예방, 수사 등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혹은 수사방법, 수사과정 상의 기밀의 보호는 물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사건 피해자, 피의자, 관련된 제3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여부가 있어 대부분 비공개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록물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수사 관련 기록은 개인식별정보 및 증빙기록을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다만, 《사건종결철》, 《송치결정서·의견서》, 《즉결심판서》, 《지명통보철》, 《수사보고철》, 《범죄접수부》, 《범죄사건부》, 《구속인명부》, 《압수부》 등은 개인정보와 개인 범죄사실이 대부분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로 보아 비공개한다.

《미제사건기록철》, 《내사사건기록》, 《내사사건종결철》, 《교통사고야기도주차량》 등은 피해자·피의자·관련인 등의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증빙기록을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다만, 가정보호사건, 성범죄사건, 소년보호사건 등의 수사기록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비공개한다.

▶ **기록물철 제목** : 삼척간첩사건기록, 남민전사건, KAL납북사건, 국가보안법위반, 간첩귀순자업무, 대공인적위해분자, 대공통계철, 대공활동, 납북귀환어부, 월남가족 및 친지조사서, 공작첩보기록철, 좌익수사철, 정보사범, 관찰보호자심사, 요시찰인 수배철, 요시찰인, 보안심사위원회, 보안처분업무, 관찰보호업무, 사회안전업무, 안전대책사범, 동행보호인명부, 전사자 증군 행불자, 군입대 실종자 및 전사자 등

▶ 생산기관

- 경찰청 총무과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용산·중랑·청량리경찰서 보안과·정보과
-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동래경찰서 경무과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서부경찰서 보안과
- 인천직할시지방경찰청 부평경찰서 보안과, 동부경찰서 정보과
- 경기도지방경찰청 정보과
- 강원도지방경찰청 경무과·보안과·정보과, 춘천경찰서 보안과, 평창경찰서 정보과
-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정보과, 담양경찰서 정보과
-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대전중부·청양경찰서 보안과·정보과
-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괴산경찰서 정보과
-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영양경찰서·청송경찰서·안동경찰서 보안과

▶ **생산연도** : 1952~1979

▶ **수량** : 907권

▶ **공개재분류** : 비공개 제2호, 제3호, 제6호

▶ **비공개대상정보** : 개인식별정보, 개인증빙기록 및 개인의 정보수집·동향파악·관리에 관한 내용, 대북 관련 업무와 관련한 보안사항

▶ 심의기구 및 일시

- 5차 기록물공개심의회(2008.4.28), 제2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8.7.28)
- 제12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5.22), 제8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6.26)
- 제1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12.14),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12.18)

개요

경찰청 주요 업무인 정보·보안 관련 기록물로 국가보안법, 간첩, 요시찰 인물의 조사, 동향파악 및 관리 등 주로 대공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 기록물 상세내용

《삼척간첩사건기록》, 《삼척간첩단 검거상황》은 1979년 삼척 고정간첩단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으로, 원덕사건 관련 혐의자 수사, 사건 관련자 조사보고, 간첩장비 압수 상황보고, 원덕사건 관련자 수사자료, 원덕고정간첩사건 관련자 동향보고, 삼척간첩단 검거보고, 공소장, 전과조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민전》, 《남민전 사건》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관련자 수사와 관련된 기록으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 수사반 개편 현황, 남민전사건 관련자 수배에 따른 지시, 남민전 관련자 연고선 하달, 남민전사건 관련자 수사 철저 지시, 남민전 관련자 신원조사보고, 남민전사건의견서 송부, 대공첩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사건 관련자 검거 지시 등이 편철되어 있다. 본명, 가명, 연령, 직업, 학력 및 경력, 본적, 주소, 비고 등이 기재된 수배자 명단, 호적등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이 첨부되어 있다.

《KAL납북사건》, 《항공기납북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KAL.Y.S11기 납북사고(승객 47명 포함 총 51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발생 보고 접수부터 일자별 수사활동 상황, 피납자 및 가족의 사상·동향 조사, 관련자 조사 등의 문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조사보고>, <신원조사의뢰>, <긴급수사지시> 등이 전화통신문의 형식으로 생산되었고, <불순용의자 수배>, <긴급사실조사보고>, <수사본부설치 체계도>, <해명서(언론을 통해 발표된 피의자 가족의 해명서)>, <현장약도>, <관련인 진술서> 등도 있다. 또한, <KAL기탑승자 송환에 따른 가족 동향내사 지시>에 따라 보고하였고, 미송환자 가족에 대해서 별도로 동향내사 지시하여 보고하였다. <KAL(ys-Ⅱ)납북귀환자조서>, <진술조서>, <납북귀환자 공작 지시>, <공작평가보고>, 피납자에 대한 <신원조사>와 <납북송환자 동향보고>에서 인적사항과 동향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귀환자와 미귀환자의 가족 동향에 대해 월보 형식으로 작성되었는데, 인명별 주소·나이·동향과 감시자의 직급과 실명이 기재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위반》에는 훈방(정보사범) 처리 결과보고, 반공법 위반자 사건 송치, 보상금 신청서 등이 편철되어 있다. <정보사범 처리 결과보고>에는 훈방자의 인적사항(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처리 내용, 조치, 각서, 반성문, 신원보증서, 진술조서, 주민등록표 등이 첨부되어 있다. <반공법 위반자 사건 송치서>는 피의자, 죄명, 발각원인, 접수일자, 구속일자, 석방일자, 의견, 증거품,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진술조서, 신원조회, 처분결과 통보서, 신원보증서가 첨부되어 있다. <보상금 신청서>는 반공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보상금을 청구한 기록으로, 신청자의 본적 및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공적조서, 주민등록표가 첨부되어 있다.

《간첩검거처리》는 간첩 공작자료 수집, 첩보 입수, 공작 계획·진행·종결 관련 기록으로, 대부분 비밀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것이다. <공작첩보기록>에는 공작건명, 가제목, 담당관, 공작대상자 인적사항(본적, 주소, 직업, 성명, 가명, 생년월일), 입수연월일 및 첩보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간첩귀순자업무》에는 행불 월남 귀순자 수배 해제, 행불 귀순자 수사 자료, 피살자 자녀 통보, 대공유공자 자녀실태 파악, 검거간첩 진출 통보 등이 편철되어 있다. 특히, <피살자 자녀 통보>에는 해당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특기, 혈액형, 종교, 원적, 본적, 주소, 생년월일, 친권자 주소), 학력관계, 병역관계, 가정사항, 피살경위, 근무기관, 재산관계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대공유공자 자녀 실태 파악>에도 해당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특기, 혈액형, 종교, 생년월일, 원적, 본적, 주소), 친권자 인적사항(성명, 주소, 직업, 연령, 최종출신 학교 등), 병역관계, 가정사항, 부모의 대공 경력 및 공적 내용, 재산실태 등이 기재되어 있다.

《간첩귀순자》에는 귀순자(자수간첩 포함) 실태조사, 납북귀환자 요시찰인 편입심사 의결결과, 검거 간첩 위해도 심사, 간첩카드 작성 및 통계 작성, 대공인적위해분자 탐지보고, 납북 귀환자 주변상황 보고 등이 편철되어 있다. <귀순자(자수간첩 포함) 실태조사>에는 개인별 실태조사서가 첨부되어 있다. 실태조사서에는 구분, 성명, 가명, 생년월일, 원적, 본적, 주소, 재산관계, 가족사항, 기타 참고사항(귀순 자수 일자, 경로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납북귀환자 요시찰인 편입심사 의결결과>에는 요시찰편입심사의결서가 첨부되어 있다. <심사의결서>에는 개인별로 편입근거, 요청 내용, 본적, 생년월일, 주소, 직업, 성명, 학력, 경력, 편입사유, 정당사회단체 관계, 전과 관계, 요청사유, 요청자의 소속·계급·성명, 의결 내용, 심사위원장 및 위원의 계급·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간첩카드 작성 및 통계 작성>에는 간첩 현황, 간첩 명단(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본적, 주소, 검거 자수 연월일, 범죄사실 및 동행, 비고), 간첩귀순자 카드(개인인적사항, 가족사항, 시찰내용 등) 등이 첨부되어 있다. 대공인적위해분자 탐지보고, 납북 귀환자 주변상황 보고에는 주거표, 호적등본, 신원조회, 주민등록표가 첨부되어 있다.

《대공상황》, 《대공활동》은 <대간첩 정보활동 강화>, <출현간첩 용의자 사진배부>, <무장괴한 출현수배> 등 대공업무와 관련한 기록물이다. 사건발생상황에 따른 작전계획, 상황에 대한 분석 등의 문건으로 정보활동 강화를 위한 조치상황, 검문검색을 위한 배치지역별 배치자 성명과 직위, 신고자 인적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공인적전산화》 등은 대공인적위해자(對共人的危害者)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으로, 대공인적위해분자 전산화작업, 대공인적위해분자 소재 탐지 지시, 대공인

적위해분자 전산화 자료조사 보고, 대공인적위해 요소 명단 작성보고 등이 편철되어 있다. 《대공인적위해행불자소재탐지》에는 대공인적위해분자 근태분석, 소재불명자 실태조사, 검거간첩 종합명단, 대공인적위해분자(간첩) 소재탐지 조사보고, 출소 간첩 실태조사서, 대공인적위해요소행불자 소재탐지 유공자 표창 등이 편철되어 있다. <출소간첩 실태조사서>에는 고유번호, 검거연월일, 검거형태, 망신고, 석방연월일, 인적사항(성명, 가명, 원적,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학력, 경력, 직장 및 직위, 재산관계, 가족관계, 주소이동, 시찰 내용, 특이사항, 작성일자, 작성자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호적등본, 주민등록표 등이 첨부되어 있다. <대공인적위해요소행불자 소재탐지 유공자 표창>에는 공적조서가 첨부되어 있다. 공적조서에는 본적, 주소, 소속, 계급, 성명, 생년월일, 직위 및 직책, 근무기관, 중요 경력, 과거 포상기록, 조사자, 공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납북귀환어부》에는 대공인적위해분자(납북귀환어부)의 시찰상황보고, 소재탐지보고 등이 편철되어 있다. 납북귀환어부의 인적사항(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탐지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세대별 주민등록표, 호적등본 등이 첨부되어 있다.

《월남가족 및 친지조사서》는 월남가족 및 친지조사서를 일정한 양식에 기재하여 편철하였다. 세대주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월남연월일, 월남전 주소 및 본적, 주소, 학력, 경력, 정당 및 사회단체관계, 비고로 재산상황 등을 기재하였다. 또한 가족 및 친지를 재북자와 재남자로 구분하여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성별, 연령, 학력 및 경력, 주소, 비고 항목으로 작성하였다.

《공작첩보기록철》은 공작건명에 따라 공작첩보기록 양식에 기재한 보고로 3급 비밀이었다가 사건종결로 일반문서로 재분류되었다. <공작첩보기록> 양식은 공작대상자의 인적사항, 첩보내용, 담당관(보고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첩보내용에는 입수연월일별로 공작대상자의 행동, 동향, 특이한 점, 주변인과의 관계 등이 작성되어 있고 관련인의 이름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공작첩보종결》은 공작첩보 종결보고로, 용의자의 인적사항, 용의자 내사사항(불순언동 및 출타사항, 방문자 수사, 북괴방송 청취여부, 용의자 학력 경력 등 성장과정 수사, 재산상황 및 생활정도, 가족사항, 건강상태, 가정환경), 조치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호적등본, 신원조사서, 주민등록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정보사범 수형자》는 정보사범 수형자 실태조사와 관련된 기록으로서, 정보사범 수형자 실태카드가 첨부되어 있다. <정보사범 수형자 실태카드>에는 출생지, 본적, 전주소, 현주소, 성명, 직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학력, 경력, 교우관계, 배후관계, 계 또는 자생

조직, 재산관계, 가족상황, 범죄개요, 공판결과, 입출소 연월일, 시찰인 편입상황, 시찰 상황, 평소 언행 및 정책 시책 협조도, 위험도 측정, 참고사항, 작성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정보사범 검거처리》에는 정보사범 발생 및 검거보고 통보, 정보사범 처리결과 보고, 월 북기도자 발생상황 파악보고 등이 편철되어 있다. 피의자 인적사항, 검거일시 및 장소, 검거기관, 검거경위, 범죄사실, 참고사항, 조치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다.

《요시찰인》 등은 요시찰인 시찰업무와 관련된 기록으로 요시찰인 신규편입, 동태파악, 문제요시찰인 조사보고 등이 편철되어 있다. 요시찰인의 성명, 본적, 주소, 생년월일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요시찰인 전출입》 등은 요시찰인(보안처분 대상자, 자수간첩)의 전출입 및 소재 탐지 등을 보고한 기록으로서,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탐지 내용, 동향 보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요시찰인 조정》은 요시찰인의 전급, 삭제, 시찰중지 등을 조정한 기록으로서, 요시찰인 조정 심사의결서, 통계, 심사의결자료, 개인별 상신사유서 등이 편철되어 있다. <요시찰인 조정 심사의결서>에는 개인별로 류별, 전급 경위, 요청 내용, 본적, 생년월일, 주소, 직업, 성명, 학력, 경력, 편입일자, 편입사유, 시찰내용, 정당사회단체 관계, 전과 관계, 전급·삭제·시찰중지 사유, 요청자의 소속·계급·성명, 의결 내용, 심사위원장 및 위원의 계급·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요시찰인월보》는 월별 요시찰인 동태를 보고한 기록으로, 요시찰인 지역별 시찰현황, 증감현황, 직업별 현황, 중지자 현황, 삭제자 현황, 범죄유형별 현황, 전출입 상황, 좌익수 분석 현황, 동태자·좌익수·시찰중지자 등의 명단 등이 편철되어 있다. 요시찰인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직업, 보안처분, 류별·종별, 내용 또는 이동지 주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경호요시찰동향보고(월보)》는 월별 경호요시찰인의 동향을 보고한 기록으로서, 경호요시찰인 동향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다. <경호요시찰인 동향보고서>에는 요시찰인의 고유번호, 성명, 본적, 생년월일, 주소, 월수입, 가족사항, 배회처, 접촉인물, 동향, 작성월일, 시찰담당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요시찰인 통계철》은 출소좌익수현황, 요시찰인통계현황, 관찰보호자현황보고, 남북귀환어부현황보고, 귀순자카드정비현황, 긴급신원실시현황보고, 대공요원현황보고, 이산가족찾기명부 보안관리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좌익수 동태(성명, 생년월일, 시찰관계종별, 보안처분신고번호, 동향), 요시찰인명단(성명, 본적, 주소, 직업, 내용) 등이 첨부되어 있다.

《보안심사위원회 퇴직절》 등은 신원특이자에 대한 보안심사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한 기록으로서,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 심의의결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심의요구서>에는 심의안건, 심의요구 사유, 요구자 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며, 신원조사회보서, 가정환경조사서가 첨부되어 있다. <보안심사위원회 의결서>에는 심의대상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의결주문, 이유, 심의의결 일자,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의 계급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보안처분업무》는 주로 보호관찰 처분 의견서와 보안처분사안 결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의견서>에는 보안처분 대상자의 인적사항(본적, 원적, 주거,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의견(형사처분 또는 기소유에 처분 유무, 범죄사실,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다. <결정서>는 일련번호, 청구검사, 피청구자의 인적사항(본적, 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문, 이유, 적용법조, 날짜기재 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찰청의 <보안처분결정 집행지휘>가 첨부되어 있다. <보안처분결정 집행지휘>는 보호감호처분기간 갱신, 보호감호 처분 등의 주문이 기재되어 있다.

《관찰보호업무》에는 보안처분 대상자 행방불명 수배 및 변사확인 의뢰, 관찰보호자 동향 보고, 부역자 신규발견 보고, 대공정보, 관찰보호자 카드 등이 편철되어 있다. 관찰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본적, 주소, 학력, 경력, 편입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호적등본, 주민등록표, 신원조사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보안처분대상명부》에는 보안처분대상자의 명단 및 동향보고 등이 편철되어 있다. 보안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본적, 원적, 주소, 생년월일, 성명), 범죄사실, 출소 후 행적, 동향조사서 등이 기재되어 있다.

《면제결정사안송부》에는 보안처분 면제 결정 신청서가 편철되어 있다. <보안처분 면제 결정 신청서>는 신청인의 인적사항(본적, 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령), 접수일자, 보관물, 비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견서, 면제청구자 환경조사서, 보안처분 대상자 동향 조사서가 첨부되어 있다. <면제청구자 환경조사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본적, 주거, 직업, 성격, 소행과 본인에 대한 세평, 가정상황, 자산과 수입의 상황, 교육정도와 본인의 경력, 교우관계, 전향여부,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보안처분 대상자 동향 조사서>에는 개인의 인적사항과 가족관계, 신원보증인 및 배우, 전과관계, 출소 후 특이사항, 처분과 관련된 범죄개요, 경찰서장의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회안전법》, 《사회안전업무》, 《사회안전》에는 피보안처분자 정기동향 보고, 보안처분 대상자 명단, 보안처분 면제여건 미비자 조사보고 및 사회안전법 시행에 따른 사항 보고, 시찰대상자 동향 파악 철저 지시 등이 편철되어 있다. <피보안처분자 정기동향 보고>

에는 고유번호, 성명, 생년월일, 처분종류, 원처분 일자, 1차 갱신 일자, 2차 갱신 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보안처분대상자 명단>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관할 경찰서가 기재되어 있으며, <보안처분 면제여건 미비자 조사보고>에는 보안처분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사회안전법 운용(보안처분)》에는 보안처분대상자 출두지시, 보안처분 미처리자 자료수집 현황, 보안처분 비대상자 자료 송부, 관찰보호자 관찰 회보, 사회안전법에 관한 업무현황 보고 등이 편철되어 있다. <보안처분대상자 출두지시>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보안처분 미처리자 자료수집 현황>에는 경찰고유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본적, 주소, 죄명, 판결선고내용, 출소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다. <보호자 관찰 회보>에는 보호번호, 죄명, 인적사항(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촉탁사항, 비고, 회답서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회안전법에 관한 업무현황 보고>에는 보안처분대상자 처리현황, 청구 기각된 자 명단(법무부 고유번호, 성명, 결정일자, 결정구분, 처리 않고 있는 이유)이 기재되어 있다.

《안전대책사범》에는 안전대책 사범동향 및 상황보고, 기소 및 공판 상황보고, 안전대책사범 발생 및 검거보고, 불순운동 공무원에 대한 처리 결과 등이 편철되어 있다. 안전대책사범의 본적, 주소, 직업,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안전대책사범카드, 신원조사서, 안전대책사범 동향 및 교양사항 보고 등이 첨부되어 있다. <안전대책사범카드>에는 사진, 본적, 주소, 성명, 성별, 직업, 생년월일, 검거상황, 범죄개요, 신원특이 및 배후, 가택압수결과, 신병조치, 구형, 선고, 학력, 경력, 가족관계, 시찰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안전대책사범 동향 및 교양사항 보고>에는 고유번호, 원적, 본적, 주소, 성명, 직업, 학력, 검거일시, 검거기관, 범행시 상태, 범행개요, 전과사항, 범행동기, 가족사항 및 생활실태와 동향, 교양사항, 반응 및 동향, 경호요시편입소견, 보고자, 작성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동행보호인명부》에는 인적사항, 동행보호(일시, 장소, 해제일시, 해제사유, 승인일시와 지휘검사), 인상(키, 몸집, 머리털, 눈썹, 수염, 이마, 귀, 눈, 입, 이, 코, 용모, 얼굴, 얼굴색, 몸신, 특징), 착의, 전과, 가족관계, 보안처분 내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수배철》에는 관찰보호자(보안처분대상자)의 행불 수배보고 및 수배해제가 편철되어 있다. <행불 수배보고>에는 행불 일시 및 장소, 인적사항(본적, 원적, 전주소, 주소, 직업, 성명, 가명, 생년월일 등), 보안처분 대상 관련된 범죄내용, 행불 경위, 인상착의, 배회처(주소, 관계, 성명, 나이), 참고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수배해제>에는 수배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전사자 종군 행불자》는 <6.25전사자 조사지시>건에 6.25 전사자 명부가 첨부되어 있으며, 대공업무 수행에 참고할 목적으로 조사함을 언급하고 있다.

《군입대 실종자 및 전사자》는 <군입대자 중 실종자 및 전사 처리자 연고자 통보>, <군입대자 중 전사자 처리자 연고자 불능 회보>, <군입대자 중 전사자 처리자 연고자 조사 회보>건이 편철되어 있으며, 명단이 첨부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경찰청 주요 업무인 정보·보안 관련 기록물로 주로 국가보안법, 간첩, 요시찰 인물의 조사, 동향파악 및 관리 등 대공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이들 기록물에는 국가위해 사건 조사 및 동향파악을 위한 개인정보가 기본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해당인의 인적정보(성명, 주소, 본적, 직업, 나이, 이력 및 경력)와 가족 및 관련자의 인적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담당 경찰관의 성명, 직위가 나타나 있다. 개인의 사상과 동향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도 기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의해 비공개해 왔으나,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하여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한 공개원칙 적용 대상이다. 기록물 내용 중 개인의 정보수집, 동향파악,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의해 비공개하고, 정책이나 일반계획, 지시공문 및 통계기록 등은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간첩검거》, 《국가보안법위반》, 《대공인적위해분자》, 《남북귀환어부》, 《공작사건》 관련 기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에 의해 비공개한다.

《요시찰인 업무》, 《관찰보호업무》, 《보안처분대상자 동향 및 진출입 동향》 등과 관련된 기록은 개인정보가 대부분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로 보아 비공개한다.

《요시관보철》, 《사회안전업무》 등과 관련된 기록은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일반 행정문서는 공개(부분공개)한다.

▶ **기록물철 제목** : 중요외사사범, 외사공작종결, 강제송환자심사, 외사신원조사, 불순용의교포동정, 공산권해외교포, 재일교포관계철 등

▶ **생산기관**

-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외사과,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동래경찰서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서부경찰서 보안과
- 인천직할시지방경찰청 부평경찰서 정보과·수사과
- 경기도지방경찰청 정보과
-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정보과
-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서천경찰서 정보과

▶ **생산연도** : 1955~1978

▶ **수량** : 31권

▶ **공개재분류** : 비공개 제2호, 제4호, 제6호

▶ **비공개대상정보** : 이름, 주소, 본적, 나이, 직업 등 개인식별정보, 대공정보망·공작첩보작전·사상에 관한 정보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5차 기록물공개심의회(2008.4.28), 제2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8.7.28)
- 제1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12.14),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12.18)

개 요

경찰청 주요 업무인 외사 관련 기록물로 주로 밀항, 강제송환, 교포 등 외국과 관련된 수사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중요외사사범》에는 중요외사사범 수사보고, 월남난민의 구조보고, 입국보고, 심사결과 보고, 월남난민 동향보고 등이 편철되어 있다. <월남난민의 구조보고>는 구조일시 및 장소, 구조자 인적사항, 구조경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입국보고>는 입항일시 및 장소, 구조선박, 구조 위치, 구조 경위, 구조 인원수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선장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다. <심사결과 보고>는 심사 일시 및 장소, 심사관, 심사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월남난민의 성명, 생년월일, 본적, 주거와 함께 탈출일시, 경위, 동기, 현 공산 월맹의 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월남난민 동향보고>는 월남난민의 건의 사항, 주요 첩보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외사공작종결》에는 외사용의첩보 수사보고, 종결보고 및 부정외래품 단속보고 등이 편철되어 있다. <수사보고> 및 <종결보고>에는 용의자의 인적사항(국적, 주소, 직업, 성명, 생년월일), 연고자 인적사항, 망원인적사항, 수사사항, 성과 및 전망, 참고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외국인등록표, 숙박자명부, 호적등본, 신원조사서, 주민등록표 등이 첨부되어 있다. <부정외래품 단속보고>에는 인적사항(본적, 주소, 직업, 성명, 생년월일)과 단속내용, 조치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건인수증이 첨부되어 있다.

《강제송환자심사》는 강제송환자의 인수, 수사 등과 관련된 문서로 <월남강송자 인수지시>, <강제송환자 인수보고>, <수사보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의자의 인적사항, 범죄내용, 자술서가 있으며 전언통신문(송화자, 수화자, 직위, 성명)의 형식으로 동태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강송자 및 무단이석자 신원조사철》에는 강제송환자 심사조서가 편철되어 있다. <심사조서>에는 성명, 가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본적, 출생지, 도일전 주소, 행선지, 학력, 경력, 가정상황, 밀항사항(연월일, 출발지, 도착지, 선박명, 목적, 밀항경위), 재일상황, 피검연월일, 수용기간, 송환원인, 수용 중 활동상황, 신병인수자, 처리, 조사관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외사신원조사》는 재외교포 신원조사 의뢰 공문과 교포입국자신원조사서 등이 편철되어 있다. <교포입국자 신원조사서>에는 성명, 직업, 본적, 현주소, 생년월일, 성별, 여행선, 호주와의 관계, 조사사항(도일연월일, 도일목적, 밀항도일여부, 전과 및 범죄관계, 여행목적, 국내가족 및 친척관계, 국내가족에 대한 사상관계, 기타참고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밀항강송자》는 밀항강제송환자 처리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으로, 강제송환자 명부, 신원조사, 강제송환자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등이 편철되어 있다. <강제송환자 명부>에는 강제송환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본적, 연고지, 위반 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강제송환자 심사조서>에는 성명, 가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본적, 출생지, 도일전 주소, 행선지, 학력, 경력, 가정상황, 밀항사항(연월일, 출발지, 도착지, 선박명, 목적, 밀항경위), 재일상황, 피검연월일, 수용기간, 송환원인, 수용중 활동상황, 신병인수자, 처리, 조사관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밀항강송관계철》에는 밀항사범(강송자)감시카드가 편철되어 있다. <밀항사범 감시카드>에는 성명, 생년월일, 본적, 출생지, 전주소, 주소, 현주소, 병역관계, 학력, 경력, 가족관계, 밀항전과관계, 재산 및 생활정도, 기타 선원 첩보, 시찰 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불순용의교포동정》에는 <불순외향선원 동향파악 보고>, <재일본 북괴왕래 무역관계자 명단 시달>, <동향감시 결과보고> 등의 문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연고자, 동향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전향교포감시동향》은 재일교포유학생의 명단 및 소재지, 동향 등을 보고한 기록으로서, 재일교포유학생의 대학, 학과, 학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출신고교, 본적, 주소, 일본국 주소, 주거지, 보호자(관계, 성명, 연령, 직업), 동향 등이 기재되어 있다.

《공산권해외교포》는 중공거주교포 서신왕래자에 대한 현황을 대장형식으로 기재한 것으로 중국거주교포, 국내연고자, 동향 및 서신내용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공거주교포>에는 성명, 주소, 가족사항, 생활상태, <국내연고자>에는 성명, 관계, 주소, <동향 및 서신내용>에는 서신왕래 일자 및 간략한 동향·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재일교포관계철》에는 재일교포 입국자의 동향보고서가 편철되어 있다. <동향보고서>에는 재일교포 입국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본적, 주소, 도착일시, 출발일시, 접촉인물 인적사항 및 접촉자의 언동내용, 방문자의 언동 및 접촉자와의 대담 내용, 금품수수 상황, 성묘상황, 모국방문에 대한 반응, 특이동향, 감시망원 성명, 참고사항, 작성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경찰청 주요 업무인 외사 관련 기록물로 주로 밀항, 강제송환, 교포 등 외국과 관련한 대공 수사, 동향 파악, 공작 업무 등의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다.

이들 기록물에는 사건 조사 및 동향파악을 위한 개인정보가 기본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해당인의 인적정보(성명, 주소, 본적, 직업, 나이, 이력 및 경력)와 가족 및 관련자의 인적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담당 경찰관의 성명, 직위가 나타나 있다. 개인의 사상과 동향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도 기재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성명, 주소, 직업, 나이, 이력 및 경력)가 기재되어 있으며 사진도 함께 편철되어 있다.

위의 기록물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하여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한 공개원칙 적용 대상이나, 기록물 전체가 개인정보 및 외사공작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로 보아 비공개한다.

국유재산

- ▶ **기록물철 제목** : 충북경찰국 국유재산대장, 음성서 국유재산대장, 공유재산대장, 경무협회 재산관계철, 사유재산대장
- ▶ **생산기관** :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경무과,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울산중부경찰서 경무과,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영천경찰서 경무과
- ▶ **생산연도** : 1961~1975
- ▶ **수량** : 10권
- ▶ **공개재분류** : 부분공개 제6호
- ▶ **비공개대상정보** : 이름, 주소의 읍·면·동 이하 등 개인식별정보
-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12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5.22), 제8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6.26)

개 요

경찰서의 국유·공유·사유재산대장 등 재산 관련 기록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충북경찰국 국유재산대장》은 국유재산 소재, 이동연월일, 구분, 종목, 증액, 감액, 현재액 등을 기재한 대장이다.

《공유재산대장》은 충북지역 각 지역의 공유재산 대장과 이를 총괄한 표가 첨부되어 있다. 구성항목은 재산의 주소, 용도, 연혁, 지번, 지목, 지적, 가격, 현지목 등이다.

《경무협회재산대장》은 토지종류, 용도, 연혁, 지번, 지목, 지적, 가격 등이 기재된 재산 대장이다.

《사유재산대장》은 충북지역 각 지역 경찰서별 사유재산 대장과 이를 총괄한 표가 첨부되어 있다. 재산의 주소, 용도, 연혁, 지번, 지목, 지적, 가격, 현지목 등이 기재된 장부이다.

공개재분류 결과

이상의 기록물은 경찰서의 국유, 공유, 사유 재산대장으로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하여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한 '공개원칙'을 적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시설·장비

- ▶ **기록물철 제목** : 산악초소구축관계철, 74해상검문소설치, 전술도로, 무기원부, 무기관계철, 헬기구입
- ▶ **생산기관** : 경찰청 경비국 항공과, 강원도지방경찰청 경비과,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비과,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괴산경찰서 경비과,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강화경찰서 경비과
- ▶ **생산연도** : 1965~1979
- ▶ **수량** : 7권
- ▶ **공개재분류** : 부분공개 제3호, 제6호
- ▶ **비공개대상정보** : 신고자·가옥주·대여자 등 개인의 이름, 사진, 주소의 읍·면·동 이하, 무기고유번호
-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12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5.22), 제8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6.26)
 - 제1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12.14),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12.18)

개요

경찰 치안업무와 관련한 시설, 장비 기록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산악초소구축관계철》은 초소 구축에 관한 기록물로 <경비초소 구축에 대한 질의>와 초소위치도가 첨부되어 있다. <휴전선 산악경비초소 구축에 대한 의견 제출 지시>에는 경비초소 구축 위치 선정표로 위치, 좌표, 지서와의 거리, 소요배치 인원, 위치 선정구분(전위치, 신위치, 증감구분)과 배치장소 지도가 첨부되어 있다. <경비초소 구축설계 의뢰>는 휴전선 경비초소 소요공사비 내역을 첨부하여 품신한 기록물이다. <휴전선 산악경비초소 구축에 대한 지시>에는 초소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남한지역의 루트봉쇄로가 해안선을 따라 나타나 있다. <초소경찰관 가스 중독사고 보고>는 사고보고와 이후 처리에 대해 기재되어 있고, <대공 행동대 감독순시 계획 보고>에는 감독순시 계획과 체크리스트가 첨부되어 있다. <해안초소 자료 수집지시>에는 해안초소와 경비병들, 장비, 근무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이 있다. <대공활동현황 확인감사>는 감사기간, 일정과 체크리스트가 첨부되어 있다.

《74해상검문소설치》는 1971년 10월 1일 무장공비 섬멸 작전의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한 것으로 <작전교훈 하달>에는 경찰서장 및 일선서 경비과장 연석 회의자료가 첨부되어 있

다. 여기에는 신고접수, 신고요지, 병력출동 사항, 전국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문제점과 대책을 분석하였다. 신고자 인적사항이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다. <대간침유공자 표창 상신>은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가 있으며 현장 사진도 첨부되어 있다. <괴한출현 현장상황 보고>는 일시, 출현장소, 출현인원, 가옥주, 침입세대주, 연금자수 등이 보고되어 있다. 또한, 치안국 상황실의 작전 상황을 보고한 전언통신문이 있다.

《전술도로》는 해안작전도로축조공사 과정을 볼 수 있는 기록물로 공사 건의부터 공사에 산서, 횡·종단도, 공사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무기원부》는 총종, 무기번호, 수량, 고유번호, 대여자 직위, 성명, 소속, 무기실태 등 기재되어 있다.

《무기관계철》은 경찰서의 무기탄약현황, 정원현황, 장비명 등 현황이 기재되어 있고, 점검내용표로 착안점, 세부 점검내용, 지적사항으로 정리되어 있다.

《헬기구입》은 해안오염 감시 및 단속, 해양오염 방제, 해난구조용 헬기 구입과 관련된 기록으로서 헬기구입기종 선정보고, 구입 대상 헬기의 견적서 기술검토, 주요 사양 등이 편철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위 기록물은 경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초소 등 시설과 무기류 현황을 알 수 있는 기록물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공공시설 또는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보안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장 등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정보'와 제3호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아 비공개 해왔다.

그러나, 위 기록물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소, 작전도로 등은 대북 관련 활동과 관련되기는 하였으나 생산종료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시설 현황 등이 노후·폐쇄되거나 노출되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정보는 아니며, 경찰서의 무기현황, 헬기구입도 생산 종료된 지 30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정원, 무기수량 등은 공개 가능한 정보로 판단된다. 다만, 무기고유번호, 신고자·가옥주·대여자 등의 이름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 ▶ **기록물철 제목** : 전남도 규칙·고시철, 일반법제철, 직제개정
- ▶ **생산기관** : 경찰청 경무기획국 혁신기획과,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경무과,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울산중부경찰서 경무과
- ▶ **생산연도** : 1973~1979
- ▶ **수량** : 3권
- ▶ **공개재분류** : 공개 / 부분공개 제6호
- ▶ **비공개대상정보** : 개인(진정인 등)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의 읍·면·동 이하
-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12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5.22), 제8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6.26)
 - 제1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12.14),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12.18)

개요

경찰업무 및 직제와 관련된 법령, 규칙에 관한 기록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전남도 규칙·고시철》은 전남도 조직규칙 개정에 관한 기록물로 <경찰관서 신설에 대한 지시(보고)>에는 관내약도, 상황조서, 설치사유 및 관할구역표가 있으며, <진정서이첩>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진정서가 첨부되어 있고, 진정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일반법제철》의 <시군전용 도지사 직인 및 계인 신조 통보>건은 직인 및 계인의 신조사 용을 통보하고 업무에 참고하도록 한 것으로 시·군의 인영표 인쇄본이 첨부되어 있다. <비교행정 연구계획 하달>에는 연구계획이 첨부되어 있다.

《직제개정》은 경찰대학, 해양경찰대, 경찰서, 경찰과학연구원 등의 직제 개정과 관련된 기록으로, 경찰대학 직제개정(안), 경찰과학연구원 직제개편(안), 내무부 직제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8586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제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8587호), 지방행정연수원 직제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8588호) 등이 편철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경찰업무 및 직제와 관련된 법령, 규칙에 관한 기록으로, 훈령·예규·고시의 제정·개정사항은 '행정정보공표대상'으로 고시나 보도자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정보다. 또한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한 '공개원칙'을 적용하여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학적관리

- ▶ 기록물철 제목 : 학적부, 경찰교육성적대장, 교육원부, 성적 일람표 등
- ▶ 생산기관 : 경찰청 경찰종합학교 교무과,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경무과
- ▶ 생산연도 : 1959~1977
- ▶ 수량 : 90권
- ▶ 공개재분류
 - 부분공개 제6호
 - 비공개 제6호(학적부)
- ▶ 비공개대상정보 :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본적의 읍·면·동 이하
-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12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5.22), 제8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6.26)

개요

경찰청 경찰종합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학적부》는 교번, 성명, 총점, 평균, 석차를 기재한 목록이 첨부되어 있으며, 개인별 학적부가 첨부되어 있다. 학적부는 크게 개인 신상사항과 학력사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앞장에는 인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과장명, 반, 기, 교번과 소속, 계급, 성명, 생년월일, 본적, 주소와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또한 학력과 경력사항, 상벌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뒷장에는 학적부로 입교·중퇴·졸업 연월일, 과목별 점수, 총점, 평균, 석차, 신체(신장, 체중, 흉위, 시력, 경력, 관절, 질병, 총평), 출석, 상벌, 재교중 생활상태, 성적 개평 및 장래성, 기타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다. 담당, 주임, 교장의 인장이 있다.

《경찰교육성적대장》은 기별, 소속, 계급, 교육기간(입교연월일, 수료연월일), 기별, 성적, 비교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원부》는 성명, 직위, 직급, 생년월일, 임명연월일, 과장명, 기, 교육기간, 교육기관, 성적, 석차, 학력이 기재되어 있는 대장이다.

《성적 일람표》는 국립경찰전문학교의 성적표로 성명, 과목별 성적, 석차, 평균이 기재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이상의 기록물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학적부와 같이 개인 신상사항과 학력사항 등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대부분인 기록은 비공개한다.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치안일지

▶ 기록물철 제목 : 치안일지, 치안일지대장

▶ 생산기관

- 경기도지방경찰청 성남중부경찰서 · 양평경찰서 · 성남중부경찰서 · 용인경찰서 · 고양경찰서 경무과
- 강원도지방경찰청 태백경찰서 경무과
-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대전중부경찰서 · 보령경찰서 · 예산경찰서 · 조치원경찰서 경무과
-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청주동부경찰서 경무과
- 경상남도지방경찰청 합천경찰서 경무과
-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울진경찰서 경무과

▶ 생산연도 : 1971~1979

▶ 수량 : 81권

▶ 공개재분류 : 부분공개 제6호

▶ 비공개대상정보 : 개인의 이름, 주소의 읍·면·동 이하, 차량번호 등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12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5.22), 제8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6.26)
- 제1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12.14),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12.18)

개요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에 생산된 일지류의 기록물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치안일지》, 《치안일지대장》에는 일정한 서식에 따라 매일의 사건발생 기록을 작성하였다. 일자, 날씨, 근태상황, 중요행사 및 회의(명칭 · 시간 · 장소 · 주관 · 참석자수 · 내용), 중요행사 및 사고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공개재분류 결과

이상의 기록물은 경찰청의 치안 관련 일지로서, 일반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 의해 비공개해 왔으나,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치안일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조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기 타

▶ **기록물철 제목** : 순직경찰관대장, 순직경찰관조서 상이단체원기록조서, 전사경찰관기록, 경북경찰사 편찬자료, 소방관계철, 대행신고서 현황철, 청원경찰배치신청

▶ **생산기관**

-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비과
-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강화경찰서 경비과
- 경상남도지방경찰청 합천경찰서 경무과
-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예천경찰서 · 청송경찰서 경무과
- 전라남도지방경찰청 화순경찰서 경무과

▶ **생산연도** : 1949~1979

▶ **수량** : 24권

▶ **공개재분류**

- 공개(청원경찰배치신청)
- 부분공개 제6호
- 비공개 제3호, 제6호(대행신고서 현황철)

▶ **비공개대상정보**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적의 읍·면·동 이하 등 개인식별정보
- 이력 및 신상조서, 신원증명서, 호적등본 등 개인증빙기록
- 대행신고서의 위치, 무기 및 무전현황, 간첩침투사항 등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12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5.22), 제8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6.26)
- 제1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12.14),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12.18)

개 요

경찰청의 순직경찰 관리, 경찰사 편찬, 청원경찰 배치 등과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물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순직경찰관 대장》은 순직자에 대해 기록한 대장으로, 번호, 근무처, 순직전 계급, 성명, 순직연월일, 본적, 주소, 순직상황 및 유훈, 적요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다.

《순직경찰관조서 상이단체원기록조서》는 <경찰관조서>와 <순직경찰관 부조금 증여 내역서>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관조서>는 순직경찰관 대장과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직경찰관 부조금 증여 내역서>는 근무처, 순직일시, 장소, 성명, 생년월일, 순직자 부양가족, 생활태도, 순직개요, 부조를 요하는 사유, 수증자 성명, 주소, 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전사에국단체원 기록》은 성명, 연령, 전상 장소, 당시 직위, 발생장소, 발생현황 등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고, 신원증명원, 호적등본, 진단서 등 증빙서류가 함께 편철되어 있다.

《전사자중군 행불자》는 행불자를 조사한 기록으로, 〈6·25전사자 조사지시〉에는 전사자 명단이 첨부되어 있으며, 전사자 성명, 세대주 성명, 주소, 전사연월일,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군입대자 중 실종자 및 실종 후 전사 처리자 실태 조사에 의해 명단이 첨부되어 있으며, 계급, 군번, 성명, 전사처리일, 실종일, 주소, 비고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다.

《경북경찰사 편찬자료》는 경찰사를 편찬하기 위해 각 경찰서로부터 자료를 수집한 기록물이다. 〈경북경찰사 편찬계획 보고 시달〉에는 사업명, 계획내용, 기간 등의 편찬시행계획이 첨부되어 있다. 〈경북경찰사 편찬자료 수집 보고〉는 중요교통사고, 중요위험물 및 폭발물사고, 중요폭동 및 다중범죄, 공비토벌작전, 6·25사변 중 중요경찰사항, 적의 활동상황, 간첩검거 및 대간첩 작전, 살인강도 중요 폭력사건, 중요화재사건, 중요수해 상황, 해방일부터 국립경찰 발족 사이의 치안상황, 4·19전후한 치안상황, 6·25참전 전 투상황이 일자명·내용별로 정리되어 있다. 또한 각 지서 연혁, 치안상황, 고물상 업태별 현황 등 각 지서의 주요현황이 기재되어 있다.

《소방관계철》은 〈소방기기 조작 요령 제정〉, 〈경찰통신 보안잠정 규정〉, 〈일반비행규정 제정〉, 〈집회장소 경비 요강〉, 〈의용 소방대원 임면 내규 개정〉 등 규정이 편철되어 있다.

《대행신고서 현황철》에는 신고서 및 대행 신고서의 현황과 대행신고서 통제요원 선정 보고가 편철되어 있다. 대행 신고서 현황에는 위치와 좌표, 무기, 무전, 건물 현황, 간첩 침투사항, 선박현황, 어민수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행신고서 통제 선정 보고에는 추천서가 첨부되어 있다. 추천서에는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추천인의 계급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청원경찰 배치신청》에는 주요 은행 및 국가보안목표 시설의 청원경찰 배치신청과 청원경찰 배치 하달이 편철되어 있다.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에는 시설의 명칭, 소재지, 청원자의 직책, 성명, 연령, 경비구역, 경비 배치 방법, 배치받고자 하는 사유, 배치받고자 하는 인원, 배치기간, 연락처, 근무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며, 경비구역 배치도와 배치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다. 청원경찰 배치 결정통지서에는 시설의 명칭, 청원자 직책, 성명, 연령, 경비구역, 배치인원, 배치기간, 부담경비, 불허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경찰업무 중 치안, 순직·전사경찰관 기록, 경찰사 편찬 등의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일반적으로 이들 기록물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의해 비공개해 왔으나, 시간의 경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는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개인정보가 없는 《청원경찰배치신청》은 공개로 재분류하고, 《순직경찰관대장》, 《용역경비》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다만, 《대행신고서 현황철》은 해안경비 및 간첩 침투에 대한 경비 관련 기록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한다.

인사·징계

▶ **기록물철 제목**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인사기록카드, 퇴직자인사기록카드, 방위병인사기록카드, 전역자카드, 사령부, 인사발령대장, 인사발령철, 표창대장, 기여금 납부내역, 연금기여금관련서류철, 징계결의서, 징계기록부, 징계요구서, 징계의결서, 감찰기록

▶ 생산기관

- 경찰청 경무국 교육과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무부 인사교육과, 강동·관악·남부·동부·서대전·종로·중부·청량리경찰서 경무과
-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비과, 동래경찰서·중부·남부·동부·북부·서부·중부·해운대경찰서 경무과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서부·동부·중부경찰서 경무과
-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강화·부평경찰서 경무과
- 경기도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경무과·교육과, 가평·광주·성남·수원·양평·용인·의정부·이천·평택·포천·화성경찰서 경무과
- 강원도지방경찰청 경무과, 강릉·영월·인제·정선·화천·회성경찰서 경무과
-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울산남부·창녕경찰서 경무과
-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 울릉경찰서 경무과
-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당진·서산·조치원경찰서 경무과
-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경무과, 괴산경찰서 경무과·경비과
-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 광주동부경찰서 경무과
- 전라북도지방경찰청 부안·익산·정읍경찰서 경무과
- 제주도지방경찰청 제주경찰서 경무과

▶ **생산연도** : 1945~1979

▶ **수량** : 1,602권

▶ 공개재분류

- 공개(표창대장)
- 부분공개 제6호
- 비공개 제6호(인사기록카드, 전역자카드, 기여금)

▶ 비공개대상정보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중 시험위원, 성적순위자 명부
- 인사기록카드, 전역자카드, 기여금 납부내역
- 인사발령 기록 중 징계 관련 인사발령자의 개인정보(이름, 소속,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의 읍·면·동 이하)
- 징계기록의 대상자 및 조사관·제3자의 이름, 소속, 직위 등 개인식별정보
- 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이름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12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5.22), 제8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6.26)
- 제1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12.14),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12.18)

☉ 개요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경찰서의 인사발령, 연금·기여금, 징계 등의 업무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이다.

☉ 기록물 상세내용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은 경찰관, 순경 등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시험 및 공개경쟁채용시험 관련 기록으로, 최종합격자의 명단, 성적순위자 명부 등이 편철되어 있다.

《인사기록카드》, 《퇴직자인사기록카드》에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본관, 생년월일, 계급, 경과, 소속, 본적, 주소, 출생지, 생활근거지, 호주와의 관계, 재산, 정당 사회단체, 병역, 임용사항, 취미·특기, 가족사항, 자격면허, 신체상태, 학력, 외국시찰, 상훈, 징계형별, 교육훈련, 경찰경력, 외국어능력, 일반경력, 복무상황, 부가직책 발령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방위병인사기록카드》는 방위병에 대한 신상환경조사표로서, 주민등록번호, 소집연월일, 생활근거지, 호주와의 관계, 군번, 성명, 생년월일, 직업, 결혼관계, 원적, 본적, 주소, 전주소, 건강상태, 재산관계, 성향, 자격면허, 외국여행, 학력, 상벌, 교우관계, 가족관계, 근무지이동사항, 활동상황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전역자카드》는 전투경찰순경의 전역자 카드로서,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카드, 응시원서, 지문대조조회, 신원조사(회보)서, 재학증명서, 병적증명(조회)원서, 각서, 채용신체검사서, 전투경찰대원 건강카드, 대원신상카드, 서약서, 근무성적평정표, 직장훈련평정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사령부》는 인사발령기록으로서, 발령연월일, 발령사항, 소속, 계급,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인사발령》, 《인사발령기록부》, 《인사발령대장》은 인사발령기록부로서, 발령일자, 발령사항, 소속, 경과, 계급, 성명, 특기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인사발령관계철》, 《인사발령서철》은 임용, 전보, 이동, 징계 등 인사발령 관련 기록으로 개인의 사직원, 복직원, 진단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표창대장》은 번호, 종별, 피포상자(소속, 계급, 성명), 공적개요, 수여자, 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여금납부내역》은 각 경찰서에서 기여금 납입 총괄표를 총무처에 제출한 문서이다. 총 인원, 봉급 및 기여금 납부 금액표, 전출입자 내역, 신분변동자 내역, 입대휴직추징

금, 합산반납금, 소급기여금액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명, 연금번호, 직급, 소속 등의 개인신상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연금기여금관련서류철》은 연금·기여금과 관련 있는 각종 공문이 편철되어 있다. <공무원연금 기여금 불입에 따른 사무취급 지시>는 연금 기여금 불입사무의 취급요령 지시에 관한 공문으로 기여금불입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다. <기여금 납부확인증 교부상황 보고>는 교부상황과 소급재직기간별 소급분 납부인원 등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는 문건으로 공무원연금법 교육자료 및 지시사항이 첨부되어 있다. <공무원요양기관 계약통보>는 해약 및 계약 공고된 공무원 요양기관에 대한 통보로 요양기관 목록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의료기관명, 요양기관장명, 과목, 소재지가 표시되어 있다. <공무원 결핵이환자 요양 계획>에는 소속, 계급,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공무원 결핵환자요양관리에 대한 지시가 첨부되어 있다. <국민보험금 납부>, <퇴직보험료 납부>는 보험금액과 성명, 계급, 전입(전출), 전입(전출)월일이 기재되어 있다. <보험금 환불금 청구>는 보험종별, 증서번호, 피보험자명, 보험금, 불입회수가 기재되어 있고 보험금 환불금 청구서, 피보험자증서, 퇴직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공무원 결핵환자 요양비 분할지급 청구서 확인 의뢰>에는 청구서가 첨부되어 있다. 청구서에는 피요양자명, 직명, 생년월일, 요양승인번호, 상병명, 치료방법, 요양기간, 이환정도, 청구금액 및 계산명세서에 치료내역(치료일, 치료품명, 수량, 단가, 금액, 비교)이 기재되어 있다.

《징계결의서》, 《징계의결서》, 《징계기록부》, 《징계요구서》, 《감찰기록》 등 징계관련 기록은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으로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진술조서>, <징계사유서>, <출석통지서>,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 등이 편철되어 있다. <징계의결서>는 징계협의자 인적사항(직명, 성명, 소속), 의결주문, 이유, 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는 징계처분대상자 직명·성명·소속, 주문과 징계의결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는 해당인의 인적사항(성명, 본적, 현주소, 직명, 소속, 생년월일, 재직기간)과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징계의결요구자의 의견, 징계의결일자, 의결기관장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진술조서>는 비위사실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소속, 직위, 성명, 진술일자, 비위사실에 대한 사실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징계사유서>에는 해당자의 소속, 직급, 성명 및 죄명, 사유(범죄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출석통지서>는 인적사항(성명, 소속, 직급, 본적, 주소), 출석이유, 출석일시, 출석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는 공무원의 범죄 처분 결과를 해당 검찰청에 통보한 내용으로 사건번호, 죄명, 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성

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징계의결서가 첨부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위 기록물은 경찰청 및 경찰서의 인사업무 및 연금 관련 업무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개인의 신상정보, 근무상황, 징계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기존에 인사·기여금·징계기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록물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은 이미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하여 공무원 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어 공개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조에 의한 개인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로 유효하다고 판단됨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인사기록카드》, 《전역자카드》, 《기여금 납부내역》등은 개인식별정보 및 증빙기록이 대부분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한다.

《인사발령》 관련 기록물은 공직자의 업무수행 과정상의 정보이고 개인의 비밀 및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공개한다. 다만, 징계 관련 인사발령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표창대상》은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받은 것으로 공개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요소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 공개한다.

《징계》 관련 기록물은 직무 수행 상 발생한 과실 및 위법사항으로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없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투명행정 구현 및 행정연구 참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조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소청 · 소송

- ▶ 기록물철 제목 : 행정소송, 소청심사결정문
- ▶ 생산기관 :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진경찰서 경무과,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고성경찰서 경무과, 제주도지방경찰청 서귀포경찰서 경무과
- ▶ 생산연도 : 1971~1979
- ▶ 수량 : 15권
- ▶ 공개재분류 : 부분공개 제6호
- ▶ 비공개대상정보
 - 소송 · 소청인의 이름, 소속, 주소의 읍 · 면 · 동 이하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이름
 - 사건 번호 및 판결문 번호
-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12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5.22), 제8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6.26)
 - 제1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12.14),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12.18)

개 요

지방 경찰청의 공무원 징계 · 파면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 · 소청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행정소송》은 <행정소송 수행 상황보고>, <파면 취소 청구소송 수행결과 보고> 등이 편철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사건명, 원고 · 상고인, 피고 · 상고인, 원심 판결, 주문, 이유, 판결일, 재판장 및 판사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소청심사결정문》은 소청심사청구서, 소청사건 접수통지 및 변명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청심사청구서>에는 소청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주소, 피소청인명, 소청취지 및 이유가 기재되어 있고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소청사건 접수통지 및 변명자료 제출 요구>에는 사건경위와 징계회의록이 첨부되어 있다. 회의록은 개최일시, 장소와 위원장, 위원 · 간사 및 피징계자의 발언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소청심사결정문(감찰)》은 소청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사건번호, 사건명, 소청인 인적사항, 피소청인, 결정내용에 이어서 주문과 이유로 구성

되어 있다. <이유>는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 이유 요지, 증거 및 판단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결정일자,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이상의 기록물은 지방경찰청의 공무원 징계·파면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소청과정에서 생산된 것이다.

이들 소송·소청 관련 기록물 가운데 비공개 대상정보는 소송·소청인 성명, 주소, 나이, 소청심사위원들의 소속과 성명 등과 같은 개인의 인적사항 등이다. 기존에는 소송·소청 관련 기록물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의해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록물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소송·소청 관련 기록 일체를 공개로 재분류하되, 기록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주소, 본적 등을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인허가

- ▶ 기록물철 제목 : 고물상허가대장, 자동차운전학원설립인가관계철, 용역경비
- ▶ 생산기관 :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진경찰서 경무과,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강원도지방경찰청 경비과
- ▶ 생산연도 : 1975~1979
- ▶ 수량 : 13권
- ▶ 공개재분류 : 부분공개 제6호
- ▶ 비공개대상정보
 - 인허가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의 읍·면·동 이하 등 개인식별정보
 -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신원증명서 등 개인증빙기록
-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12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5.22), 제8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6.26)
 - 제1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9.12.14),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9.12.18)

개요

경찰청 소관 고물상, 자동차운전학원, 용역경비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고물상허가대장》은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본적, 상호, 영업장소, 취급고물종류, 이동사항(사유, 연월일)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자동차운전학원설립인가관계철》은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인가에 필요한 신청서와 각종 첨부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설강습소 인가 개설 보고, 자동차 학원 설립 신청서 보안 지시, 사설강습소 자동차학원 설립인가 건의, 신원조회 의뢰 등의 문서가 편철되어 있으며, 그 외에 사설강습소설립인가신청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초본, 호적등본, 인감증명서, 민간인신원진술서, 신원증명서, 이력서, 시설설비계획서, 수지예산서, 경비지원서, 재산증명서 등의 서류들이 첨부되어 있다. <설립인가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인적사항(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청내용(목적, 명칭, 위치, 개강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시설설비내역, 예산내역 등에 관한 사항들이 추가되어 있다. 기타 등·초본 및 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용역경비》에는 용역경비허가신청 및 용역경비업 폐업, 용역경비육성방안 등이 편철되어 있다. 용역경비허가신청 및 폐업에는 허가신청서(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법인 명칭 및 주소, 자산규모), 허가증, 이력 및 신상조서, 신원증명서, 정관, 신원조회, 신원조회 회보서, 예금잔액증명서, 지방세 납세 실적증명, 경비용역도급 계약서, 호적등본 등이 첨부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경찰청 소관 업무인 고물상과 자동차학원 설립, 용역경비 인·허가 관련 기록물이다.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하여 해당 사업이 폐지 또는 변경되었으므로 개인식별정보 및 증빙기록을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6. 해양경찰청

● **대상기록물** : 수사, 정보·보안, 장비, 인사 등 150권

● **생산연도** : 1968~1979

● **생산기관 연혁** :

1953.12.14. ~ 1955.02.06. 내무부 치안국 경비과 해양경찰대

1955.02.07. ~ 1962.05.04. 해무청 해양경비대

1962.05.05. ~ 1991.07.22. 내무부 해양경찰대

1991.07.23. ~ 1996.08.07. 경찰청 해양경찰청

1996.08.08. ~ 현재 해양경찰청

● **개요**

해양경찰청은 1953년 12월 14일 「해양경찰대편성령」에 의해 내무부 치안국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1955년 2월 해무청 소속 해양경비대를 거쳐 1962년 5월 「해양경찰대 직제」에 의해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환원되었다. 해양경찰대는 이후 1974년 12월 「내무부직제」에 의해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치안본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가 1978년 8월 내무부 해양경찰대로 변경되었다. 이후 해양경찰대는 1991년 7월 경찰청 개청과 함께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승격되었다. 이후 해양경찰청은 1996년 8월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분리되었다가 2008년 2월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주요업무는 해상경비·해난구조와 해양오염에 대한 감시 및 방제업무 등 해상에 있어서의 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번에 재분류된 기록물은 수사, 정보·보안, 시설·장비, 인사 등과 관련된 것이다. 사건종결철, 변사사건종결철, 내사사건종결철 등 수사기록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기준을 적용하되, 개인정보와 개인범죄사실이 대부분인 기록물과 가정보호사건·성범죄사건·소년보호사건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수사기록은 비공개하였다. 방첩공작, 간첩 검거 등 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하였지만, 국가안보 및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비공개하였다. 30톤 선체교체철 등 시설·장비 기록물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기종으로 비공개하였다. 인사·징계 기록물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하여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하였다.

● 유형별 총괄표

유형	생산연도	권수	기록물철	공개구분
수사	1968~1979	112	사건종결철, 변사사건종결철, 내사사건종결철, 구속인명부, 범죄접수부, 압수부, 수사보고철 등	부분공개/비공개
정보·보안	1974~1979	8	방첩공작관계철, 간첩검거공작철	비공개
시설·장비	1977~1979	10	30톤 선체교체철, 30톤 선체교체 감리보고서철 등	공개/비공개
인사·징계	1968~1979	19	사령부, 발령대장, 퇴직자경찰인사기록카드, 표창대장, 징계의결신청서 등	부분공개/비공개
감사	1979	1	특검자료철	비공개
	1968~1979	150		

수 사

- ▶ **기록물철 제목** : 사건종결철, 변사사건종결철, 내사사건종결철, 구속인명부, 범죄접수부, 압수부, 수사보고철, 인천561정 침몰사고
- ▶ **생산기관** : 해양경찰청 총무과, 정보수사부 수사과, 군산·부산·속초·포항해양 경찰서 정보수사과
- ▶ **생산연도** : 1968~1979
- ▶ **수량** : 112권
- ▶ **공개재분류** : 부분공개 제3호, 제6호 / 비공개 제3호, 제6호
- ▶ **비공개대상정보**
 - 가정보호사건·성범죄사건·소년보호사건 수사기록
 -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나이, 직업, 군번, 주소 및 본적의 읍·면·동 이하
 - 국립묘지 안장신청서, 사체 매장(화장) 증명서, 시체검안서, 주민등록표, 호적등본
-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8.9.10), 제17차 기록물공개심의회 (2009.12.14)
 - 제5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8.10.2),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 (2009.12.18)

개 요

해양경찰청에서 수사한 사건 관련 기록물로 사건발생 신고 및 접수 조사, 종결, 송치 과정에서 생산한 기록물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사건종결철》은 사건 조사를 마무리한 후 해당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송치서>, <의견서> 및 <기록목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기록물은 사건종결철과 함께 《추송철》, 《압수부》, 《구속인명부》 등이 함께 편철되어 있다. <사건송치서>에는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각원인, 접수일, 구속일, 석방일, 의견, 증거품, 비고, 사법경찰관 계급 및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기록목록과 압수물품이 첨부되어 있다. <의견서>는 해양경찰대의 사건에 대한 견해를 정리한 것으로 범죄사실과 수사결과를 정형화된 구성과 서술방식에 따라 기술하였다. 피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직업, 본적, 주거),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 전과 및 검찰 처분관계,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범죄사실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내용이 육하원칙에 따라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수사결과 기소 의견이 담겨 있다. <사건송치품신>은 접수일자, 사건번호, 송치의

견, 피의자명, 죄명, 증거요지 또는 불기소 사유 요지, 사법경찰관 계급 및 성명, 일자, 수사지도부 검사 지시사항, 주임검사 확인, 송치일자, 송치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수사지휘품신>은 해양경찰대에서 검찰청에 사건처리에 대한 수사방향을 지휘하여 달라는 품신으로 범죄사실의 개요와 사법경찰관의 계급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검사지휘란에 구속 또는 불구속 여부가 결정되어 있으며, 벌금액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다. 증거요지 또는 불기소 사유 요지란에 사건의 개요와 불기소 사유가 기술되어 있다. <피의자인도서>는 인도·인계 기관 및 담당자 계급, 성명과 사건명, 죄명, 범죄사실, 수사의 개요, 증거금품, 서류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 <신원보증서>, <고소취하서>, <범칙물인수증>, <사건이첩> 등의 문건이 있다. 죄명으로는 업무상과실 선박전복, 특수절도, 관세법위반, 수산업법 위반, 횡령, 사기, 직업안정법, 밀항단속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선원법,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등이 있다.

《변사사건종결철》, 《변사, 실종 종결철》은 해양경찰청에서 선원 변사사건 및 선박 해난사고와 관련된 수사기록이다. 변사사건 및 해난사고 처리결과보고가 편철되어 있다. <변사사건 처리 결과보고>에는 변사사건 발생일시 및 장소, 선명, 선주, 변사자 인적사항(본적, 주거, 직업,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발생개요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해난사건 처리 결과보고>에는 해난사고 발생개요 및 의견, 해난사고 발생보고 등이 편철되어 있으며, 해난사고 발생보고에는 발견일시 및 장소, 선명, 선주, 실종자 인적사항, 발견자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선체 인수서, 사체 인수서, 사체 검안서, 검시조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내사사건종결철》은 진정, 탄원 또는 상급기관의 처리 지시 등으로 사건을 조사한 후 결과를 보고하고 내사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첨부된 <내사결과보고서>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수사결과로 나누어 작성하였는데, 피의자의 인적사항에는 발신자, 진정인의 성명, 주소, 직업이 기재되어 있고, 범죄사실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의견을 기술한 수사결과가 있으며 형사민원처리부, 진정서, 출석요구서, 진술조서, 사건처리결과통지, 주민등록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의 성명, 본적, 주거, 직업, 나이,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와 사건에 대한 진술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진술일, 장소, 경찰공무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구속인 명부》는 구속(구속별 일시), 석방(취급자, 연월일, 사유), 죄명 및 형명·형기, 인상, 착의, 구속자(성명, 생년월일, 본적, 주소, 주거, 직업), 전과죄명범수, 공범관계자 성명, 가족관계가 기재되어 있다. 《사건종결철》과 함께 편철되어 있다.

《범죄접수부》는 접수번호, 접수일시, 죄명, 범죄일시, 범죄장소, 피해정도, 피해자·피의자, 수사담당자, 사건처리부 번호, 압수부번호, 비고, 취급자·계장·과장의 확인(도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고에는 선박이름, 주거, 소속기업 등의 정보도 기재되어 있다. 이첩 또는 송치일자·기관도 기재되어 있다.

《범죄사건 처리부》에는 번호, 범죄접수부 번호, 수사 담당자, 죄명, 적용법조, 송치, 송치의견, 발각원인, 증거, 압수부 번호, 압수물,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번호, 피의자(본적, 주소, 출생지, 직업, 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별명, 생년월일), 구속(긴급, 영장 발부, 집행일시, 구속장소), 석방(일시, 이유), 검사처분(월일, 요지), 재판결과(월일, 요지), 범죄통계 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피의자표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압수부》에는 압수물, 범죄사건처리부번호, 압수연월일, 압수물건(품종, 수량), 소유자의 주거, 성명, 피압수자의 주거, 성명, 보관자·취급자인 결재선에 따른 담당자 확인이 기재되어 있다.

《수사보고철》은 기소증지자 소재수사보고, 지명 통보서 의뢰, 수배해제, 긴급 수배, 상황보고서 등이 편철되어 있다. <기소증지자 소재수사보고>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본적, 주소, 직업, 성명, 생년월일, 나이)과 수사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표가 첨부되어 있다. <지명통보서>에는 범죄명, 본적, 출생지, 주소, 직업, 성명, 이명, 연령, 주민등록번호, 전과, 인상특징, 범죄사실, 배회 예상처, 통보처 등이 기재되어 있다. <수배해제>에는 작성연월일, 수배처, 수배서, 수배자 인적사항, 해제사유, 해제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인친 561정 침몰사고》는 1976년 11월14일 침몰한 561정에 대한 사건개요, 사망자(실종자)에 대한 위령제, 조위금 집행과 관련된 기록물로, 561정 실종대원 신분조치 상신, 사망자 및 실종자 위령제 실시계획, 위령제 실시 결과보고, 영결식 거행계획, 순직자 특진추서 및 훈장상신, 조의금 및 위문금 집행결과 보고 등이 편철되어 있다. <조의금집계>, <사망 및 실종대원 인적사항>, <561정 승조원 명단 및 사망·실종자명단>, <탄원서>, <영결식 안내장 발송대상자 명단>, <공적조서>, <국립묘지 안장신청서>, <사체 매장(화장) 증명서>, <조의금 및 위문금 전달 내역서>, <시체검안서>, <주민등록표>, <호적등본> 등이 첨부되어 있다. <조의금집계>에는 성명, 소속 및 직책,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사망 및 실종대원 인적사항>에는 계급, 성명, 생년월일, 직책, 가족사항, 주소, 비고가 기재되어 있다. <561정 승조원 명단 및 사망·실종자명단>에는 직위, 직급, 성명, 직별, 생년월일, 최종 출신고, 본적 및 주소, 호주와의 관계, 가족사항, 경력(입대연월일, 현직급 배명일, 현부서 배치일자), 비고(사망, 실종, 교육, 휴가 등) 등이 기재되어 있다. <영

결식 안내장 발송대상자 명단)에는 성명, 전화번호 및 직책, 소재지 및 주소, 참가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공적조서>에는 본적, 주소,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생년월일, 직위 및 직급, 추천 훈격, 추천서열, 주요 경력, 과거 포상기록, 조사자의 소속·계급·직책·성명, 추천관의 직위·계급·성명, 공적요약서 등이 기재되어 있다. <국립묘지 안장 신청서>에는 사망자의 본적·주소·사망당시 소속·계급·군번·성명·사망당시 직위·사망장소·생년월일·사망 연월일·사망 구분, 신청인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관계, 사망원인 및 기타 참고사항, 작성관의 소속·계급·성명, 청구인의 주소·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사체 매장(화장) 증명서>에는 사망자의 본적·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생년월일·사망장소·사망일시·매장 또는 납골번호·묘지 명칭·화장장 소재지, 신고인의 본적·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조의금 및 위문금 전달 내역서>에는 대상별 각하 하사금, 장관 위로금, 조의금 등의 전달 내역과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해양경찰청의 주요 업무의 하나인 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기록물로 사건의 발생 및 처리 유형에 따라 편철되었다. 수사기록은 사건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건 발생, 결과 보고 등의 문건과 <진술조서> 등 수사과정의 문건, 수사를 종결하고 해당 검찰에 송치하기 위한 <사건송치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사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것으로 사건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가 기본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의자, 진정(탄원)인, 사건 관련인 등의 성명, 주소, 본적, 직업, 나이, 이력 및 경력 등이 있으며 수사담당 경찰관의 성명과 직위가 나타나 있다.

사건 및 범죄수사에 관련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범죄의 예방, 수사 등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혹은 수사방법, 수사과정 상의 기밀의 보호는 물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사건 피해자, 피의자, 사건과 관련된 제3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대부분 비공개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록물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전 비공개사유 중 하나였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수사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는 생산 후 30년 경과로 인해 이미 사안이 종료된 사건으로 비공개 보호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개인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로 유효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실명화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건종결철》, 《수사보고철》, 《범죄접수부》, 《범죄사건처리부》는 개인정보와 개인 범죄 사실이 대부분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로 보아 비공개한다.

《변사사건종결철》, 《내사사건종결철》, 《인천 561정 침몰사고》 등은 피해자·피의자·관련인 등의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증빙기록을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다만, 가정보호사건·성범죄사건·소년보호사건 등은 보도금지 규정 외에 판례나 학설상 인정되는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성명권의 개념을 포괄하는 인격권' 보호를 위해 비공개한다.

《구속인명부》, 《범죄사건부》 등 대장류는 이름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정보 · 보안

- ▶ 기록물철 제목 : 방첩공작관계철, 간첩검거공작철
- ▶ 생산기관 : 해양경찰청 정보수사부 정보과
- ▶ 생산연도 : 1974~1979
- ▶ 수량 : 8권
- ▶ 공개재분류 : 비공개 제2호, 제3호, 제6호
- ▶ 비공개대상정보
-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8.9.10), 제17차 기록물공개심의회 (2009.12.14)
 - 제5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8.10.2),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 (2009.12.18)

개 요

해양경찰청이 국가주권 수호 및 안보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기록물로, 요주의 인물 조사, 동향파악 등 주로 대공 관련 내용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방첩공작관계철》은 〈공작첩보보고〉, 〈대공첩보 내사 진행보고〉, 〈공작계획 보고서〉, 〈대공 용의자 동향에 대한 보고〉 등의 문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첩보보고에 따른 견문보고서도 포함되어 있는데, 출처 및 입수경위, 공작대상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공작 진행 내용, 생활동태, 공작 성과, 가족의 동향, 담당자 계급 및 성명, 대상자의 동향파악 등이 기재되어 있다. 첩보조사 대상자에는 납북귀환자 및 선원이 대부분인데, 이들의 일본에서의 행적 등이 조사되어 있기도 하다. 관련 참고 기록으로 〈재산조사서〉, 〈주민등록표〉, 〈선원이력카드〉, 〈진술조서〉, 〈각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간첩검거공작철》은 간첩 공작자료 수집, 첩보 입수, 공작 계획·진행·종결 관련 기록으로, 대부분 비밀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것이다. 〈공작첩보기록〉에는 공작건명, 가제목, 담당관, 공작대상자 인적사항(본적, 주소, 직업, 성명, 가명, 생년월일), 입수연월일 및 첩보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이상은 해양경찰청 주요 업무인 정보 관련 기록물로 주로 납북귀환자나 선원 또는 요주의 인물에 대한 조사, 동향파악 및 관리 등 대공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다. 해당인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본적, 직업, 나이, 이력 및 경력)와 가족 및 관련자의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담당 경찰관의 성명, 직위가 나타나 있다. 개인의 사상과 동향에 대한 정보도 기재되어 있다.

위 기록물은 생산 후 30년이 경과하여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한 공개원칙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정보·보안 기록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개인의 생명·신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로 보아 비공개한다. 다만 일반계획, 지시공문 및 통계기록은 구체적인 사안이 아니라 전체 현황을 보여주는 기록이고, 개인정보의 경우 비실명화 하는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공개 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부분공개한다.

시설·장비

- ▶ 기록물철 제목 : 30톤 선체교체철, 30톤 선체교체 감리보고서철, 일일대가표 및 산출근거철
- ▶ 생산기관 : 해양경찰청 경무국 장비1과, 경무부 정비보급과
- ▶ 생산연도 : 1977~1979
- ▶ 수량 : 10권
- ▶ 공개재분류 : 공개 / 비공개 제3호
- ▶ 비공개대상정보 : 설계도면, 사진, 감리보고서 등 건축·장비 기술을 보여주는 기록
-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8.9.10), 제17차 기록물공개심의회 (2009.12.14)
 - 제5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8.10.2),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 (2009.12.18)

개요

해양경찰청의 장비구축 및 관리와 관련한 기록물로 경비정 건조추진에서부터 감리까지의 공사과정을 볼 수 있는 기록물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30톤 선체교체철》에는 〈30톤 선체교체 소요자재 명세 검토〉, 〈고속경비정 월말 공정진도 보고〉, 〈경비정 건조추진위원회 개최〉, 〈경비정 건조추진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30톤 선체 건조 교체〉 등의 문건이 있다. 선체교체를 위한 자재의 조율 및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경비정 건조추진위원회 위원의 직급(경무관, 총경, 경정 등)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건조도면, 전기배선도, 배관도 등과 함께 공사명세, 과업지시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30톤 선체교체 감리보고서철》은 〈공사감리보고서〉로 공사진도 현황과 작업중인 사진, 공사 세부현황표 등의 감리용역 종합보고서이다. 선체 내·외부 사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감리회사명과 대표이사, 공사감리자의 성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일일대가표 및 산출근거철》은 해양경찰대 본부 신축공사의 피뢰침공사, 전선 및 전선관 공사 등 세부 공사별 산출근거서이다.

❖ 공개재분류 결과

해양경찰청의 장비구축 및 관리와 관련한 기록물로 경비정 건조추진에서부터 감리까지의 공사과정을 볼 수 있는 기록물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공공시설 또는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 등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정보'로 보아 비공개 또는 비밀로 관리하여 왔고, 감리의뢰 및 도면승인 등의 기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비공개로, 월말공정진도보고, 회의개최 및 결과보고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부분공개로 관리하였다.

위 기록물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해당 기종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고 설계도면 등은 건조 기술을 세밀하게 보여주어 공개될 경우 보안사항이 노출되어 중요 시설·건물의 파괴 등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설계 등과 관련이 적은 회의 관련 기록, 월별공정진도보고 등은 공개하며, 장비구축 및 관리와 관련하여 회의참여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한 공직자 정보는 공개한다.

인사·징계

- ▶ **기록물철 제목** : 사령부, 발령대장, 퇴직자경찰인사기록카드, 표창대장, 근속재직기간합산철, 인원현황철, 징계의결요구서, 징계의결신청서
- ▶ **생산기관** :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 경무국 경무과, 총무과, 부산해양경찰서 경무과
- ▶ **생산연도** : 1968~1979
- ▶ **수량** : 19권
- ▶ **공개재분류**
 - 부분공개 제6호
 - 비공개 제2호(인원현황철)
 - 비공개 제6호(인사기록카드, 근속재직기간합산철)
- ▶ **비공개대상정보**
 - 징계기록의 대상자 이름·생년월일·나이, 심사자·제3자의 이름
 - 상훈·포상기록 중 가족정보 등 사생활정보
 - 개인의 주소 및 본적의 읍·면·동 이하
-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7차 기록물 공개심의회(2008.9.10), 제17차 기록물공개심의회 (2009.12.14)
 - 제5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08.10.2),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 (2009.12.18)

개요

해양경찰청의 인사, 징계, 표창 관련 기록물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사령부》는 인사발령대장으로 발령월일, 사령, 계급, 성명, 소속, 발령, 이력, 직원명부, 현원, 적요로 구성되어 있다. 사령란에는 근무부서 명령 내용, 호봉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발령대장》은 인사발령기록부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 있으며, 발령일자, 발령사항, 소속, 경과, 계급, 성명, 기장, 비고로 구분되어 있고, 경과에 해양, 통신, 기관, 항해, 갑판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인사기록카드》는 퇴직한 경찰공무원의 인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기록이다. 성명, 본관, 생년월일, 계급, 경과, 소속, 본적, 주소, 출생지, 생활근거지, 호주와의 관계, 재산, 정당사회단체, 병역, 취미·특기, 가족사항, 신체상태, 학력, 자격면허, 외국시찰, 상훈, 징계,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전과, 경과자격증부여, 보증란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표창대장》은 호수, 표창연월일, 표창종별, 표창기관, 피표창자(직명, 소속 또는 주소, 성별, 성명), 표창을 하게 된 공적 개요, 기념품 또는 부상,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근속재직기간합산철》은 근속기간 합산, 호봉획정 등의 필요에 의해 <경찰공무원 전력(군경력) 조회>를 의뢰하는 기록이다. 해당자의 현소속, 계급, 성명, 생년월일, 전 근무처 및 직급, 임용연월일, 군경력을 기재하여 전력을 조회하고, 이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는 경력증명원을 회신하였다. <유사경력통산신청서> 및 각종 증명원이 첨부되어 있다.

《인원현황철》은 해양경찰청 인원현황으로 지구대별·부서별(합정별)로 계급별 현원 및 정원이 표시된 통계표이다.

《징계의결요구(신청서)》는 일정한 서식에 의해 작성되어 있는데, 분류기호, 징계심의대상자(성명, 직명, 소속, 생년월일, 재직기간, 본적, 현주소), 징계사유, 징계요구 또는 신청권자의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징계요구 내용에는 비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신청서 아래에는 신청권자 징계 검토의견(견책, 감봉2월, 기각) 등이 기재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인사, 징계 관련 기록물에는 개인의 인사이력 및 징계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개인의 인적사항과 근무상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위의 기록물은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하여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원칙을 적용,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사기록카드》, 《근속재직기간합산철》은 개인정보가 대부분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한다.

《사령부》, 《발령대장》 등 임명·임면 관련 기록은 인사발령 공문 등 성명, 소속, 직급, 직위 및 발령사항 정보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업무수행 과정상의 정보이고 개인의 비밀 및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공개하는 것으로 한다.

상훈·포상 관련 기록은 업무 수행상 공적을 평가하여 상과 훈장을 수여한 것으로 공개가능한 정보로 판단된다. 다만 가족정보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은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인원현황철》은 해양경찰청의 각 지구대별·부서별·합정별 현원 및 정원이 표시된 통계표로,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한다.

징계 관련 기록은 직무 수행상 발생한 과실·위법사항에 관한 것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소속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한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해당 기록물과 내용상 동일한 유형의 감사처분결과, 감사처분요구서 등을 홈페이지와 책자발간 등을 통해 사전공개하고 있는데, 대상자 이름과 소속 정보 등을 삭제하고 있다.

감 사

- ▶ 기록물철 제목 : 특검자료철
- ▶ 생산기관 : 해양경찰청 경무국 장비1과
- ▶ 생산연도 : 1979
- ▶ 수량 : 1권
- ▶ 공개재분류 : 비공개 제2호
- ▶ 비공개대상정보
- ▶ 심의기구 및 일시
 - 제17차 기록물공개심의회 (2009.12.14), 제10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 (2009.12.18)

개 요

해양경찰청의 특명검열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기록물 상세내용

《특검자료철》에는 군특명검열일정 하달, 예상질의 문답서 하달, 특검수검사항, 특검종합수검결과, 해양경찰대 전투력강화 시행계획, 업무현황, 특명검열결과, 지적사항 시정 조치 결과, 전력화계획추진현황 등이 편철되어 있다. <특검관련 예상질의 문답서>에는 경비함정 주요 제원, 무기탄약 확보 방법, 무기수리 방법, 무기년차 증감 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다. <특검수검사항> 및 <특검종합수검결과>에는 함정수리 계획대 실적 분석, 함정별 지구대별 유류 월 소요량, 무기탄약 관리 상태, 해상훈련 및 사격훈련 등에 대한 수검사항 및 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해양경찰대 전투력 강화 시행계획>에는 함정수리제도 개선이 기재되어 있다. <업무현황>에는 기본현황(기구, 인원, 업무분장, 예산, 경비함정, 병기탄약, 경비정 건조 등), 업무추진 실적, 함정 정비 태세강화 계획 및 추진 등이 기재되어 있다. <특명검열결과>에는 해양경찰대 전투태세 확인 검열에 대한 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전력화계획추진현황>에는 경비함정 증강, 교육제도 개선, 지휘통신망 보강, 함정수리제도 개선 등이 기재되어 있다.

❖ 공개재분류 결과

《특검자료철》은 해양경찰청의 특명검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해양경찰대의 무기 현황 및 군 전력을 알 수 있다.

위 기록물은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로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해당 기록물에는 해양경찰대의 경비함정 및 무기 관련 현황, 전투력 정도, 전력화 계획 등 국방·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한다.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가이드북 (특수기록관 기록물)

발행인 이경옥(국가기록원장)
총괄 김창수(기록정보서비스부장)
편집 강수천(공개서비스과장)
노영중(공개서비스과 학예연구관)
이영도(공개서비스과 학예연구사)
임신영(공개서비스과 기록연구사)
김선희(공개서비스과 기록연구사)
조영주(기록편찬문화과 사서주사보)

발행일 2010년 12월 24일
발행처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부 공개서비스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503호
연락처 TEL. 042) 481-6670 FAX. 042) 487-6535
인쇄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